量案의 전산화 방안 모색

결과 보고서

2010.8

-목 차-

量案의 전산화 방안 모색

I. 양안 전산화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

1. 양안 전산화의 필요성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의 양안을 연구자료로 활용한 사회경제사 분야의 연구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주요 목적이 농업생산, 농민층 동향, 토지소유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안에 입각한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 양상, 소유관계를 분석하거나 보다 고차원적으로 양안을 분석하여 조선 후기 농업의 변동을 밝히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즉 한국사회경제사 연구는 조선사회의 경제체제의 구조와 변동, 그리고 사회제도의 실상과 변화의 제 양상을 파악하여 조선사회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의 구조와 변동을 살피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 대상이 바로 농업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농업생산에 관한 연구는 조선정부의 농정책, 토지소유관계, 농업경영, 농촌사회 등의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양안은 당대의 토지소유관계의 현황과 변동, 농업경영의 실제와 변화 등을 보여주는 주된 자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양안을 이용한 연구성과는 매우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 해석에서도 극단적인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양안을 활용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연구도 위축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양안 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자료 접근성의 제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양안에 수록된 정보의 성격과 그에 대한 의미 부여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양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형편이다.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의 양안을 분석하여 농민층 동향을 연구한 논문이 아니라 양안의 기재양식 등 자료적 성격 자체에 눈을 돌린 연구성과는 李榮薰과 吳仁澤의 논문 등 몇 편에 불과하다. 李榮薰은 양안에 보이는 主 규정에 주목하여 主 규정의 변화가 토지소유권의 성장과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연구성과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主 규정의 변화에 대해 국가적 토지소유론의 입론에 근거하여 사적 토지소유권의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국가의 부세담당자 파악이라는 점에 눈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였다. 吳仁澤은 庚子量田을 대상으로 量田의 시행조직과 기재형식을 분석하여 전라도 지역의 양안과 경상도 지역의 양안을 각각 草案과 正案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존하는 量案을

대상으로 草案과 正案을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상도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양안 작성시기가 다르고 양 지역의 量案 작성에 고유한 특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 연구자들조차 양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괄적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학계의 실상이다. 본 연구 사업은 양안의 기재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할 개설서를 만들 계획이며, 이는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지적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광무양안과 일제 시기 토지대장을 대상으로 한 비교 분석 작업이 일본인 학자인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미야지마는 충청남도 논산군(구 연산군)소재 마을인 伐谷面 德谷里와 連山面 松山里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제국기 광무양안과 일제 시기 토지대장을 비교하였다. 양 자료에 등장하는 토지 필지들과 소유자들을 일일이 대조해 맞추어보는 작업을 통해 미야지마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광무양안은 토지의 형태나 면적, 등급의 파악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그렇지만 소유관계의 파악의 면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이에 비해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 파악은 한편에서는 광무양안의 정확성을 이어받으면서 그것을 보다 철저화시켰다. 넷째,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에 따라서는 경지의 개발상황이나 지주제, 토지소유관계의 변동 상황도 엿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같은 연구에 의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러한 작업을 통해 양 자료의 성격이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논문은 대상 지역의 범위가 좁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 개인적 노고의 산물이라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는 결국 양안 전산화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작업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지리학 분야 연구자 등과 학제간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사업은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된다.

2. 연구 방법

양안은 그 자체로서 통계화할 수 있는 수치 자료다. 따라서 이를 텍스트로 전산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서 한걸음 나아가 양안을 시각 자료로 전산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광무양안과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地積原圖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광무양안은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소유주명이 대부분 戶名으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전통적인 양전과 양안 작성 방식에 기초하여 문자로 기술되어 실제적인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지적원도는 현재까지 통용되는 자료로 토지의 위치나 형태를 도면화 시킨 것이다.

두 자료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작성된 시차는 1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원도를 활용하면 광무양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기재 내용을 도면화함으로써 그 기재 내용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위해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안과 일제초기의 지적원도가 함께 남아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마명리, 가양리, 요곡리, 신장리 네 개 지역을 샘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입력하여 두 자료 사이의 대응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안 데이터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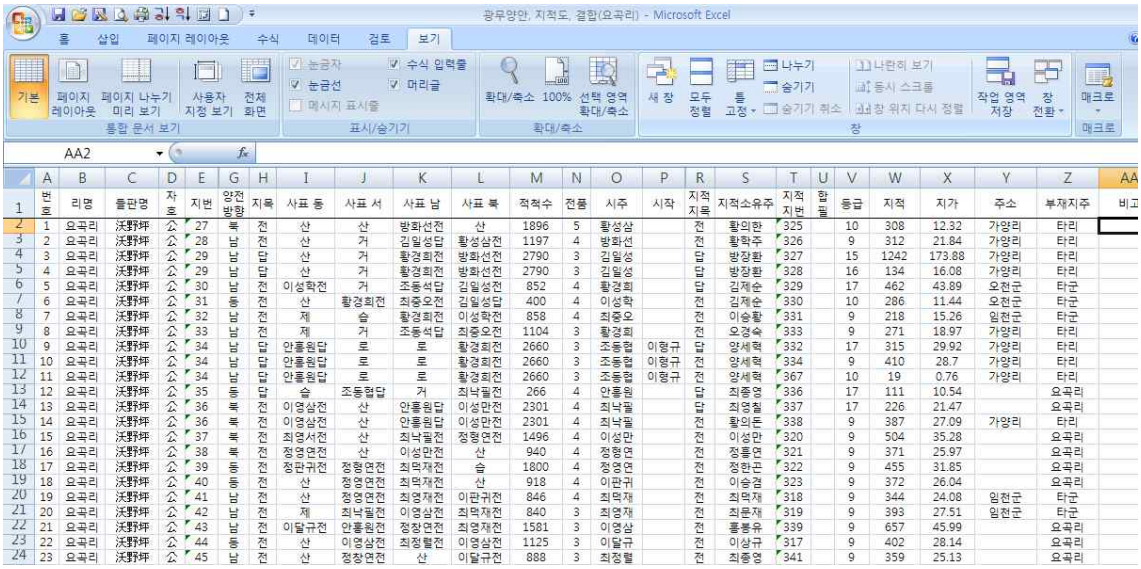

번호	리명	들판명	자호	지번	양전방향	지목	사표 동	사표 서	사표 남	사표 북	척척수	전품	시주	시작	지적지목	지적소유주	지적지번	합필	등급	지적	지가	주소	부재지주	비고
1	요곡리	沃野坪	公	27	북	전	산	산	방화선전	산	1896	5	황성삼		전	황의한	325		10	308	12.32	가양리	타리	
2	요곡리	沃野坪	公	28	남	전	산	거	김일성답	황성삼전	1197	4	방화선		전	황학주	326		9	312	21.84	가양리	타리	
3	요곡리	沃野坪	公	29	남	답	산	거	황경희전	방화선전	2790	3	김일성		답	방장환	327		15	1242	173.88	가양리	타리	
4	요곡리	沃野坪	公	29	남	답	산	거	황경희전	방화선전	2790	3	김일성		답	방장환	328		16	134	16.08	가양리	타리	
5	요곡리	沃野坪	公	30	남	전	이성학전	거	조동석답	김일성전	852	4	황경희		답	김제순	329		17	462	43.89	오천군	타군	
6	요곡리	沃野坪	公	31	동	전	산	황경희전	최중오전	김일성답	400	4	이성학		전	김제순	330		10	286	11.44	오천군	타군	
7	요곡리	沃野坪	公	32	남	전	제	슬	황경희전	이성학전	858	4	최중오		전	이승황	331		9	218	15.26	임천군	타군	
8	요곡리	沃野坪	公	33	남	전	제	거	조동석답	최중오전	1104	3	황경희		전	요경숙	333		9	271	18.97	가양리	타리	
9	요곡리	沃野坪	公	34	남	답	안홍원답	로	로	황경희전	2660	3	조동협	이형규	답	양세혁	332		17	315	29.92	가양리	타리	
10	요곡리	沃野坪	公	34	남	답	안홍원답	로	로	황경희전	2660	3	조동협	이형규	전	양세혁	334		9	410	28.7	가양리	타리	
11	요곡리	沃野坪	公	34	남	답	안홍원답	로	로	황경희전	2660	3	조동협	이형규	전	양세혁	367		10	19	0.76	가양리	타리	
12	요곡리	沃野坪	公	35	동	답	슬	조동협답	거	최낙필전	266	4	안홍원		답	최종영	336		17	111	10.54		요곡리	
13	요곡리	沃野坪	公	36	북	전	이영삼전	산	안홍원답	이성만전	2301	4	최낙필		답	최영철	337		17	226	21.47		요곡리	
14	요곡리	沃野坪	公	36	북	전	이영삼전	산	안홍원답	이성만전	2301	4	최낙필		전	황의돈	338		9	387	27.09	가양리	타리	
15	요곡리	沃野坪	公	37	북	전	최영서전	산	최낙필전	정형연전	1496	4	이성만		전	이성만	320		9	504	35.28		요곡리	
16	요곡리	沃野坪	公	38	북	전	정영연전	산	이성만전	산	940	4	정형연		전	정홍연	321		9	371	25.97		요곡리	
17	요곡리	沃野坪	公	39	동	전	정판귀전	정형연전	최먹재전	슬	1800	4	정영연		전	정한곤	322		9	455	31.85		요곡리	
18	요곡리	沃野坪	公	40	동	전	산	정영연전	최먹재전	산	918	4	이판귀		전	이승걸	323		9	372	26.04		요곡리	
19	요곡리	沃野坪	公	41	남	전	산	정영연전	최영재전	이판귀전	846	4	최먹재		전	최먹재	318		9	344	24.08	임천군	타군	
20	요곡리	沃野坪	公	42	남	전	제	최낙필전	이영삼전	최먹재전	840	3	최영재		전	최문재	319		9	393	27.51	임천군	타군	
21	요곡리	沃野坪	公	43	남	전	이달규전	안홍원전	정창연전	최영재전	1581	3	이영삼		전	홍봉유	339		9	657	45.99		요곡리	
22	요곡리	沃野坪	公	44	동	전	산	이영삼전	최정활전	이영삼전	1125	3	이달규		전	이상규	317		9	402	28.14		요곡리	
23	요곡리	沃野坪	公	45	남	전	산	정창연전	산	이달규전	888	3	최정활		전	최종영	341		9	359	25.13		요곡리	

<그림 1>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필지 전산 입력 및 비교 예시

II. 양안의 전산 입력 방안 검토

1. 전산 입력 방식

본 연구에서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전산으로 입력하였다. 광무양안의 경우 필지별를 정보 중 리명과 들판평, 자호, 지번, 양전방향, 지목, 사표, 척적수, 전품, 시주와 시작 등을 입력하였다. 토지대장은 지목, 소유주, 지번, 등급, 면적, 지가, 소유주의 거주지, 부재지주 여부 등을 입력하였다.

앞으로의 양안 입력은 양안의 형태에 따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양안의 양식은 크게 보아 경자양안 형과 광무양안 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자양안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그 양식이 상이하다. 광무양안 또한 작성기관별로 그 형식이 상이하다. 따라서 양안 입력양식을 1가지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가지로 하려고 하면 입력양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입력틀을 최소 2가지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경자양안 입력틀과 광무양안 입력틀로 나누어 보았다.

<그림 2> 『慶尙道醴泉庚子改量田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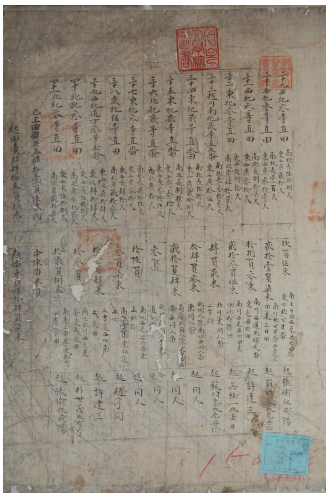

<그림 3>『全羅左道南原縣己亥量田導行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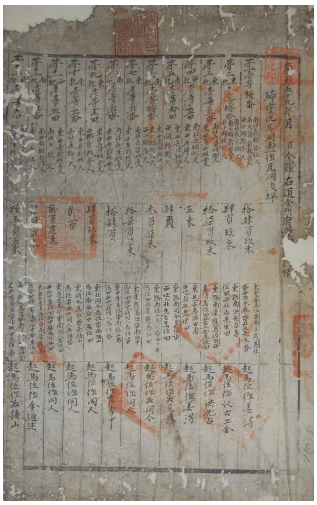

<그림 4> 『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導行帳』

<그림 5>『京畿道驪州郡量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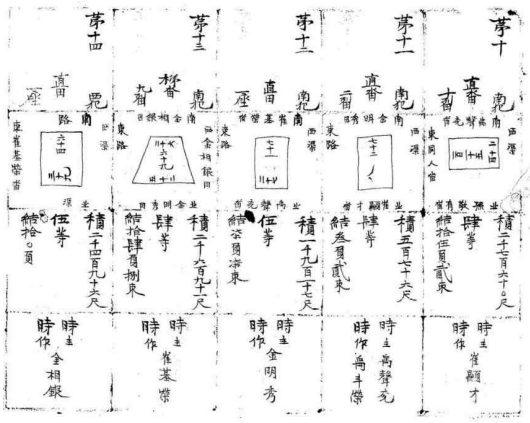

<그림 6>『忠淸北道槐山郡量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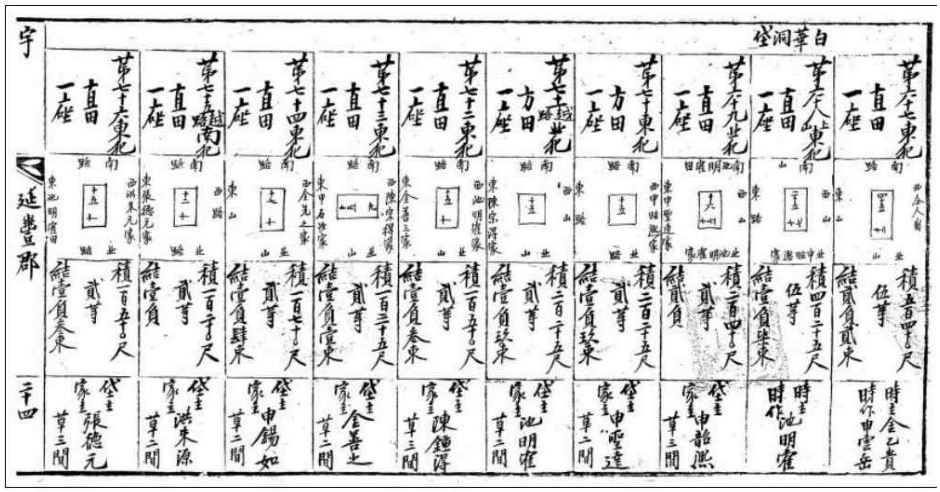

<그림 7>『忠淸北道延豊郡量案』

1) 경자양안(『慶尙道龍宮縣北上面量案』) 상세 전산화 방안

(예시-1) 일렬번호, 君面名, 員/坪, 字號, 地番, 方向, 田品, 田形, 田畓, 加耕

번호	君面名	員/坪	字號	地番	方向	田品	田形	田畓	加耕
1	龍宮北上	赤巖	裳	1	東	5	梯	田	
2	龍宮北上	赤巖	裳	2	北	5	圭	田	
3	龍宮北上	赤巖	裳	3	北	5	直	田	
4	龍宮北上	赤巖	裳	4	東	5	直	田	
5	龍宮北上	赤巖	裳	5	北	5	梯	田	
6	龍宮北上	赤巖	裳	6	南	5	直	田	
7	龍宮北上	赤巖	裳	7	南	5	梯	田	
8	龍宮北上	赤巖	裳	8	北	6	梯	田	
9	龍宮北上	赤巖	裳	9	北	6	梯	田	
10	龍宮北上	赤巖	裳	10	東	6	直	田	
11	龍宮北上	赤巖	裳	11	南	6	句	田	加
12	龍宮北上	赤巖	裳	12	東	5	直	田	

(예시- 2) 장광척(길이1, 길이2, 길이3), 결부속, 사표(동, 서, 남, 북), 구주(한글,한자)

길이1	길이2	길이3	결부속	동	서	남	북	구주	舊主
49	26	16	38	도	동인	천	도	어둔	於屯
72	28		40	산	토	도	동인	어둔	於屯
76	15		46	산	토	동인	동인	박승상	朴承尙
65	21		55	산	토	동인	산	승상	承尙
66	29	6	46	산	토	성대	산	박사남	朴士男
35	22		17	몽선	몽선	성원	산	덕복	德卜
31	21	12	20	산	세웅	성원	산	박경문	朴京文
31	18	16	13	산	동인	동인	산	박경문	朴京文
34	30	13	18	산	성원	성원	산	박경문	朴京文
58	15		22	토	세적	산	산	무주	無主
23	8		2	도걸	동인	산	동인		
23	21		19	동인	몽선	산	산	장응복	長應卜

(예시- 3) 직역(한글, 한자), 기주명(한글, 한자), 노비명(한글, 한자), 陳, 기타

직역	職役	성	명	성명	노비명	奴婢名	陳	비고
노군	老軍	함	중한	咸仲漢			진	복사
어보	御保	김	해종	金海宗			진	복사
어보	御保	김	해종	金海宗				
어보	御保	김	성원	金成元				
노군	老軍	함	중한	咸仲汗				
기정	騎正	함	세웅	咸世雄				
보보	步保	함	몽선	咸夢先				
기보	騎保	왕	옥선	咸玉先			진	
교노	校奴		세적	世赤			진	
보보	步保	함	몽선	咸夢先				
보보	步保	함	몽선	咸夢先				
보보	步保	함	애선	咸愛先				

2) 광무양안(『忠淸道下北面量案』)상세 전산화 방안

(예시- 1) 일렬번호, 郡面名, 員/坪, 字號, 地番, 方向, 田形, 田畓, 留/座

번호	郡面名	員/坪	字號	地番	方向	田形	田畓	留/座
1	韓山下北	馬鳴前坪	惠	1	西	直	畓	5
2	韓山下北	馬鳴前坪	惠	2	北	三角	畓	4
3	韓山下北	馬鳴前坪	惠	3	西	直	畓	3
4	韓山下北	馬鳴前坪	惠	4	西	直	畓	2

(예시- 2) 사표(동, 서, 남, 북), 장광척(길이1, 길이2, 길이3), 면적, 등급

동	서	남	북	길이1	길이2	길이3	면적	등급
이학귀	로	산	이옥동	100	35		3850	2
산	권종학	임치근	산	77	66		2541	2
이옥동	김만서	임치근	산	135	40		5400	4
권종학	로	임치근	산	140	20		2800	2

(예시- 3) 결부속, 시주(한글, 한자), 시작(한글, 한자), 비고

결부속	시주	時主	시작	時作	비고
326	김진옥	金鎭玉	정만기	鄭萬奇	
216	유재하	劉載夏	권종학	權鍾學	
297	조동신	趙東臣	김홍수	金洪洙	
238	이성원	李聖元	김만연	金萬然	

⇒ 1필지 각 항목을 횡으로 나열시켜 한 줄 안에 한 필지의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이는 본 전산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토지대장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에서의 1필지와 1대 1로 대응시키기 위함이다. 양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광무양안의 1필지가 합필, 분필 등의 방식을 거쳐 어떻게 변모해갔는지 밝혀질 수 있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1필지 정보는 곧 전산프로그램상의 레코드 1개가 되도록 입력해야 한다.

또한 한자 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사표와 人名은 한글입력을 병행하여 검색과 정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사람의 이름이 同音異字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동일인을 검색, 정렬하는 데에는 한글로 하는 것이 편하다. 나아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한글로 하여야만 한다. 또한 양자를 비교하면 당시의 순수한 한국말 발음, 한자의 借字 방법 등, 국어학적인 연구도 가능하다.

2. 규장각 양안 현황과 전산화 가능성

규장각 소장 양안은 크게 경자양안, 광무양안, 읍양안으로 분류되며, 책수는 다음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광무양안이 1,232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자양안 132책, 읍양안 12책의 순이다.

<표 7> 규장각 소장 양안 책수(단위:책)

구 분	도 명	책수
경자양안	경상도	57
	전라도	75
	소 계	132
광무양안	강원도	22
	경기도	569
	경상도	187
	충청도	454
	소 계	1,232
읍양안	경상도	11
	전라도	1
	소 계	12
합계		1,376

이렇듯 책을 기준으로 보면 광무양안이 가장 많지만, 글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양상은 약간 달라진다. 그 이유는 세 종류 양안의 1책 쪽수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1쪽에 담긴 글자수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그림 7>의 양안 원본 사진들에서 확인되듯이 경자양안과 광무양안 모두 1쪽에 담긴 글자수가 일정하지 않다.

<표 8> 규장각 소장 양안 장수·행수·자수 샘플

구분	군현	서명	청구기호	장수	장당 행수	행당 자수
경자양안	醴泉	慶尙道醴泉庚子改量田案	奎14956-v.1	577	25*2	50
			v.2	636		
			v.3	352		
			v.4	484		
			v.5	406		
			v.6	420		
			v.7	524		
			v.8	644		
	南原	全羅左道南原縣己亥量田導行帳	奎15028-v.1	390	15*2	50
			v.2	283		
			v.3	560		
			v.4	252		
			v.5	326		
		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導行帳	奎15035 v.1	531	15*2	50
			v.2	212		
			v.3	375		
			v.4	225		
			v.5	259		
			v.6	303		
			v.7	345		
광무양안	驪州	京畿道驪州郡量案	奎 17642 v.1	133	6*2	60
			v.2	118		
			v.3	104		
			v.4	179		
			v.5	177		
			v.6	149		
			v.7	138		
			v.8	160		
			v.9	134		
			v.10	153		

	陽智	陽智郡量案	奎17658-v.1	124	5*2	60
			v.2	202		
			v.3	118		
			v.4	101		
			v.5	154		
			v.6	127		
			v.7	121		
			v.8	97		
			v.9	83		
		京畿陽智郡量案	奎7657-v.1	81	10*2	60
			v.2	63		
			v.3	127		
			v.4	75		
			v.5	60		
			v.6	116		
			v.7	99		
			v.8	114		
			v.9	58		
	槐山	忠淸北道槐山郡量案	奎17679-v.1	221	5*2	60
			v.2	180		
			v.3	258		
			v.4	92		
			v.5	263		
			v.6	135		
			v.7	284		
			v.8	197		
			v. 9	204		
	延豊	忠淸北道延豊郡量案	奎17685-v.1	176	10*2	60
			v.2	151		
			v.3	117		
			v.4	129		
			v.5	158		
읍양안	彦陽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畓量案	奎15008	157	21*2	45
		慶尙道彦陽縣田畓量案	奎15009	47	11*2	45
		慶尙道彦陽縣雙水亭洞田畓結大帳	奎15010	20	10*2	40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畓量案	奎15013	160	21*2	45
		慶尙道彦陽縣田畓量案	奎15014	42	10*2	40
		慶尙道彦陽縣中南面方基洞田畓缺打量正案	奎15015	35	8*2	40
		慶尙道彦陽縣北三洞田畓結量案	奎15016	125	21*2	45
		慶尙道彦陽縣平里洞德員禮員田畓打量冊	奎15017	31	8*2	45
		慶尙道彦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	奎15018	29	10*2	40
		慶尙道彦陽縣加川洞田畓改量野草	奎15019	46	11*2	45
	蔚山	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奎15012	294	25*2	50
	靈光	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	奎25036	319	14*2	65

<표 9> 규장각 소장 양안 예상 字數

구분	도명	전체책수	장당행수	자수	평균장수	책수	총자수
경자양안	경상도	57	50	50	504	57	71,820,000
	전라도	75	30	50	338	75	38,025,000
	소계	132					109,845,000
광무양안	강원도	22	16	60	150	8	1,152,000
	경기도	569	20	60	150	137	24,660,000
			16	60	150	27	3,888,000
			12	60	150	310	33,480,000
			10	60	150	95	8,550,000
	경상도	187	18	60	150	9	1,458,000
	충청도	454	10	60	150	360	32,400,000
			20	60	150	94	16,920,000
	소계	1,232					122,508,000
읍양안	경상도	11	50	50	294	1	735,000
			42	45	147	3	835,380
			22	45	47	2	92,070
			20	40	30	3	72,800
			16	45	31	2	44,640
	전라도	1	28	65	319	1	585,580
	소계	12					2,360,470
합계							234,713,470

위의 <표 2>, <표 3>에서 보듯이 경자양안의 경우 1책당 쪽수가 광무양안에 비해 많으며, 1쪽당 글자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좀 더 많다. 이같이 양안에 따라 1책의 쪽수, 그리고 1쪽에 담긴 글자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규장각에 소장된 양안의 글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규장각에 소장된 양안의 글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개의 샘플을 선택하여 글자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양안의 글자수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샘플을 뽑아 확인한 규장각 소장 양안의 글자 수는 2억 3천만 자가 넘는다. 경자양안 1억 9백만 자, 광무양안 1억 2천 2백만 자, 읍양안 2백만 자 등이다.

그런데 광무양안의 경우 경자양안과 다르게 지역별 차이 못지않게 작성기관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양지아문 양식으로 작성된 것과 지계아문 양식으로 작성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고, 양지아문 양식은 다시 중초본, 정서본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크게 중초본, 정서본, 지계아문본으로 구분했을 때 1책씩의 책크기를 잰 평균이 각각 32.6×40.7cm, 35.9×62.3cm, 47.6×39.5cm이다. 양지아문 양식 중초본을 기준으로 하여 정서본은 가로로 더 길고, 지계아문본은 세로로 더 길다. 중초본이 1쪽당 5-6필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반해 정서본은 2배인 10필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책 크기가 크고 1쪽당 글자수도 더 많다. 그러나 1책당 쪽수는 줄어들게 되며, 실제로 중초본과 정서본 사이에 기재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1책당 글자수는 중초본이나 정서본이나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계아문본은 사표 도형 등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양지아문 중초본보다 더 많은 필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경기, 경상, 강원도 등의 것이 일부 남아 있다. 따라서 광무양안 글자수를 작성기관별로 구분해보면 지역별로 추산한 것과 달라지는데 다음 <표 4>와 같이 1억 자가 조금 안된다.

<표 10> 광무양안 작성기관별 1책 당 쪽수, 글자수(추정)

분류	양지아문 양식 중초본	양지아문 양식 정서본	지계아문 양식
	『京畿道安城郡量案』 (奎 17647) 1책 003b면	『京畿安城郡量案』 (奎 17646) 1책 003b면	『京畿道水原郡量案』 (奎 17650)
1책 당 쪽수	272면	172면	284면
1쪽 당 글자수	258자	499자	454자
1책 당 글자수	70,176자	85,828자	128,936자
분류별 책수	858책	211책	163책
전체 자수(추산)	(858책×70,176자=60,211,008자)+(211책×85,828자=18,109,708자)+(163책×128,936자=21,016,568자)=99,337,284자		

어떠한 방식으로 추산하든 규장각에 소장된 양안의 글자수는 도합 2억 자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에 소장된 대구호적의 글자수가 약 4천만 자임을 감안하면, 양안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다.

이같이 양안자료가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를 전산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규장각에 소장된 대구부 호적대장 4천만 자에 대한 전산화 사업은, 25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양안 전산화의 경우,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전산화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광무양안의 경우 동일 지역에서 중초본과 정서본이 각각 1건씩 작성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산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산화 대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III.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과거 지리 자료들의 비교,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리 자료는 광무양안과 구한말의 토지 대장 두 가지로, 각각 대응되는 필지들을 짝지어 시대에 따른 변화를 찾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한말의 토지 대장은 지적 번호로 연결된 지도(지적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광무양안의 경우에는 연계되는 지도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정보를 합치기 위해서는 양안에 표시되어 있는 양전 방향, 사표 등을 고려하고 지목, 소유주 등을 토지 대장과 비교하여 후보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문서 자료인 양안을 가시화하여 지적도와 직접 연결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위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2. 연구 환경

하드웨어	
메모리	4.00GB
CPU	Intel(R) Core(TM) i5 CPU 750 @ 2.67GHZ
해상도	1680 x 1050 (20인치)

소프트웨어	
OS	Window 7
개발 언어	Silverlight 4.0 / Microsoft Silverlight 4 Toolkit April 2010
개발툴	Visual Studio 2010

3. 양안 데이터 프로세싱 프로그램 개발

양안 데이터 프로세싱 프로그램(LandMapDP)은 CVS 포맷의 텍스트 파일을 입력으로 받는다. 기존의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양안 데이터는 CSV 포맷으로 변경되어 저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LandMapDP 프로그램은 [그림 1]의 A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어진 양전방향에 따라 사이드바이사이드로 매칭을 시도하여 공간 없이 배치시킨다. 일반적으로 필지 노드간에 거리를 두지 않고 [그림 1]의 B와 같이 지형 간에만 거리를 둔다. LandMapDP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지형별 거리는 [표 1]과 같고 사용자에 의해서 거리 값은 수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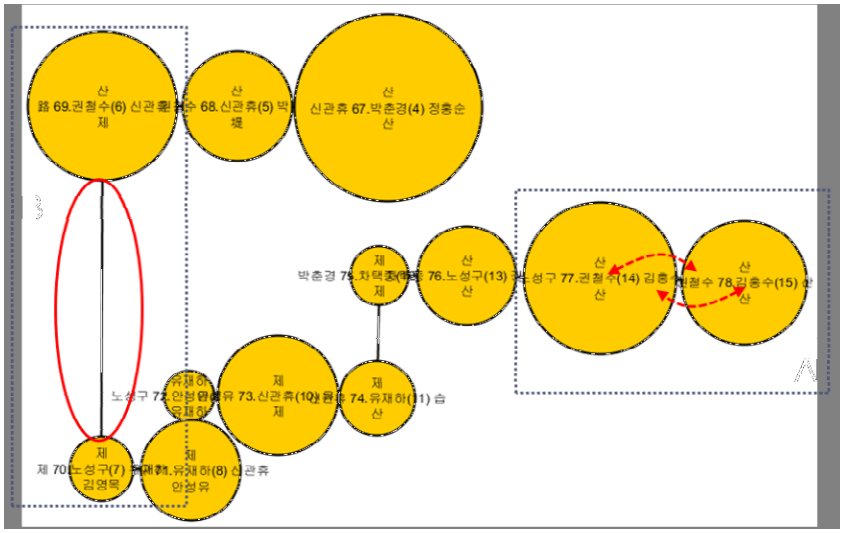

그림 1 - 기본 매칭 방법

표 13 - 지형별 거리

지형	거리 (Pixel)
거 (개천, 도랑)	20
록 (산기슭)	40
습 (습지)	30
제 (둑)	60
록 (도로길)	10
산	100

매칭을 시도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양전방향에 따라 매칭을 시도하지만, 미스매칭이 생길 때는 다른 방향으로 매칭 시도를 하여 가능한 매칭이 생길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필지 컬러링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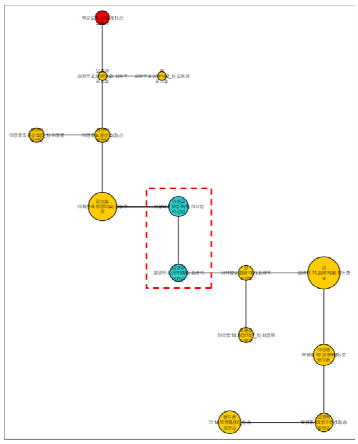

그림 2 - 미스매칭 필지 컬러링

LandMapDP 프로그램은 각 필지의 좌표를 계산할 때 첫 번째 패스에서는 기본적인 양전 방향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두 번째 패스에서는 첫 번째 패스 때 비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매칭을 다시 하여 매칭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림 3]과 같이 72번 필지와 그룹 되어 있는 필지들의 좌표들이 다시 계산되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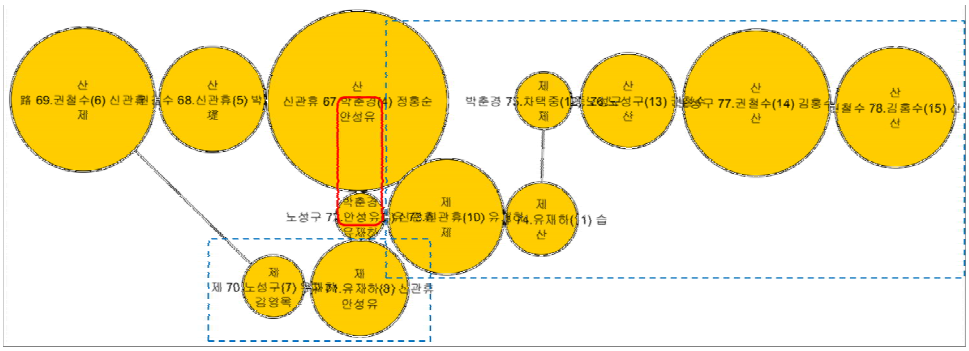

그림 3 - 2nd 패스 매칭

마명리 양안의 일부분을 Sample 입력으로 돌려본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생성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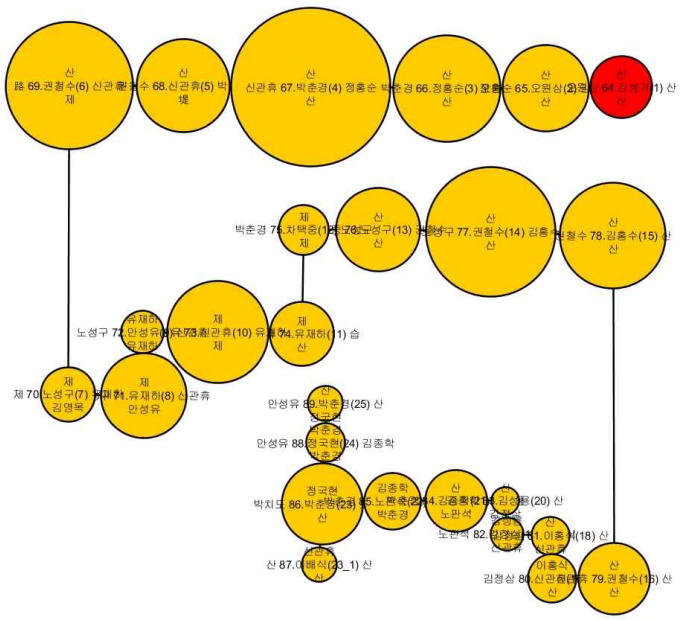

그림 4 - 마명리 양안 - Sample 파일

여러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은 yEd Works Tool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디버깅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실제 출력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 GraphML XML 포맷을 가지고 있은 파일이 생성되고 데이터 시각화의 입력 파일로 사용되게 된다.

```
17  <!-- Node Layout -->
18  <node id="n0">
19    <data key="globalNum">113</data>
20    <data key="localNum">21</data>
21    <data key="direction">남</data>
22    <data key="east">최경팔</data>
23    <data key="west">김만금</data>
24    <data key="south">방문숙</data>
25    <data key="north">황덕선</data>
26    <data key="area">930.0</data>
27    <data key="landLord">황기현</data>
28    <data key="x_coor">2560.017125685969</data>
29    <data key="y_coor">240.49083629743814</data>
30  </node>
```

```
1460  <!-- Edge Layout -->
1461  <edge id="e0" source="n1" target="n0"/>
1462  <edge id="e1" source="n2" target="n1"/>
1463  <edge id="e2" source="n3" target="n2"/>
1464  <edge id="e3" source="n4" target="n3"/>
1465  <edge id="e4" source="n5" target="n4"/>
1466  <edge id="e5" source="n6" target="n5"/>
1467  <edge id="e6" source="n7" target="n6"/>
1468  <edge id="e7" source="n8" target="n7"/>
1469  <edge id="e8" source="n9" target="n8"/>
```

그림 5 - 출력 파일: GraphML XML 포맷

4.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1) 개요

본 연구에 쓰인 입력 자료는 구한말에 제작된 지적도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토지 대장(광무양안)이다. 이 두 자료는 같은 장소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지만 표현 방법과 정확도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 대응하는 장소를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밑의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A는 현재 보이는 지적도를 표시하며 B는 지적도의 전체 모습의 축소본을 나타낸다. C는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 정보를 그래프로 표시 한 것이며 D에서는 현재 선택된 지적도와 양안의 구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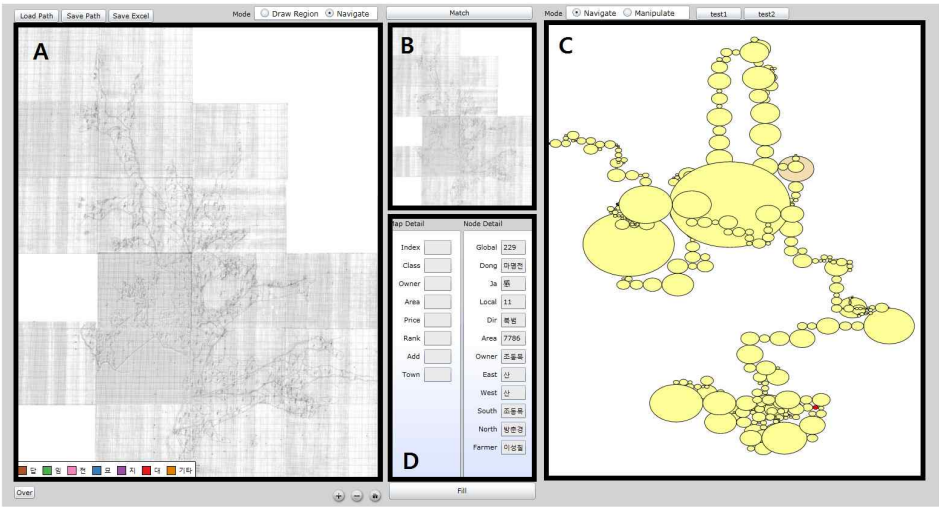

그림 1 - 프로그램 초기화면

위의 상태에서 사용자는 양안의 위치를 조정하여 지적도에 나타난 지형에 최대한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작업을 끝냈거나 중간에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자는 지적도와 양안 정보를 포개어 볼 수 있다. [그림 2]가 그 화면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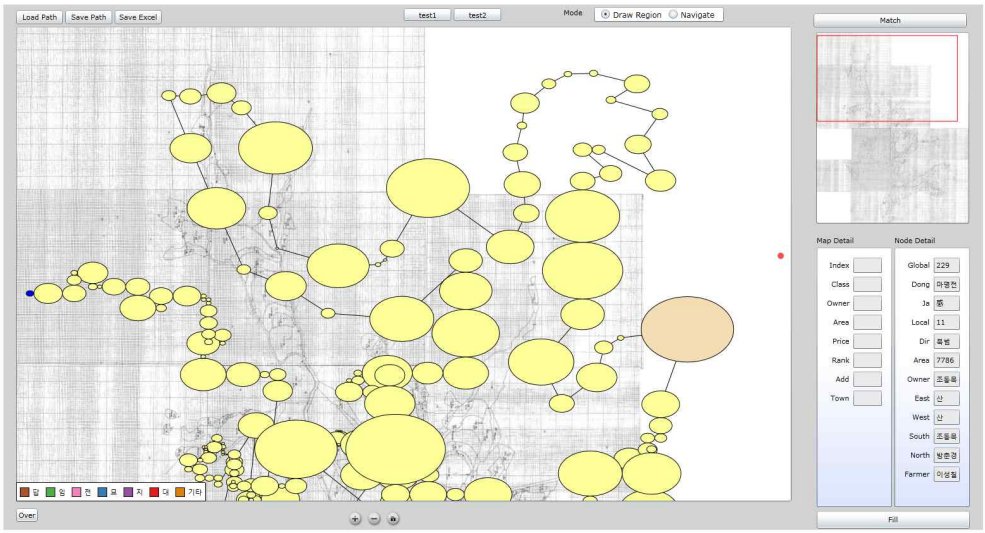

그림 2 - 지적도에 양안 정보를 포개놓은 화면

[그림 1]과 [그림 2]를 번갈아 가며 지적도와 양안의 연결 과정을 마치면 최종 결과물을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

2) 영역별 작업 개요

① 지적도

지적도 영역에서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지도위에 영역을 표시 할 수 있는 모드로, 필지를 대표하는 영역을 그린 후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대장에서부터 정보를 가져와 연동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그림 3]의 A처럼 자동으로 선택 영역의 안쪽을 그려주는 Fill을 사용하거나 B와 같이 선을 그릴 수 있는 Stroke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린 영역들은 [그림 4]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지목에 따라 색이 다르게 표현 된다. 마우스 커서를 위에 올려놓으면 해당 필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양안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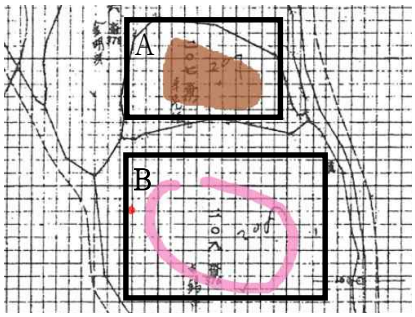

그림 3 - 지적도위에 영역을 그리는 예시

그림 4 - 지목에 따른 색 구분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지도를 확대 및 축소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드로, Silverlight에서 제공하는 DeepZoom을 사용하여 큰 지도를 빠르고 부드럽게 zoom in/out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 모드에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이나 마우스 휠, 마우스 드래그를 사용하여 지도를 움직이거나 확대/축소 할 수 있다. 하단 부분의 버튼을 이용하여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확대/축소도 가능하다.

② 양안

양안 정보는 초기 필지에서부터 양전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안 자체로는 지적도에서의 지리적 위치를 바로 알 수 없다. 또한 양전 방향과 사표를 이용하여 위치를 정해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지(원)을 클릭하여 위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원의 넓이를 유지하면서 모양을 수정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3]. 현재 선택 된 필지의 세부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상세 정보 창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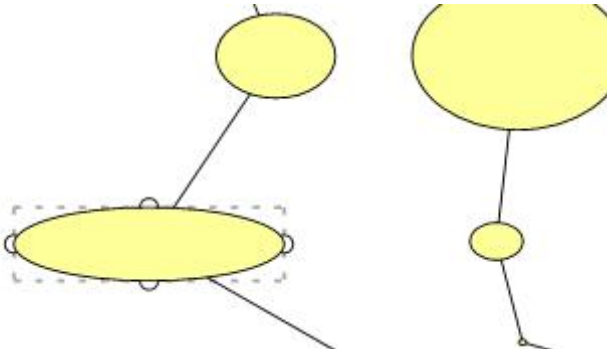

그림 5 - 필지 모양을 수정하는 예시

③ 지적도와 양안의 연결

지적도의 영역에 대응하는 필지를 찾은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연결 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마우스가 연결된 필지나 지적도의 영역에 포개어 질 경우 관련된 지역들이 표시가 된다. 특히 양안의 필지에는 해당 필지에 연결된 모든 지적도 영역이 동심원 형태로 표현된다. 동심원의 색은 연결된 지적도 영역의 색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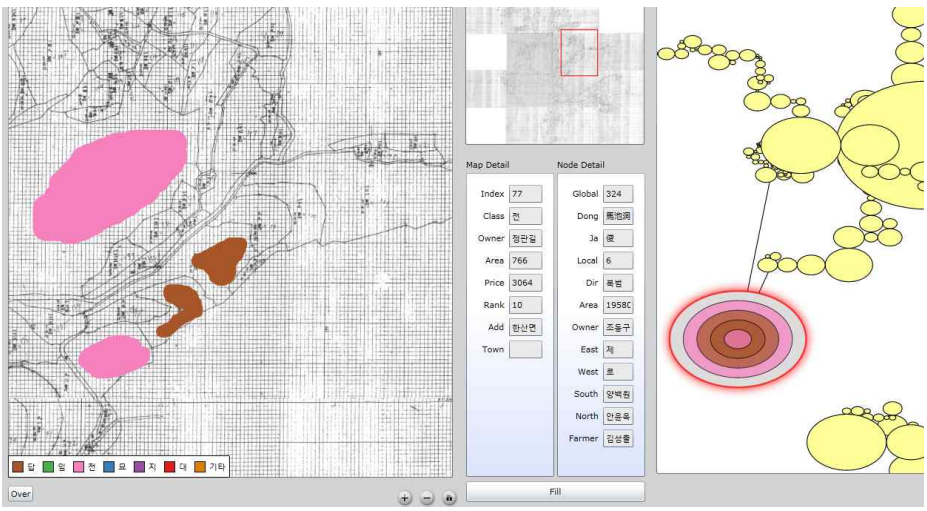

그림 6 - 지적도와 양안의 연결 관계가 표현된 예시

IV.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 분석

1.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필지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토지대장 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천군 마산면 마명리, 가양리, 요곡리, 신장리 네 개 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광무양안에서 찾아 개별 필지의 대응 양상을 비교하였다. 이 지역은 광무양전 당시 한산군에 소속된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과 더불어 서천군 마산면으로 편제되었다.
두 자료의 비교 검토 결과 동일지역에서 광무양안에 수록된 필지는 1,267필지, 토지대장에 수록된 필지는 1,658필지로 토지대장에 391필지가 더 수록되어 있었다. 양자를 비교한 결과 광무양안에 수록된 1,267필지 중 99.4%에 해당하는 1,259를 토지대장에서 확인되었으며, 토지대장에 수록된 1,658필지 중 1,435필지를 광무양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223필지 가운데 30필지는 墓, 林野 등으로 광무양안에서는 파악하지 않은 곳으로 실제의 미확인 필지는 193필지다.

<표 14>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필지 비교

지역 구분	광무양안	토지대장		
	(토지대장/광무양안)	(광무양안/토지대장)	미확인	제외
마명리	318/318(100.0%)	379/404(93.8%)	18	7
가양리	323/324(99.7%)	355/433(82.0%)	69	9
요곡리	339/339(100.0%)	356/431(82.6%)	69	6
신장리	279/286(97.6%)	345/390(88.5%)	37	8
합계	1,259/1,267(99.4%)	1,435/1,658(86.6%)	193	30

<비고> 행정구역은 토지대장의 구분에 따름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필지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1. 토지대장에서 파악한 토지 중 묘, 임야, 池 등과 같은 지목은 광무양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다.(마명리 7필지, 가양리 9필지, 요곡리 6필지, 신장리 8필지)

2. 토지대장 작성 시 필지분할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 가양리 : 특히 가대의 필지분할이 많았다. 광무양안 39필지 => 지적도 61필지
- 요곡리 : 광무양안 중 44필지가 분할되어 지적원도로 들어가고(분필), 지적원도 중 27필지는 광무양안 2개 이상의 필지를 합쳐 이루어짐(합필)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는 농토와 家垈에 대한 소유의식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향후 연구를 통해 경작지보다 가대에서 필지분할이 많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3. 광무양안 작성 이후에도 개간이 진행되었다.
- 토지대장의 전답 가운데 광무양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필지는 대개 개천이나 산기슭에 위치한 소규모의 자투리 토지로 경작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광무양전 이후 새로 개간된 곳으로 추정됨.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농지개간이 구릉지대에서 하천과 산기슭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2. 광무양안의 토지비옥도 파악 현황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광무양안의 전품과 토지대장의 등급을 비교한 결과 지목과 지역에 따라 상관관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1) 田

* 양안의 전품과 토지대장의 등급 사이에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양안의 전품이 낮으면 토지대장에서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① 마명리

<표 15> 마명리 田에 대한 광무양안의 田品과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단위: 필지)

광무양안 / 토지대장	1등	2등	3등	4등	5등	합계
5-6	1					1
7-8	3	67(88.2)		26(37.7)	6	102
9-10		9	11	41(59.4)	43(87.8)	104
11-12				2		2
합계	4	76(100)	11	69(100)	49	209

<비고> * 지목은 토지대장 기준
* (괄호)안의 숫자는 %임
* 11-12 등급은 양안에서 전이였던 것이 토지대장에 답으로 바뀐 경우

* 2등은 7-8급, 3-5등은 9-10급에 집중 분포함
* 양안에서 2등급으로 판정된 필지의 대부분은 垈田임. 광무양안에서 대전은 74필지. 이 가운데 4필지 1등, 70필지 2등으로 판정됨. 대전은 토지대장에서 5-6등급 1필지, 7-8등급 64필지, 9-10등급 7, 11-12등급 2필지로 됨.

② 가양리

<표 16> 가양리 田에 대한 광무양안의 田品과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단위: 필지)

광무양안 / 토지대장	1등	2등	3등	4등	5등	합계
7-8	2	10	17	2	1	32
9-10		4	17	64	20	105
총합계	2	14	34	66	21	137

* 토지대장의 등급이 7-9등에만 분포하며, 양안의 전품과 토지대장의 등급 사이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1등~2등은 7-8급에, 4등~5등은 9-10급에 집중 분포함. 다른 지역에 비해 집중도가 높음

③ 신장리

<표 17> 신장리 田에 대한 광무양안 전품과 토지대장 등급 비교 (단위: 필지)

광무양안 / 토지대장	2등	3등	4등	5등	6등	계
6			1			2
7-8	2		23	14		39
9-10		1	12	43	1	57
15-16				2		2
17-18			7			7
불명			2	5	1	8
계	2	1	45	64	2	114

* 마명리나 가양리에 비하여 토지대장의 등급이 6급-18급으로 넓게 분포함. 그 가운데 4등은 7-8급, 5등은 9-10급에 집중된 양상이 나타남.
* 15-18 등급은 양안 상의 田이 토지대장의 畓 으로 바뀐 경우

2) 답

양안의 전품과 토지대장의 등급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보다 낮게 나타난다. 전에 비하여 토지대장의 등급이 9-20급으로 편제되어 분포가 분산적이다.

① 마명리

<표 18> 마명리 畓에 대한 광무양안의 田品과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단위: 필지)

광무양안 / 토지대장	2등	3등	4등	5등	합계
11-12	8	4	1		13
13-14	8	37(42.0)	4	1	50
15-16	23(56.1)	31(35.2)	22(45.8)	7(36.8)	83
17-18	2	15(17.0)	18(37.5)	10(52.6)	45
19-20		1	3	1	5
합	41(100)	88(100)	48(100)	19(100)	196

<비고> * 지목은 토지대장 기준

* (괄호)안의 숫자는 %임

* 양안의 전품과 토지대장의 등급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보다 낮게 나타남. 양안의 2등급이 토지대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았기 때문임.

* 양안의 2등급을 부여받고, 토지대장에서 15-16등급을 받은 필지는 대부분 지주-소작관계가 형성된 토지임. 양안에서 2등급으로 판정된 41필지는, 소작지[時作] 29필지, 자작지[時主] 12필지로 구성됨.

② 가양리

<표 19> 가양리 畓에 대한 광무양안의 田品과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단위: 필지)

광무양안 / 토지대장	1등	2등	3등	4등	5등	총합계
9-10	5	3				8
11-12	13	14	7	3		37
13-14	2	25	28	4	1	60
15-16		3	17	15	2	37
17-18			5	14		19
19			2	5	3	10
총합계	20	45	59	41	6	171

* 광무양안에서 1등~5등으로 분포한 토지가 9~19급에 분포하여 분산됨. 1등-> 11-12급, 2등`3등은 13-14급, 4등은 15~18에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임

③ 신장리

<표 20> 신장리 畓에 대한 광무양안 전품과 토지대장 등급 비교 (단위: 필지)

광무양안 / 토지대장	2등	3등	4등	5등	6등	계
8		2				2
9-10	8	5	3	2		15
11-12	7	6	5			18
13-14	7	3	5			15
15-16		9	9	3		21
17-18		10	16	3		29
19-20			1			1
불명		4	1			5
계	22	39	40	8	0	109

* 8-10 등급은 양안 상의 畓이 토지대장에서 田으로 바뀐 경우
* 양안의 전품이 어느 정도는 토지대장 상에 반영되지만, 田에 비해 등급과 전품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남.
* 대전의 경우 필지별로 대응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
* 토지대장의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무양안에서 畓이 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광무양안의 전품과 토지대장의 등급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광무양안이 실지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광무양안의 소유주 및 경작인 파악 현황

1) 소유 필지 현황

① 광무양안의 시주 1인당 소유 필지 현황

<표 21> 마명리`가양리 광무양안에 등재된 시주 1인당 소유 필지 현황(단위:시주 수)

필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5	26	합계
마명리	57	28	16	13	12	5	1	3	1	1	1	1	1	140
가양리	52	20	16	13	6	1	1	1		2	2			114
합계	109	48	32	26	18	6	2	4	1	3	3	1	1	254
비율	42.9%	18.9%	12.6%	10.2%	7.1%	2.4%	0.8%	1.6%	0.4%	1.2%	1.2%	0.4%	0.4%	100.0%

* 마명리와 가양리의 전체 時主 254명 중 109명이 1필지를 소유. 마명리는 57명으로 전체 시주의 40.7%, 가양리는 52명으로 전체 시주의 45.6%를 점함.

* 전체의 91.7%가 5필지 이하의 토지를 소유. 대부분의 시주는 소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음.
=> 지주제의 발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음.

② 토지대장의 지주 1인당 소유 필지 현황

<표 22> 마명리`가양리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주 1인 당 소유 필지 현황

필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6	31	합계
마명리	57	28	9	12	1	4	4	3	2	1	2	2	1	1	1	128
가양리	72	38	17	5	5	1	1	1								140
합계	129	66	26	17	6	5	5	4	2	1	2	2	1	1	1	268
비율	48.1%	24.6%	9.7%	6.3%	2.2%	1.9%	1.9%	1.5%	0.7%	0.4%	0.7%	0.7%	0.4%	0.4%	0.4%	100.0%

* 마명리와 가양리의 전체 지주 268명 중 129명이 1필지를 소유. 마명리는 57명으로 전체 지주의 44.5%, 가양리는 72명으로 51.4%를 차지. 대부분의 지주는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마명리는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대지주도 나타나는데 비하여 가양리는 1~3필지에 집중되어 대부분이 영세 지주임

=> 대체로 지주제의 발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광무양안에서도 확인되었음.

③ 광무양안의 개별 時主의 토지가 토지대장에서 분할되는 양상 : 마명리

<표 23> 광무양안의 개별 時主의 토지가 토지대장에서 분할되는 양상

지주 수	1	2	3	4	5	6	7	8	합계
시주 수	72	38	17	5	5	1	1	1	140

* 광무양안의 시주는 140인
* 광무양안에 등재된 시주 1인의 토지가 토지대장 작성 시 지주 1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72건으로 전체의 절반.
* 광무양안에 등재된 시주 1인의 토지가 토지대장 작성 시 2인의 지주에게 분할되어 이전되는 경우가 38건으로 다음.

=> 약 10년 사이에 절반의 토지가 2인 이상에게 분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광무양안의 시주 파악이 현실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④ 토지대장의 개별 지주의 토지 유래 : 마명리

<표 24> 토지대장의 개별 지주의 토지 유래

시주 수	1	2	3	4	5	6	7	8	9	14	합계
지주 수	74	28	11	3	2	2	4	1	2	1	128

* 토지대장의 지주수는 128명
* 토지대장에 등재된 개별 지주 땅의 소종래를 살펴보면 광무양안의 시주 1명의 전답으로 구성된 경우가 74건으로 전체의 50%이상.
* 토지대장에 등재된 개별 지주 땅의 소종래를 살펴보면 광무양안의 시주 2명의 전답으로 구성된 경우가 28건임.

=> 이는 광무양안에서 확인되었던 현상임. 즉 광무양안의 시주 파악이 현실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⑤ 광무양안에서 확인되는 경영 현황

<표 25> 광무양안에서 확인되는 경영 현황 : 마명리

전답 / 경영형태	답		전		대		합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자작[時主]	70	43.8	94	94	49	84.5	213	67.0
소작[時作]	90	56.3	6	6	9	15.5	105	33.0
合	160	100	100	100	58	100	318	100

<표 26> 광무양안에서 확인되는 경영 현황 : 가양리

전답 / 경영형태	답		전		대		합계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자작[時主]	136	81.9	128	100.0	47	77.0	311	87.6
소작[時作]	30	18.1			14	23.0	44	12.4
合	166	100.0	128	100.0	61	100.0	355	100.0

* 자작지의 비율은 마명리 67%, 가양리 87.6%, 신장리 89%, 요곡리 95.3%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전체적으로 田의 자작 비율은 높은 편이며, 답의 경우는 편차가 심함. 답의 자작 비율은 가양리가 81.9%인데 비해 마명리의 경우 43.8%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주제의 발달 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⑥ 광무양안 자소작지 구분과 토지대장 지주 주소와의 상관성

<표 27> 광무양안 자소작지 구분과 토지대장 지주 주소와의 상관성 (단위: 필지) : 마명리

주소 / 유형	마명리	타리	타면	타군	경성	타도	합계
자작지	149	43	62	8	6	5	273
소작지	23	9	54	11	34	1	132
합계	149	43	62	8	6	5	405

<표 28> 광무양안 자소작지 구분과 토지대장 지주 주소와의 상관성 (단위: 필지) : 가양리

주소 / 유형	가양리	타리	타면	타군	타도	경성부	합계
자작지	239	17	14	27	7	7	311
소작지	23	5	1	3	4	8	44
합계	262	22	15	30	11	15	355

<표 29> 광무양안의 자소작지 구분과 토지대장 지주 주소와의 상관성 (단위: 필지) : 신장리

주소 / 유형	신장리	타리	타면	타군	타도	경성	기타	합계
자작지	230	13	26	2	10	10	1	292
소작지	4	3	4	0	8	15	1	35
합계	234	16	30	2	18	25	2	327

* 토지대장에 등장하는 지주의 거주지 분포(양안과 필지별로 대응되는 327개 필지만을 이용). 지주가 같은 면리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를 자작으로 간주하면 자작비율이 73%, 소작비율이 27%. -> 양안에 비해 소작비율이 높음. 토지대장에서 부재지주로 파악되는 토지가 광무양안에서는 자작지로 파악되었음을 확인.
* 토지대장에서는 부재지주지로 파악되는 필지 가운데 적지 않은 필지가 광무양안에서는 자작지로 파악됨.

=> 광무양안의 시주파악이 현실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

⑦ 광무양안 시주명과 토지대장 지주명의 관계

<표 30> 마명리 광무양안 시주명과 토지대장 지주명의 관계 (단위 : 필지)

住所 / 類型	馬鳴里	마산面 他里	한산郡 他面	충청도 타군	경성	기타 타도	합계
姓名 同	3			13		1	17
姓同名不A	7	2	18				27
姓同名不B	65	15	34	17	7	2	140
小計	72	17	52	17	7	2	167
姓名不同	97	35	51	2	33	3	221
合計	172	52	103	32	40	6	405

비고 : 성이 동일하고, 나아가 이름 두 글자 가운데 한 글자가 동일한 경우[姓同名不A]. 양안의 惠자 2번과 토지대장의 51번지는 동일한 토지인데, 양안의 시주는 劉載夏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주는 劉載重이다. 이러한 사례가 모두 27건 확인됨. .
필지의 인명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달리 기재된 사례[姓同名不B]. 양안의 漢자 5번과 토지대장의 48지는 동일한 토지인데, 양안의 시주는 李載潤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주는 李鍾翊이다. 이러한 사례가 모두 140필지에서 확인됨.

* 인명이 일치하는 비율이 낮음. 동일 필지의 인명이 일치하는 사례는 405필지 가운데 겨우 17필지(전체의 4.2%)에 지나지 않음.

<표 31>가양리 광무양안 시주명과 토지대장 지주명의 관계 (단위 : 필지)

성명구분	가양리	타리	타면	타군	타도	경성부	합계
姓名 同	13						13
姓同名不A	21						21
姓同名不B	126	8	3	7	7		151
小計	147	8	3	7	7	0	172
姓名不同	102	14	12	23	4	15	170
合計	262	22	15	30	11	15	355

<표 32> 신장리 광무양안 시주와 토지대장 지주의 인명 사이의 관계 (단위 : 필지)

	신장리	타리	타면	타군	타도	경성	기타	합계
동명	5	4	1					10
동성	62	6	5	1	7	8		89
성명부동	167	6	24	1	11	17	2	228
합계	234	16	30	2	18	25	2	327

* 인명 사이의 일치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이름이 같은 경우는 10필지(3%)
* 신장리 혹은 동면에 거주하는 시주들 사이에서 인명의 상관관계가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크게 차이는 없음(동명 : 90%, 동성 : 76.4%, 성명부동 : 75.8%).

=>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인명이 서로 일치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 이는 광무양안의 시주파악이 현실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4.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 분석 결과

4개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향우 더 많은 지역의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상호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즉 광무양과 토지대장의 비교검토, 나아가 경자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검토를 통해 광무양안, 나아가 조선시대 양안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검토에서 확인된 사실에 내포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광무양안은 토지의 면적과 등급 파악 면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실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파악은 광무양안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밀성을 더욱 높여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광무양안의 소유관계 파악은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관계 파악과 그 성격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지의 개발 상황이나 지주제 및 토지소유관계의 변동 상황도 엿볼 수 있었다.
이같이 4개 마을의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해본 결과는, 기존 학계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면도 있고, 상이한 점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광무양안, 나아가 조선시대 양안의 성격을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범위한 사례연구는 수작업을 통해서는 거의 실현되기 어렵다. 즉 양안연구, 나아가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양안과 토지대장의 전산화와, 이를 바탕으로 두 장부를 연결시키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과 활용방안

1. 양안대장 전산데이터의 공개

양안대장 전산데이터를 알기 쉽게 프로그래밍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선조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전통사회의 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2. 호적대장 연구 및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활성화

세계의 학계에서 토지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비한다면 한국은 질적·양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료에 대한 정리와 연구가 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양안대장 자료가 전산화되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된다면, 농업사를 위시한 역사학의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망라하는 인문·사회과학 학문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3. 계량사료 전산화방안의 제시

국학고전자료의 전자데이터화 작업은 기술사료의 자구를 있는 그대로 전자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고전자료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록양식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전산화 방법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안대장 전산화는 계량사료의 전산화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전산화된 내용과 자료 원본의 내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전자료의 전산화는 색인작업의 편리라는 점만으로도 학문발전에 획기적인 의의를 지녔다. 하지만 전산화된 결과만을 제시함으로써 원본의 내용과 곧바로 대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자료의 원본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전산입력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전산데이터의 활용을 가장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첨부사항을 개발하고, 자료의 원본을 함께 대조할 수 있도록 원본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양안대장의 전산화 과정과 전산데이터의 CD제작을 통하여 국학고전자료의 전산화 방안의 하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VI. 별첨 : 규장각 소장 양안 목록

1. 庚子量案

<표 33> 규장각 소장 庚子量案 목록

도	군현	청구기호	서명	작성연도	책수
경상도	南海	奎14711	南海縣(西面)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奎14712	南海縣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奎14713	南海縣(三東面)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奎14714	南海縣(南面)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奎14715	南海縣(雲川面)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奎14716	南海縣二東面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奎14717	南海縣(邑內面)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1冊
	比案	奎14952-v.1-5	慶尙道比案縣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5冊
	尙州	奎14627	尙州庚子田案	刊年未詳	1冊
		奎14628-v.1-2	尙州庚子田案	刊年未詳	2冊
		奎14710-v.1-2	尙州庚子田案	刊年未詳	2冊
		奎14954	尙州牧庚子改量田案	景宗1年(1721)	1冊
	醴泉	奎14956-v.1-8	慶尙道醴泉庚子改量田案	景宗2年(1722)	8冊
	龍宮	奎14953	龍宮縣庚子改量田案	景宗2年(1722)	1冊
		奎14955-v.1-6	龍宮縣庚子改量田案	景宗2年(1722)	6冊
	義城	奎14951-v.1-24	義城縣庚子改量田案	肅宗46年(1720)	24冊
	소계				57冊
전라도	高山	奎15033-v.1-3	全羅右道高山縣己亥量田導行帳	刊年未詳	3冊
		奎15034-v.1-8	全羅右道高山縣己亥量田導行帳	景宗1年(1721)	8冊
	南原	奎15028-v.1-5	全羅左道南原縣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5冊
	綾州	奎15040-v.1-5	全羅道綾州牧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5冊
	潭陽	奎27494	全羅左道潭陽府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順天	奎14629	全羅左道順天府別良面下道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0	全羅左道順天府(呂水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1	全羅左道順天府(長平面道里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2	全羅左道順天府(治村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3	全羅左道順天府(下沙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4	全羅左道順天府(住巖下道大光洞)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5	全羅左道順天府(蘇安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7	全羅左道順天府羅浦面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8	全羅左道順天府(松廣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39	全羅左道順天府(呂水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41	全羅左道順天府(呂水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42	全羅左道順天府(西面)下道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43	全羅左道順天府(西面)下道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644	全羅左道順天府(西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14709	全羅道順天府(雙巖面)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1冊
		奎25037	全羅道順天府己亥量田導行帳	刊年未詳	1冊
	任實	奎15026-v.1-10	全羅左道任實縣己亥量田導行帳	肅宗45年(1719)	10冊
	全州	奎15035-v.1-20	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導行帳	肅宗46年(1720)	20冊
	和順	奎15037-v.1-7	全羅左道和順縣己亥量田導行帳	肅宗46年(1720)	7冊
	소계				75冊
합계					132冊

2. 光武量案

<표 34> 규장각 소장 光武量案 목록

도	군현	청구기호	서명	작성연도	책수
강원도	杆城	奎17692-v.1-11	江原道杆城郡田畓量案	光武7年(1903)	11冊
	平海	奎17691-v.1-11	江原道平海郡改量案	光武6年(1902)	11冊
	소계				22冊
경기도	果川	古 4258.5-10	京畿果川郡量案	光武4年(1900)	1冊
		奎17655-v.1-14	果川郡量案	光武4年(1900)	14冊
	廣州	奎17641-v.1-70	京畿廣州府量案	光武4年(1900)	70冊
	水原	奎17650-v.1-66	京畿道水原郡量案	光武7年(1903)	66冊
		奎17651-v.1-73	京畿道水原郡量案	光武4年(1900)	73冊
	安山	奎17654-v.1-15	京畿安山郡量案	光武4年(1900)	15冊
	安城	奎17646-v.1-24	京畿安城郡量案	光武6年(1902)	24冊
		奎17647-v.1-30	京畿道安城郡量案	光武5年(1901)	30冊
	陽城	奎17652-v.1-18	京畿陽城郡量案	光武6年(1902)	18冊
		奎17653-v.1-28	陽城郡量案	光武5年(1901)	28冊
	陽智	奎17657-v.1-11	京畿陽智郡量案	光武6年(1902)	11冊
		奎17658-v.1-16	陽智郡量案	光武5年(1901)	16冊
	驪州	奎17642-v.1-41	京畿驪州郡量案	光武5年(1901)	41冊
	龍仁	奎17644-v.1-27	京畿道龍仁郡量案	光武7年(1903)	27冊
		奎17645-v.1-29	龍仁郡量案抄	光武4年(1900)	29冊
	陰竹	奎17659-v.1-17	京畿陰竹郡量案	光武5年(1901)	17冊
	利川	奎17643-v.1-29	利川郡量案	光武5年(1901)	29冊
	竹山	奎17656-v.1-26	竹山郡量案	光武5年(1901)	26冊
	振威	奎17648-v.1-13	京畿振威郡量案	光武6年(1902)	13冊
		奎17649-v.1-21	京畿振威郡量案	光武5年(1901)	21冊
	소계				569冊
경상도	慶州	古大 4258.5-17	慶尙北道慶州郡量案	光武7年(1903)	139冊
	東萊	奎18111	慶尙南道東萊郡量案	光武8年(1904)	2冊
	山淸	奎17689-v.1-15	慶尙南道山淸郡量案	光武8年(1904)	15冊
	鎭南	奎17690-v.1-11	慶尙南道鎭南郡東面量案	光武8年(1904)	11冊
	陜川	奎17688-v.1-20	慶尙南道陜川郡量案	光武8年(1904)	20冊
	소계				187冊
충청도	槐山	奎17679-v.1-9	忠淸北道槐山郡量案	光武4年(1900)	9冊
	木川	奎17675-v.1-15	忠淸南道木川郡量案	光武4年(1900)	15冊
	文義	奎17674-v.1-13	忠淸南道文義郡量案	光武4年(1900)	13冊
	扶餘	奎17663-v.1-16	忠淸南道扶餘郡量案	光武5年(1901)	16冊
	石城	奎17669-v.1-9	忠淸南道石城郡量案	光武6年(1902)	9冊
		奎17670-v.1-9	忠淸南道石城郡量案	光武5年(1901)	9冊
	牙山	奎17664-v.1-30	忠淸南道牙山郡量案	光武4年(1900)	30冊
	燕岐	奎17662-v.1-17	忠淸南道燕岐郡西面量案	光武4年(1900)	17冊
	連山	奎17673-v.1-25	忠淸南道連山郡量案	光武5年(1901)	25冊
	延豊	奎17685-v.1-5	忠淸北道延豊郡量案	光武5年(1901)	5冊
	永春	奎17687-v.1-12	忠淸北道永春郡量案	光武6年(1902)	12冊
	溫陽	奎17666	忠淸南道溫陽郡量案	光武5年(1901)	9冊

		奎17667-v.1-18	忠淸南道溫陽郡量案	光武5年(1901)	18冊
	陰城	奎17680-v.1-12	忠淸北道陰城郡量案	光武4年(1900)	12冊
	全義	奎17665-v.1-12	全義北面量案	光武4年(1900)	12冊
	定山	奎17677-v.1-12	忠淸南道定山郡量案	光武5年(1901)	12冊
	鎭岑	奎17676-v.1-10	忠淸南道鎭岑郡量案	光武5年(1901)	10冊
	鎭川	奎17678-v.1-15	忠淸北道鎭川郡量案	光武4年(1900)	15冊
	天安	奎17668-v.1-27	忠淸南道天安郡量案	光武4年(1900)	27冊
	淸安	奎17686-v.1-12	忠淸北道淸安郡東面量案	光武5年(1901)	12冊
	忠州	奎17681-v.1-38	忠淸北道忠州郡量案	光武6年(1902)	38冊
		奎17682-v.1-98	忠淸北道忠州郡量案	光武4年(1900)	98冊
	韓山	奎17671-v.1-9	忠淸南道韓山郡量案	光武7年(1903)	9冊
		奎17672-v.1-16	忠淸道韓山郡量案	光武5年(1901)	16冊
	懷仁	奎17684-v.1-6	忠淸北道懷仁郡量案	光武5年(1901)	6책
	소계	454冊			
합계		1232冊			

3. 邑量案

<표 35> 규장각 소장 읍양안 목록

도명	군현	청구기호	원명	작성연도	책수
경상도	彦陽	奎15008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畓量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09	慶尙道彦陽縣田畓量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10	慶尙道彦陽縣雙水亭洞田畓結大帳	高宗8年(1871)	1冊
		奎15013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畓量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14	慶尙道彦陽縣田畓量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15	慶尙道彦陽縣中南面方基洞田畓缺打量正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16	慶尙道彦陽縣北三洞田畓結量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17	慶尙道彦陽縣平里洞德員禮員田畓打量冊	高宗8年(1871)	1冊
		奎15018	慶尙道彦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	高宗8年(1871)	1冊
		奎15019	慶尙道彦陽縣加川洞田畓改量野草	高宗8年(1871)	1冊
	蔚山	奎15012	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英祖5年(1729)	1冊
	소계	11冊			
전라도	靈光	奎25036	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	高宗5年(1868)	1冊
합계		12冊			

VII. 별첨

양안의 이해(가제)

2010.8

양안의 이해(가제)

목 차

조선시대 양전과 양안

김건태

-목차-

I. 갑술·경자양전의 상호관련

전통시대 국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양전(量田)이라 칭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양안(量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양전을 시행하였다. 삼국시대 때 이미 양전이 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 때 양안도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기록물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에도 양전을 실시하였지만, 그 결과를 담은 양안은 현존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법전에 따르면 20년마다 양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건국이후부터 15세기 후반까지 꽤 여러 번 양전이 실시되었으나, 16세기들어서는 전국적인 양전은 시행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인 양전은 1634년의 갑술양전과 1719 · 1720년의 경자양전, 미완의 사업으로 끝난 광무양전뿐이었다.

이렇듯 조선초기에는 전국적 양전이 몇 번 실시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조선전기에 작성된 양안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갑술양전의 실상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또한 양안 문제이다. 양전의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살필 수 있는 것은 경자양전이다.

1. 자호개정

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연대기 자료는 갑술양전과 경자양전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는 경상도 칠곡 석전 광주이씨 감사댁 자료를 통해 당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경상도 칠곡 석전 광주이씨 감사댁은 1708년 경 갑술양안에서 등사한 전답안[이하 갑술전답안으로 칭함]과 1720년 경 경자양안에서 등사한 전답안[이하 경자전답으로 칭함]을 남기고 있다. 감사댁 전답안은 칠곡, 인동, 성주 지역에 소재한 전답의 실상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두 전답안을 상호 비교하면 이들 세 지역 갑술·경자양전의 상호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 갑술·경자양전시기의 자호는 매 5결마다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주어졌다. 그러므로 동일 필지의 자호라도 양전이 새로 시행되면 바뀔 수 밖에 없다. 양전을 시작하는 기점, 양전을 진행하는 방향, 두 시기 사이에 일어난 전답의 증감 정도에 따라 동일 필지의 자호가 변하기 때문이다. 감사댁의 전답안은 갑술·경자양전 시에 일어난 자호변경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갑술양전 시에 주어진 칠곡·인동지역의 전답자번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모두 바뀌었다. 칠곡지역의 경우 갑술양전 시에 주어진 29개의 자호(是,事,嚴,與,敬,孝,竭,忠,則,盡,自,命,臨,深,履,薄,夙,似,蘭,甚,竟,登,攝,夫,設,伯,意,侈,磻)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33개의 새로운 자호(言,初,愼,終,宜,榮,所,籍,甚,竟,學,優,登,仕,攝,職,甘,孔,懷,兄,弟,氣,交,箴,逸,守,雅,陞,纓,土,盟,精,呂)로 바뀌었다. 자호가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전답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동지역의 경우 갑술양전시에 정해진 4개의 자호(章,以,集,墳)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4개의 새로운 자호(愛,睦,驅,轂)로 개정되었다. 성주지역의 경우 갑술양전 시에는 자호가 12개(紡,侍,擧,足,悅,豫,嫡,後,盜,叛,布,皆)였으나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주어진 자호는 전답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칠곡지역의 자호 29개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33개로 늘어난 까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갑술양전이후 새로 개간된 전답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양안에 등재됨으로써 결부수가 늘어났거나, 둘째, 갑술양안에도 올라있던 전답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결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원인 가운데 주된 원인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첫 번째 것이다.

2. 갑술·경자양전의 전품 책정원칙

전답의 결부수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전품이다. 따라서 갑술·경자양전 당시 정부는 양전시행 이전에 미리 제시한 전품책정에 대한 기본틀

을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했다. 인조 12년 경상좌도 양전사 이현은 갑술양전을 맞이하여 이전의 전품에 구애되지 말고, 토지가 임란 이전보다 척박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전품을 책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일정량의 결부를 확보하려던 정부는 그의 주장을 무시하고 평시, 즉 임란 이전의 전품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전 시기의 전품을 계승하는 관행은 경자양전까지 지속되었다. 경자양전의 전품은 개간된 전답과 부득이한 사유로 전품을 다시 책정하여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그 이전, 즉 갑술양전 시의 전품을 계승하였다. 이는 약 90여년 전에 책정된 전품을 계승하는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00여년 전에 책정된 전품을 계승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갑술양전 시의 전품이 앞에서 보았듯이 임란 이전의 것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36> 갑술·경자양전 당시 칠곡지역 전답등급

		갑술양전			경자양전		
	등급	필지	결-부-속	두락	필지	결-부-속	두락
전	3	11	2-36-5	114	9	1-52-1	94.3
	4	7	1-77-9	60	6	1-10-9	77.7
	5	1	0-30-4	25	2	0-25-1	25
	6	3	0-09-8	13	3	0-09-5	13
	불명				1	0-09-1	7
	합계	22	4-54-6	212	21	3-06-7	217
답	2	5	0-56-0	16	4	0-53-2	13.8
	3	41	2-81-8	88.7	37	3-06-5	92.4
	4	31	2-18-2	76.4	22	1-99-3	69.1
	5	2	0-14-5	12	2	0-16-9	12
	6	2	0-02-7	0.8	2	0-03-0	2.1
	불명				3	0-21-5	9
	합	81	5-73-2	193.9	70	6-00-4	198.4

<표 37> 갑술양전, 경자양전 당시 인동지역 전답등급

		갑술양전			경자양전		
	등급	필지	결-부-속	두락	필지	결-부-속	두락
전	1	1	0-23-2	10	2	0-29-8	15
	3	1	0-14-2	5			
	합계	2	0-37-4	15	2	0-29-8	15
답	1	1	0-22-6	3	1	0-23-2	3.0
	2	2	0-05-3	3			
	3	1	0-10-3	1.5			
	4	3	0-19-9	7			
	5	1	0-13-4	4			
	불명				5	0-46-6	15.5
	합	8	0-71-5	18.5	6	0-69-8	18.5

<표 38> 갑술·경자양전 당시 성주지역 전답등급

		갑술양전		경자양전	
	등급	필지	결-부-속	필지	결-부-속
전	1			1	0-08-4
	2	3	0-27-8	3	0-31-9
	3	1	0-06-9	1	0-07-4
	4	2	0-09-2	2	0-07-5
	5	2	0-05-1	2	0-05-8
	불명	1	0-11-6		
	합계	9	0-60-6	9	0-61-0
답	1	11	0-90-7	6	0-95-7
	2	7	0-99-0	8	1-12-4
	3	2	0-18-9	2	0-11-9
	4	2	0-22-6	2	0-23-0
	불명	1	0-05-5		
	합	23	2-36-7	18	2-43-0

외관상으로 갑술·경자양전 공히 그 이전의 전품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지만, 양자의 내면적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이현의 주장을 근거로 본다면 갑술양전의 전답등급은 현실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임란으로 황폐화된 농촌이 갑술양전 때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란이전에 책정된 전품을 계승함으로써 더 많은 결부수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전답을 소유한 농민에게 전세가 현실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경자양전의 실상은 갑술양전 때의 상황과는 달랐다. 갑술양전 이후 보·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이 다수 설치되고, 이앙법이 더욱 널리 보급되는 등 전답의 비옥도와 농법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경자양전 당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갑술양전의 전품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전답을 소유한 농민에게 전세가 현실보다 가볍게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자양전 당시 갑술양전의 전품을 계승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정부는 관리, 토호배들의 비리가 개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전품을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였다. 그 결과 경자양전 당시 갑술양전의 전품은 잘 계승되었다. 감사댁의 전답안은 경자양전이 갑술양전의 전품을 계승한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감사댁의 두 전답안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필지의 전답 등급을 정리한 <표1>, <표2>, <표3>에서 보듯이 경자양전의 등급은 갑술양전 때에 정해진 것이 대부분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갑술·경자양전 당시의 필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몇 개의 필지에서 합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먼저 칠곡지역의 등급변화를 살펴보면, 갑술양안의 103필지(전 22, 답 81) 가운데 94필지(전 20, 답 74)는 등급이 불변이고, 5필지(전 1, 답 4)필지는 등급이 변하였고, 4필지(전 1, 답 3)는 변화유무를 알 수 없다. 그런데 등급이 변한 필지 가운데 4필지(전 1, 답 3)는 갑술양전시 등급이 달랐던 2필지가 경자양전에서 1필지로 통합되면서 등급이 변화된 것이다. 결국 등급이 변한 필지는 1필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동의 경우 갑술양안의 10필지(전 2, 답 6) 가운데 2필지(전 1, 답 1)는 등급이 불변이고, 전 1필지는 등급이 변하였

고, 답 7필지는 변화유무를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성주지역의 등급변화를 살펴보면, 갑술양안의 32필지(전 9, 답 23) 가운데 등급이 변한 경우는 1필지이다. 위의 <표3>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전답안을 살펴보면 갑술양전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1필지가 경자양전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1등급의 필지수가 줄어든 원인은 필지가 합쳐졌기 때문이고, 갑술양전의 상황을 알려주는 「갑술전답안」의 불명 1필지는 경자양전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3. 다섯가지 전형의 적용실태

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형을 몇 개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갑술·경자양전 당시 모든 전답을 직(直 ; 직사각형)·방(方 ; 정사각형)·규(圭 ; 이등변삼각형)·구(句 ; 삼각형)·제(梯 ; 사다리꼴)형 가운데 하나로 정형화시켰다. 다양한 형태의 전답을 5개 전형으로 통일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작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의 전형은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5개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전답이 있더라도 약간의 가공을 거쳐 5개 전형 가운데 하나로 만들도록 하였다. 전형은 전품과 달리 갑술양전의 것을 계승하지 않고, 양전과정에서 필지별로 새롭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갑술양전에서 정해진 전답의 전형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상당히 변했다. 감사댁의 전답안은 전형변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댁 소유 칠곡전답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전답 103필지 가운데 45필지(전 14, 답 31)는 전형이 변하였고, 54필지(전 7, 답 47)는 전형이 계승되었고, 4필지(전 1, 답 3)는 변화유무를 알 수 없다. 인동전답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10필지 가운데 2필지(전 1, 답 1)는 전형이 변하였고, 전 1필지는 전형이 계승되었고, 7필지는 변화유무를 알 수 없다. 성주전답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32필지 가운데 7필지(전 2, 답 5)는 전형이 변하였고, 22필지(전 6, 답 16)는 전형이 계승되었고, 3(전 1, 답 2)필지는 변화유무를 알 수 없다.

이렇듯 전형은 전답안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보았을 때는 80여년 동안 약 50% 정도 변화하였다. 하지만 실제의 전형은 이보다 적게 변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전답의 부분적 유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농로의 개설, 이미 경작되고 있는 전답과 접한 황무지의 개간 등에 의해 80여년 동안 전형이 적지 않게 변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반 가까운 전답의 전형이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여 전형 변화율이 50%정도 되려면 지주나 작인들이 전답모양을 변화시키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주와 작인들이 다수의 전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정 지주의 전답일 경우 별 어려움 없이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형을 바꿀 수는 없다. 앞의 표 <표1>·<표2>·<표3>에서 보듯이 갑술양전 이후부터 경자양전 사이에 합필, 분필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80여년 동안 전형이 50% 정도 변화되려면 두렁을 경계로 하고 있는 지주들이 서로 합의하여 전답모양을 새롭게 바꾸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표 39> 갑술·경자양전 당시 칠곡지역 전형

		갑술양전			경자양전		
	전형	필지	결-부-속	두락	필지	결-부-속	두락
전	제	12	1-76-4	100	7	1-51-6	112.4
	직	10	2-78-2	112	10	1-12-5	74.6
	구				1	0-11-3	10
	규				2	0-12-2	13
	불명				1	0-09-1	7
	합	22	4-54-6	212	21	3-06-7	217
답	제	47	3-32-9	108.8	26	2-22-7	73
	직	27	1-92-0	66.3	26	2-29-2	76.7
	방				1	0-05-1	1.5
	구	1	0-06-5	3	7	0-51-8	16.2
	규	6	0-41-8	15.8	7	0-70-1	22
	불변				3	0-21-5	9
	합	81	5-73-2	193.9	70	6-00-4	198.4

<표 40> 갑술·경자양전 당시 인동지역 전형

		갑술양전			경자양전		
	전형	필지	결-부-속	두락	필지	결-부-속	두락
전	제	1	0-14-2	5			
	직	1	0-23-2	10	2	0-29-8	15
	합	2	0-37-4	15	2	0-29-8	15
답	제	1	0-08-3	3	1	0-23-2	3
	직	7	0-63-2	15.5			
	불병				5	0-46-6	15.5
	합	8	0-71-5	18.5	6	0-69-8	18.5

<표 41> 갑술·경자양전 당시 성주지역 전형

		갑술양전			경자양전		
	전형	필지	결-부-속	두락	필지	결-부-속	두락
전	제	1	0-01-8		1	0-16-8	
	직	4	0-34-7		3	0-22-5	
	방				1	0-08-4	
	규	3	0-12-5		4	0-13-3	
	불명	1	0-11-6				
	합	9	0-60-6		9	0-61-0	
답	제	6	0-79-8		6	0-93-5	
	직	12	1-26-6		11	1-38-6	
	구	1	0-10-0				
	규	2	0-02-5		1	0-10-9	
	불병	2	0-17-8				
	합	23	2-36-7		18	2-43-0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전답은 두렁을 경제로 소유자가 각기 다른 여러 필지의 전답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해 있는 전답의 전형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광범위한 전형변화는 개별 지주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지역단위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지역단위로 전형을 변화시키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된 적은 없었다. 결국 갑술·경자양전 시기 다양한 형태의 전형을 다섯가지로 정형화시키는 과정에서 양전실무자들의 전형판단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전형이 50%정도까지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필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전형이 심하게 변하였으나, 지역 전체를 살펴보면 전형의 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갑술전답안」와 「경자전답안」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칠곡, 인동, 성주전답의 전형을 정리한 <표4>·<표5>·<표6>에서 보듯이 칠곡의 경우 전은 제전이 5필지 줄어들었고, 답은 제답이 19필지 줄어들었고, 인동, 성주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갑술·경자양전 시기에 양전실무자들의 전형판단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전형이 50%정도까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필지의 전형이 변화하게 되면, 지역 전체의 전형도 바뀌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4. 결부수 변화양상

개별 필지의 결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등급, 전형, 실지측량이다. 경자양전 당시 등급은 갑술양전에서 계승되었으나 전형이 바뀌고, 나아가 실지측량이 다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동일 필지라도 결부수는 바뀌기 마련이다. 결부수 변화상을 감사댁의 전답안을 통해 추적해보기로 하자.
감사댁 전답안의 결부수 변화양상을 정리한 <표7>에서 보듯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필지에서 결부수 변동이 있었다. 칠곡의 경우 전(田)은 21필지 가운데 7필지에서 18부 6속이 증가하였고, 13필지에서 1결 66부 5속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결 47부 9속이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여 갑술양전의 전 4결 54부 6속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3결 6부 7속이 되었으며, 변화율은 33%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결부수가 상당히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칠곡 대곡방 월오원 소재 전 3필지에서 결부수가 1결 56부 8속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3필지를 제외하면 칠곡 전의 결부수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칠곡 답은 70필지 가운데 40필지에서 64부 5속이 증가하였고, 26필지에서 37부 3속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7부 2속이 증가하였다. 즉 갑술양전의 답 5결 73부 2속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6결 4속이 되었으며, 변화율은 5%에 지나지 않는다. 답의 결부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동지역의 경우 전은 2필지 가운데 1필지에서 8속이 증가하고, 1필지에서 8부 4속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7부 6속이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여 갑술양전의 37부 4속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29부 8속이 되었으며, 변화율은 20%이다. 전에서 적지 않은 결부수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동 답은 6필지 가운데 3필지에서 8부 4속이 증가하였고, 2필지에

서 10부 1속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부 7속이 증가하였다. 즉 갑술양전의 답 71부 5속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69부 8속이 되었으며, 변화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 답의 결부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동의 경우 필지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인동지역의 일반적 변화상이 이와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표 42> 갑술양전 대비 경자양전의 결부수 변화 양상

			전		답		합계	
			필지	증감규모 (결-부-속)	필지	증감규모 (결-부-속)	필지	증감규모 (결-부-속)
칠곡	변화	증가	7	+ 0-18-6	40	+ 0-64-5	47	+ 0-83-1
		감소	13	- 1-66-5	26	- 0-37-3	39	- 2-03-8
	불변		1	0-04-2	4	0-20-2	5	0-24-4
	증감량			- 1-47-9		+ 0-27-2		- 1-20-7
인동	변화	증가	1	+ 0-00-8	3	+ 0-08-4	4	+ 0-09-2
		감소	1	- 0-08-4	2	- 0-10-1	3	- 0-18-5
	불변				1	0-06-0	1	0-06-0
	증감량			- 0-07-6		- 0-01-7		- 0-09-3
성주	변화	증가	5	+ 0-05-6	8	+ 0-14-7	12	+ 0-20-3
		감소	4	- 0-05-2	10	- 0-08-4	15	- 0-13-6
	증감량			+ 0-00-4		+ 0-06-3		+ 0-06-7

성주지역의 경우 전은 9필지 가운데 5필지에서 5부 6속이 증가하였고, 4필지에서 5부 2속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4속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여 갑술양전의 60부 6속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61부가 되었으며, 변화율은 0.6%이다. 전에서는 결부수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성주 답은 18필지 가운데 10필지에서 14부 7속이 증가하였고, 8필지에서 8부 4속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부 3속이 증가하였다. 즉 갑술양전의 답 2결 36부 7속이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2결 43속이 되었으며, 변화율은 3%이다. 답의 결부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칠곡, 인동, 성주의 결부수를 종합해 볼 때 동일 필지의 경우 경자양전을 거치면서도 갑술양전 결부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삼남지방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갑술양전을 통해 충청도에서 258460결, 전라도에서 335577결, 경상도에서 301819결을 확보하였고, 경자양전을 통해 충청도에서 255208결, 전라도에서 377159결, 경상도에서 336778결을 확보하였다.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충청도에서 3252결(약 1%) 감소, 전라도에서 41582결(약 12%) 증가, 경상도에서 34959결(12%) 증가하였다. 즉 경자양전을 통해 확보된 결수는 갑술양전의 895856결보다 73289결 더 많은 969145결인데, 이는 갑술양전에 비해 약 8% 증가한 양이다. 경자양전으로 증가된 73289결에는 동일 필지의 결부수가 약간 증가된 양과 갑술양전 이후 개간된 전답의 결부수가 합쳐져 있다. 갑술양전 이후 진행된 연해안 지역의 대규모 개간사업과 소규모의 내륙지역 개간사업의 결과가 경자양전에 반영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일 필지의 결부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양명의 실상과 성격

16~17세기에는 여러 명의 토지가 특정 인의 명자로 깃기와 같은 부세관련 문서에 등재된 경우가 허다했다. 16세기 당시 백성들이 요역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토를 권세가에 합록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전지를 합록했다가 권세가의 전지가 속공됨에 따라 경우도 허다했음을 위의 기사는 전하고 있다.

합록의 관행은 17세기에도 여전하였다. 17세기 들어 미증유의 전답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방관들은 여러 명의 전답을 특정 사람의 양명(量名)으로 양안에 합록해 두는 관행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합록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경자양전 당시 정부는 전답소유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구 양안에서 1작(作)이던 것이 나뉘어 2·3작으로 된 것까지도 합록으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나뉘어진 필지별로 주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자양전 과정에서도 전답이 합록, 분록, 대록되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경자양전 당시의 양명 기재실상은 칠곡 감사댁 전답안에서 잘 드러난다. 칠곡 감사댁은 대부분의 전답을 갑술양전 이후에 매득했기 때문에 경자양전 이전까지는 감사댁의 전답에는 다양한 양명이 붙어있었다. 감사댁 소유의 전답에 붙혀진 다양한 형태의 갑술양명은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모두 개정되었다. 칠곡지역 전답 103필지의 양명 43개, 인동지역 전답 10필지 양명 7개, 성주지역 전답 32필지 양명 18개는 돌남(乭男)으로 개명되었다. 현존하는 경상도지역 양안에 양반기주(兩班起主)는 대체로 직역+성명+노명(奴名)의 형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돌남이라는 양명은 경자양안 상에는 '유학 이세침노돌남(幼學 李世琛奴乭男)'으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천지역의 양명 또한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개명되었다. 임천지역 전답 27필지의 양명은 8개였는데,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2필지는 '노기학(奴己鶴)', 나머지 필지는 '원일(元日)'이라는 양명으로 양안에 등재되었다. 경자양전 당시 부재지주의 전답에는 단순히 노비 이름만 기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경자양안에 기재된 임천지역 소재 칠곡 감사댁 전답의 양명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하튼 경자양전을 거치면서 수십개의 양명이 3개로 정리된 점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세침은 자신의 전답을 3개의 양명으로 분록하였을 뿐만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양명으로 합록하기도 했다. 이담명의 차자계인 이유중가에서도 경자양전을 계기로 돌남이라는 새로운 양명을 자신들의 전답에 붙혔다. 결국 이세침과 이유중은 돌남이라는 양명을 함께 사용했던 것이다.

이세침과 이유중은 왜 동일한 양명을 사용했을까. 해결의 실마리는 두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이세침과 이유중은 호적과 족보 상으로는 숙질간이지만, 실제로는 부자지간이다. 이세침의 아우 이세경이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사망하자, 그의 사후에 태어난 이유중이 승중자로 입적되었다. 어린 이유중이 양아버지의 전답을 물려받게 되자, 생부 이세침이 양자로 보낸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전답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

서 경자양전 당시 이유중의 전답을 자신의 전답과 합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양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세침가의 양명으로 경자양안에 등재된 돌남이라는 명자는 이세침가에서 1708년에 작성한 분재기, 1737년에 작성한 노비안, 1740년대 이후에 작성한 10여개의 호구단자 등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돌남이 오래전에 사망한 노비였음을 의미한다. 오래전에 사망한 노비의 명자가 어떤 연유로 해서 경자양안의 양명으로 등재되었을까. 그 까닭은 이세침가에서 오래전부터 돌남의 이름으로 전세를 납부하고 있었는 데서 찾아진다. 즉 오늘날의 납세고지서와 그 성격이 비슷한 깃기(衿記)의 명자인 돌남이 경자양안의 양명으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이세침은 양자로 보낸 어린 아들 소유의 전답에 부과된 부세까지도 돌남의 이름으로 납부하다가 경자양전을 맞이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이유중의 전답을 돌남이라는 양명으로 합록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합록이 가지는 의미는 전답에 부과된 부세를 동일한 이름으로 납부한다는 데에 있다. 즉 합록된 사람의 양명으로 부세만 납부할 뿐이고, 소유권은 각각 따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칠곡 석전 이씨가의 경우 생부와 양자로 간 아들의 전답이 동일한 양명으로 합록되었지만 서로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전답을 관리·처분할 수 있었다. 경자양전 이후 이세침과 이유중은 전답안과 추수기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가면서 전답을 관리하였으며, 나아가 필요에 따라 그것을 임의로 방매하였다. 서로는 자유의사에 따라 전답을 관리·처분하였던 것이다.

II. 경자양전의 토지파악 실상

1. 자료소개 및 지역개황

20세기 초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소멸되어버린 용궁현(龍宮縣)은 경자양전 당시 경상도 북단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고을이었다. 당시 용궁현은 10개 면(邑內·申上·申下·南上·南下·北上·北下·內上·內下·西面)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으로 예천·안동, 서쪽으로 상주, 남으로 의성·비안, 북쪽으로 풍기와 경계를 접했다. 용궁현은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높고 낮은 산줄기 사이로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지역에 위치했다.
용궁현의 지형은 읍내면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신상·신하면이, 서쪽으로 서면이, 남쪽으로 내상·내하·남상·남하면이, 북쪽으로 북상·북하면이 자리잡고 있는 형세를 하고 있다. 북상·북하면 뒤쪽으로 상당히 높은 산록이 달리고, 남상·내상면에는 얕은 산록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산록 사이로 거대한 낙동강과 그 지류인 내성천이 완만히 흘렀다. 낙동강은 신하·남하·남상면 북단을 휘감아 돌면서 흐르고, 예천을 지나온 내성천은 북상·읍내면 남단을 거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경자양전 당시 용궁현은 조그마한 군현이었다. 용궁현의 실상은 18세기 후반 중앙정부에서 파악한 경상도 60개 군현의 호수, 인구수, 전답면적을 살펴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용궁의 호수 3128호는 경상도 60개 군현 가운데 39위, 인구 12475인은 38위, 호당

인구 4인은 40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호수와 인구수는 경상도 전체에서 하위권에 속했지만, 전답면적은 중위권을 유지했다. 용궁의 전답 3566결 34부 2속은 경상도 60개 군현 가운데 26위였다. 용궁현의 전답 규모는 여타 군현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지목구성은 열악한 편이었다. 여타 군현에 비해 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전답 3566결 34부 2속은 전 2318결 61부와 답 1247결 73부 2속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의 비율이 65%에 달했다. 이 수치는 경상도의 한전비율 58%를 훨씬 상회하였고, 60개 군현의 한전비율 가운데 20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43> 용궁현 각 면의 전답규모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畓	1953	128-57-4(38)	2705	125-27-8(35)	2110	164-60-3(39)	2195	180-35-6(45)
田	4479	211-55-8(62)	6188	234-18-9(65)	4821	253-23-9(61)	4279	224-05-8(55)
合計	6432	340-13-2(100)	8893	359-46-7(100)	6931	417-84-2(100)	6474	404-41-4(100)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畓	1609	99-03-6(27)	1304	54-01-1(23)	1382	120-80-2(28)	13258	872-66-0(34)
田	5575	266-45-0(73)	3701	180-22-9(77)	5638	311-88-9(72)	34681	1681-61-2(66)
合計	7184	365-48-6(100)	5005	234-24-0(100)	7020	432-69-1(100)	47939	2554-27-2(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1720년 경자양전의 결과물인 『용궁현경자개량전안(龍宮縣庚子改量田案)-이하 용궁양안』은 18세기 전반 이 지역의 농업구조를 소상히 전해준다. 용궁현 경자양안 가운데 현재 7개면(신하·신상·남하·북하·북상·내상·읍내면)의 양안이 현존하고, 3개 면의 그것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양안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당시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상면과 신하면 양안은 완전한 형태이고, 남하면 양안은 앞부분 일부가, 내상면 양안은 5필지의 '기주(起主)'란이, 북하면 양안은 10필지의 전형 혹은 지목 부분이, 신상면 양안은 30필지의 '기주'란이, 읍내면 양안은 29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락되거나 훼손된 상태이다.

『용궁양안』은 당시의 지목구성을 소상히 전해준다. 산록이 현 북단과 남쪽에 위치하고, 하천은 현 남단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목구성은 면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냈다. 『용궁양안』을 통해 면별 지목구성을 살펴본 것이 <표8>이다. 전의 비율이 7개면 평균인 66%를 초과하는 면은 신하·신상·읍내이고, 현 평균이하인 면은 북하·북상·남하·내상이다. 대체로 현 북단과 남쪽 산록 사이에 위치한 면은 전의 비율이 현 평균보다 낮고, 남쪽 산록 지대에 위치한 면은 전의 비율이 현 평균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용궁현은 산간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토질 또한 비교적 척박했다. 용궁현 각 면의 전답등급을 정리한 <표9>에서 보듯이 7개면 전체를 살펴보면, 4등급

전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답의 비옥도는 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개면(남하, 내상, 신하)은 1등급 농토가 전혀 없고, 나머지 4개면의 1등급 전답도 그 비중이 낮다. 2등급 전답의 비중은 7개면 모두 10%미만이다. 3등급 전답의 비중은 북하·읍내면을 제외하면 모두 20%미만이다. 6등급 전답의 비중은 4개면(신상, 북상, 신상, 신하)은 30%미만이고, 나머지 3개면은 20%미만이다. 결국 7개면에서 4등급 혹은 5등급 전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4개면(북하, 북상, 신하, 읍내)은 4등급 전답의 비중이 가장 높고, 3개면(남하, 내상, 신상)은 5등급 농지가 제일 많다. 전반적으로 척박한 전답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등급의 비중은 면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표 44> 용궁현 각 면의 전답등급 (단위 ; 결-부-속)

等級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					16	1-66-2	36	4-27-0(1)
2	56	4-28-0(1)	29	1-86-2(1)	84	7-12-8(2)	245	27-19-8(7)
3	625	56-88-7(17)	444	30-36-2(3)	533	54-29-6(13)	982	93-81-8(23)
4	1226	89-87-5(27)	1861	117-54-4(33)	1932	155-07-1(37)	2019	149-35-8(37)
5	2414	116-87-0(34)	2862	126-84-7(35)	2005	108-46-5(26)	1401	65-99-2(16)
6	2111	72-22-0(21)	3697	82-85-2(23)	2360	90-99-3(22)	1791	63-77-8(16)
不明					1	0-22-7		
合計	6432	340-13-2(100)	8893	359-46-7(100)	6931	417-84-2	6474	404-41-4(100)
等級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	61	33-02-1(9)			65	12-94-9(3)	178	51-90-2(2)
2	133	17-37-6(5)	29	3-90-2(2)	348	39-28-5(9)	924	101-03-1(4)
3	497	35-76-6(10)	393	30-97-2(13)	1264	118-12-3(27)	4738	420-22-4(16)
4	1388	88-92-0(24)	1480	95-20-1(41)	1877	126-26-4(29)	11783	822-23-3(32)
5	2350	106-91-6(29)	871	39-65-0(17)	1194	51-97-1(12)	13097	616-71-1(24)
6	2755	83-48-7(23)	2232	64-51-5(27)	2271	84-08-6(19)	17217	541-93-1(21)
不明					1	0-01-3	2	0-24-0
合計	7184	365-48-6(100)	5005	234-24-0(100)	7020	432-69-1	47939	2554-27-2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신분별 소유면적 또한 각 면마다 서로 상이했다. 『용궁양안』을 통해 신분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본 것이 <표10>이다. <표10>을 작성할 때 직면한 기술적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첫째, 동음이자(同音異字)의 성명을 지닌 기주들은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둘째, 명(名)만 지닌 기주는 동명의 성(姓) 보유자와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세째, 명이 양반의 노비명과 동일한 기주는 양반의 노비로 간주한다.
네째, 성명이 동일하거나 앞의 첫째, 둘째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취급된 기주가 둘 이상의 직역을 지니더라도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다섯째, 위의 네째 경우 가운데 상이한 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둘 이상을 보유한 기주의 신분은 상위신분으로 확정한다.

다시 <표10>으로 돌아가 각 신분층의 전답소유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각 신분층의 전답소유 실상이 면마다 서로 다른데, 양반층의 토지가 가장 많이 분포된 면과 평민층의 전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으로 대별된다. 남하·북상·북하·읍내면은 양반층의 소유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남하면 전답의 46.2%, 북상면 농지의 40.5%, 북하면 농토의 57.9%, 읍내면 전답의 31%가 양반소유지이다. 한편 내상·신상·신하면은 평민층의 소유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다. 내상면 전답의 47.3%, 신상면 농지의 54%, 신하면 농토의 43%가 평민층의 소유지이다.

<표 45> 용궁현 각 면의 신분별 전답소유 현황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2749	150-73-4(44)	1774	81-71-0(23)	2791	169-32-0(41)	3703	234-09-8(58)
中人	175	10-46-6(3)	1203	47-28-7(13)	847	55-63-2(13)	506	32-01-6(8)
平民	2312	113-85-1(34)	4466	170-07-8(47)	2120	122-82-4(29)	1553	93-64-5(23)
賤民	769	34-09-0(10)	1080	42-93-3(12)	729	37-47-6(9)	439	25-08-7(6)
其他	152	12-90-5(4)	248	7-84-0(2)	190	12-81-9(3)	239	17-42-2(4)
無主	275	18-08-6(5)	122	9-61-9(3)	254	19-77-1(5)	34	2-14-6(1)
合計	6432	340-13-2(100)	8893	359-46-7(100)	6931	417-84-2(100)	6474	404-41-4(100)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1489	72-70-2(20)	631	39-71-2(17)	2018	134-18-7(31)	15155	882-46-3(35)
中人	455	22-93-9(6)	670	31-50-4(13)	1595	93-74-8(22)	5451	293-59-2(11)
平民	4532	197-25-2(54)	2268	100-66-3(43)	1367	73-15-8(17)	18618	871-40-1(34)
賤民	437	15-22-7(4)	1115	45-60-2(20)	1246	53-47-5(12)	5815	253-89-0(10)
其他	249	53-83-5(15)	240	11-24-6(5)	528	56-65-4(13)	1846	172-72-1(7)
無主	22	3-53-1(1)	81	5-51-3(2)	266	21-46-9(5)	1038	81-03-5(3)
合計	7184	365-48-6(100)	5005	234-24-0(100)	7020	432-69-1(100)	47939	2554-27-2(100)

<비고> 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② 기타(其他)는 마위전(馬位田)과 같은 국유지, 서원전(書院田) 등의 공동소유지, 사찰(寺刹) 소유지 등임. 이하 동.

이같이 면단위로 전주의 신분구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동성촌락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남하·북상·북하·읍내면은 양반들의 동성촌락이 발달했고, 내상·신상·신하면은 평민들의 동족마을이 집중된 곳이었던 것이다. 남하·북상·북하·읍내면에 정착하여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양반 성씨와 그들의 전답소유 실태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남하면의 전답을 소유한 양반 성씨는 모두 25개였다. 25개 성씨에 속하는 양반들이 모두 남하면에 세거지를 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타면, 더 나아가 다른 군현에 거주하던 양반들이다. 25개 성씨 가운데 남하면의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성씨는 정(鄭)이다. 그들이 소유한 농지 70결 36부 9속은 남하면 양반소유지의 46.7%에 해당한다. 정씨 성을 가진 양반전주 역시 남하면에 거주하는 전주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남하면에 거주하던 정씨 양반은 대부분 동래 정씨와 청주 정씨였으며, 전자의 족세(族勢)가 후자의 그것보다 더 컸다.

북상면의 전답을 소유한 양반 성씨는 모두 25개였다. 25개 성씨에 속하는 양반들 가운데

는 남하면 이외의 곳에 거주하던 자들도 있었다. 25개 성씨 가운데 북상면의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성씨는 안(安)이다. 그들이 소유한 농지 49결 24부는 북상면 양반소유지의 29.1%에 해당한다. 당시 북상면에는 순흥 안씨들이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북하면의 전답을 소유한 양반 성씨는 모두 37개였다. 37개 성씨에 속하는 양반들 가운데는 북하면에 세거지를 둔 전주도 있었고, 타면과 다른 군현에 거주하던 자들도 있었다. 37개 성씨 가운데 북하면의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성씨는 전(全)이다. 그들이 소유한 농지 48결 6부 3속은 북하면 양반소유지의 20.5%에 해당한다. 당시 북하면에는 용궁 전씨들이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읍내면의 전답을 소유한 양반 성씨는 모두 25개였다. 25개 성씨에 속하는 양반들 가운데는 읍내면에 세거지를 두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25개 성씨 가운데 읍내면의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성씨는 이(李)이다. 그들이 소유한 농지 55결 56부는 읍내면 양반소유지의 41.4%에 해당한다. 당시 읍내면에는 경주 이씨들이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에서 양반층과 평민층이 토지소유규모에서 1, 2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하면과 읍내면은 예외이다. 신하면은 천인층의 소유전답이 19.9%로 양반의 그것보다 높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시노비(寺奴婢)가 많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답 28결 15부 9속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수치는 신하면 전체 전답의 12%, 천인 소유지의 61.7%에 해당한다. 읍치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시노비의 소유지가 많은 까닭은 이 지역에 사옹원분원(司饔院分院), 순영수철장(巡營水鐵場), 석장(石場) 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적지 않은 시노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옹원분원, 순영수철장, 석장 등과 관련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읍내면은 중인층의 소유전답이 21.7%로 양인의 그것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호장, 공생, 기관 등과 같은 관속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전답 64결 63부 2속을 소유했는데, 그 수치는 읍내면 전체 전답의 14.9%, 중인층 소유지의 68.9%에 해당한다.
여기서 각 면의 전답구성은 그 지역의 신분구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양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하·북상·남하·읍내면 가운데 앞의 3면은 답의 비중이 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평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하·신상·내상면 가운데 앞의 2면은 전의 비중이 현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곳이다.

2. 가경전의 규모와 등급

경자양전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출세실결수를 확보하려한 정부는 개간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갑술양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개간장려책과 농촌인구의 꾸준한 증가현상이 서로 맞물림으로써 전국에 걸쳐 농지개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7세기 후반 경상도 북부지역 농민들은 다양한 개간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답을 마련해갔다.
『용궁양안』은 갑술양전 이후 개간이 활발히 진행되던 용궁현의 실상을 비교적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용궁양안』에서 가경전의 규모를 정리한 <표11>에서 보듯이 그 비율은

0.9%~9.2%까지 면별로 다양하다. 이같은 현상은 양반거주지역보다 평민거주지역의 가경전 비율이 높은 데서 비롯되었다. 신하·신상·내상·남하·읍내·북상·북하면 순으로 전체답에서 가경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미 보았듯이 신하·신상·내상면은 평민층 소유지의 비중이 높고 남하·읍내·북상·북하면은 양반층 소유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표 46> 용궁현 각 면의 가경전답 규모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申上	申下	邑內	합계
전답규모(A)	340-13-2	359-46-7	417-84-2	404-41-4	365-48-6	234-24-0	432-69-1	2554-27-2
加耕地(B)	5-99-9	20-64-8	5-47-0	3-60-7	24-19-7	21-44-0	7-15-3	88-51-4
B/A*100	1.8%	3.1%	1.3%	0.9%	6.6%	9.2%	1.7%	3.5%

<표 47> 용궁현 각 면의 신분별의 가경전답 소유현황 (단위 ; 결-부-속)

신분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110	1-73-1(29)	218	3-28-0(16)	124	1-97-8(36)	107	1-64-6(46)
中人	5	0-12-5(2)	183	2-37-6(12)	22	0-40-4(8)	18	0-17-3(5)
平民	163	2-66-8(44)	822	9-80-0(47)	106	1-49-8(27)	73	0-87-3(24)
賤民	70	0-92-4(15)	207	2-74-6(13)	69	1-09-8(20)	39	0-66-4(18)
其他	3	0-04-1(1)	118	2-26-2(11)	23	0-44-1(8)	9	0-25-1(7)
無主	13	0-51-0(9)	2	0-18-4(1)	1	0-05-1(1)		
合計	365	5-99-9(100)	1550	20-64-8(100)	345	5-47-0(100)	246	3-60-7(100)
신분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239	8-00-8(33)	88	3-72-6(17)	99	1-83-4(26)	985	22-20-3(25)
中人	32	0-54-9(2)	137	2-26-9(12)	55	0-81-7(11)	452	6-71-3(7)
平民	391	11-59-9(48)	515	9-45-7(44)	125	1-84-9(26)	2195	37-74-4(43)
賤民	86	2-18-8(9)	233	3-95-4(18)	150	2-25-2(31)	854	13-82-6(16)
其他	28	1-85-3(8)	82	1-76-8(8)	20	0-34-0(5)	283	6-95-6(8)
無主			8	0-26-6(1)	2	0-06-1(1)	26	1-07-2(1)
合計	365	24-19-7(100)	1063	21-44-0(100)	451	7-15-3(100)	4795	88-51-4(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양반거주지역보다 평민거주지역의 가경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평민층이 소유한 개간지가 많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용궁현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다. 『용궁양안』에서 각 신분층이 소유한 가경지 현황을 정리한 <표12>에서 보듯이 남하·내상·신상·신하면에서는 평민층의 가경지가 북상·북하면에서는 양반층의 그것이, 읍내면에서는 천인층의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평민층이 적극적으로 개간에 나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뙈기의 땅이라도 더 늘리려고 자갈을 골라내고 풀뿌리를 캐내는 소농민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위의 사실을 근거로 용궁현에 거주하던 양반층이 개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양반들은 갑술양안에 무주진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전답을 개간하는 데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갑술양전 이후 각 신분층이 양안상의 무주진전을 개간해간 내용을 정리한 <표13>에서 보듯이 북상·북하·읍내면에서는

양반층이 평민층보다 무주진전을 더 적극적으로 개간했다. 남하면을 제외하면 전체 전답에서 양반소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면에서는 양반들이 무주진전 개간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표 48> 용궁현 각 면의 신분별 무주진전의 개간현황 (단위 ; 결-부-속)

신분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146	4-88-9(15)	64	1-47-5(9)	135	5-64-3(19)	13	25-7(32)
中人	14	0-45-4(1)	45	1-48-3(9)	40	1-69-0(6)		
平民	257	9-28-3(29)	219	6-14-5(37)	114	3-65-1(12)	2	0-20(3)
賤人	92	3-03-2(9)	92	2-71-8(16)	92	3-77-9(12)	3	13-5(17)
其他	5	0-20-6(1)	11	0-34-6(2)	5	0-21-0(1)		
無主	193	14-38-6(45)	80	4-44-6(27)	195	14-99-7(50)	8	37-9(48)
合計	707	32-25-0(100)	511	16-61-3(100)	581	29-97-0(100)	26	79-1(100)
신분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10	0-34-7(6)	25	1-37-4(9)	81	4-12-4(13)	474	18-10-9(14)
中人			46	2-07-9(13)	64	2-73-4(9)	209	8-44-0(6)
平民	48	1-83-8(34)	196	5-72-8(37)	60	2-11-0(7)	896	28-77-5(22)
賤人	7	0-14-3(3)	123	2-96-3(19)	111	3-84-0(12)	520	16-61-0(12)
其他			2	0-03-4	11	1-24-0(4)	34	2-03-6(2)
無主	9	3-04-6(57)	26	3-30-4(21)	207	16-97-3(55)	718	57-53-1(44)
合計	74	5-37-4(100)	418	15-48-2	534	31-02-1(100)	2851	131-50-1(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이 두 사실을 종합하면 양반들은 갑술양안에 등재된 진전의 개간에는 적극적이었고, 갑술양안상에 미등재된 황무지 개간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양반들은 이미 양안에 등재되어 있어 은루결로 처리하기 어려운 전답보다 양안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은루결로 처리하기 쉬운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여기서는 일단 문제만 제기하고 해답은 다음 장에서 찾기로 한다.

용궁현 가경지는 그곳의 자연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 전이었다. 그러한 실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간전답의 실상을 『용궁양안』에서 정리한 내용이 <표14>이다. 모든 면에서 개간답의 비중이 개간전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는 여기서 내상·신상·신하면의 개간답 비중이 여타 면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상·신하면은 여타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의 비중이 높았고, 내상·신상·신하면은 평민층에 소유한 전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평민층 소유의 전답 비중이 높은 곳, 즉 전의 비중이 높은 면에서 가경답의 비중이 가경전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양반 거주지역에서는 가경답의 비중이 가경전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양반 거주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보(伏)와 같은 간단한 수리시설을 이용한 논농사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양반 거주지역에서는 17세기 후반에 경에 이미 논으로 개간할 수 있는 곳은 거의 개간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표 49> 용궁현 각 면 가경전답의 지목구성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畓	42	0-44-6(7)	283	3-39-0(16)	27	0-36-1(7)	10	0-24-7(7)
田	323	5-55-3(93)	1267	17-25-8(84)	318	5-10-9(93)	236	3-36-0(93)
合計	365	5-99-9(100)	1550	20-64-8(100)	345	5-47-0(100)	246	3-60-7(100)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畓	62	2-44-2(10)	229	2-37-2(11)	35	0-38-3(5)	688	9-64-1(11)
田	714	21-75-5(90)	834	19-06-8(89)	416	6-77-0(95)	4108	78-87-3(89)
合計	776	24-19-7(100)	1063	21-44-0(100)	451	7-15-3(100)	4796	88-51-4(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표 50> 용궁현 각 면 가경전답의 등급 (단위 ; 결-부-속)

등급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								
2								
3	1	0-00-2					1	0-11-0(3)
4	6	0-17-1(3)	34	1-09-8(5)	1	0-05-7(1)	6	0-14-4(4)
5	24	0-52-7(9)	109	2-01-5(10)	17	0-41-4(8)	16	0-23-8(7)
6	334	5-29-9(88)	1407	17-53-5(85)	327	4-99-9(91)	223	3-11-5(86)
合計	365	5-99-9	1550	20-64-8(100)	345	5-47-0(100)	246	3-60-7(100)
등급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	1	1-53-0(6)					1	1-53-0(2)
2					1	0-02-8	1	0-02-8
3	9	0-52-1(2)			11	0-16-3(2)	22	0-79-6(1)
4	13	0-46-2(2)	5	0-07-9	34	0-96-5(13)	99	2-97-6(3)
5	51	1-16-2(5)	56	1-47-2(7)	54	0-93-8(13)	327	6-76-6(8)
6	702	20-52-2(85)	1002	19-88-9(93)	351	5-05-9(71)	4346	76-41-8(86)
合計	776	24-19-7(100)	1063	21-44-0	451	7-15-3	4796	88-51-4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경자양전 이전까지 가경전에는 공식적으로 전품이 매겨져 있지 않았다. 가경전은 경자양안에 등재됨으로써 비로소 전품을 부여받게 되었다. 정부는 가경전의 전품을 책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다. 왜냐하면 전품은 부세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개간전의 전품은 토질의 비옥도를 살펴서 결정하도록 정해졌다. 용궁현의 양전 담당자들은 개간지의 전품을 판정할 때 정부의 결정을 비교적 잘 준수하였다. 『용궁양안』에서 개간지의 전품을 정리한 <표15>에서 보듯이 그곳의 가경전은 대부분 최하등급을 받았다. 읍내면을 제외한 여타면의 개간지는 85%이상이 6등급으로 판정났다. 기경전의 대부분이 4~5등급이었음을 미루어볼 때 개간은 주로 척박한 곳에서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진전의 규모와 등급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 덕택에 적지 않은 황무지가 옥토로 변해가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애써 일구어 놓은 논밭이 황무지로 변해가기도 했다. 진전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부세압박 때문에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함으로써 생겨나기도 했다. 용궁현에서도 진전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용궁양안』에서 진전으로 기재된 필지를 정리한 <표16>에서 보듯이 용궁현의 진전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수치는 낮게는 14%에서 높게는 21%까지 차등을 보이고 있다.

<표 51> 용궁현 각 면의 진전현황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田畓規模(A)	340-13-2	359-46-7	417-84-2	404-41-4	365-48-6	234-24-0	432-69-1	2554-27-2
陳田(B)	62-51-7	56-95-8	85-75-4	59-44-3	46-73-6	32-24-1	70-58-4	414-57-1
B/A*100	18%	16%	21%	15%	12%	14%	16%	16%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진전비율이 높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양반층의 소유전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에서 진전비율 또한 높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내상면을 제외하면, 양반층의 소유전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4개면(남하, 북상, 북하, 읍내)의 진전비율이 나머지 2개면의 진전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같이 양반층의 소유전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에서 진전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양반층의 전답 가운데 진전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별 진전소유 현황을 정리한 <표17>에서 보듯이 양반층은 5개면(남하, 북상, 북하, 신하, 읍내)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소유한 전주로 나타난다. 나머지 2개면(내상, 신상)에서는 평민층이 가장 많은 진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제력이 우월한 양반들이 무슨 이유로 평민층보다 더 많은 전답을 진전으로 방치시키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장에서 구해보기로 한다.

진전은 대부분 전에서 발생했다. 『용궁양안』에서 진전의 지목구성 현황을 정리한 <표18>에서 보듯이 7개면 모두 진전에서 차지하는 전의 비중은 90%이상이다. 앞서 보았듯이 용궁현 7개면에서 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7%였다. 이같이 전에서 진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까닭은 밭농사의 특성 때문이다. 논은 각종 영양분이 녹아있는 물을 자주 공급받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규모의 한·수해만 들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소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밭은 곡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거의 대부분 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밭농사는 많은 퇴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밭을 묵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산곡간에 위치한 척박한 밭에서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했다.

<표 52> 용궁현 각 면의 신분별 진전소유 현황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509	19-69-7(32)	287	10-66-1(19)	696	33-14-8(39)	817	34-75-8(58)
中人	27	1-17-4(2)	193	7-08-2(12)	153	7-01-7(8)	93	3-46-5(6)
平民	370	16-83-7(27)	613	23-49-4(41)	429	17-07-1(20)	241	11-75-2(20)
賤人	134	5-84-1(9)	116	5-32-9(9)	162	7-61-0(9)	102	5-23-7(9)
其他	25	0-88-2(1)	24	1-12-1(2)	29	1-13-7(1)	56	2-08-5(3)
無主	273	18-08-6(29)	120	9-60-9(17)	254	19-77-1(23)	34	2-14-6(4)
合計	1338	62-51-7(100)	1353	56-95-6(100)	1723	85-75-4(100)	1343	59-44-3(100)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兩班	200	12-71-6(27)	77	9-99-6(31)	331	16-91-7(24)	2917	137-89-3(33)
中人	41	1-79-2(4)	59	3-65-2(12)	237	10-18-6(15)	803	34-36-8(8)
平民	496	25-03-7(54)	161	7-73-8(24)	175	8-68-4(12)	2485	110-61-3(27)
賤人	49	2-50-0(5)	91	4-26-2(13)	214	8-97-1(13)	868	39-75-0(10)
其他	20	1-16-0(2)	15	1-08-0(3)	69	4-35-7(6)	238	11-82-2(3)
無主	22	3-53-1(8)	81	5-51-3(17)	266	21-46-9(30)	1050	80-12-5(19)
合計	828	46-73-6(100)	484	32-24-1(100)	1292	70-58-4(100)	8361	414-57-1(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표 53> 용궁현 각 면 진전의 지목구성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畓	156	2-98-0(5)	190	4-85-9(8)	248	7-04-5(9)	127	3-98-4(7)
田	1182	59-53-7(95)	1163	52-43-7(92)	1475	78-70-9(91)	1216	55-45-9(93)
合計	1338	62-51-7(100)	1353	57-29-6(100)	1723	85-75-4(100)	1343	59-44-3(100)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畓	30	0-84-2(2)	15	0-71-0(2)	66	1-67-5(2)	832	22-09-5(5)
田	798	45-89-4(98)	469	31-53-1(98)	1226	68-90-9(98)	7529	392-47-6(95)
合計	828	46-73-6(100)	484	32-24-1(100)	1292	70-58-4(100)	8361	414-57-1(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정부는 더 많은 출세실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자양전을 실시했지만, 이러한 진전은 출세실결수 증가와 무관한 지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경자양전을 통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개간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한 의도는 진전의 등급을 낮게 책정하려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경자양전을 앞두고 정부는 진전의 등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다. 논의는 진전의 등급을 주변 전답의 그것보다 1등급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개간자의 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용궁현에서도 관철되었다. 『용궁양안』에서 진전의 등급을 정리한 <표19>에서 보듯이 7개면 모두 진전은 6등급이 제일 많았다. 용궁현 전답이 대체로 4~5등급이었음을 감안하면, 진전의 전품은 주변의 전답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9>

<표 54> 용궁현 각 면의 진전등급 (단위 ; 결-부-속)

등급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					3	0-06-1		
2	14	0-86-8(1)	1	0-03-0	16	0-25-8	9	0-33-2(1)
3	60	3-81-0(6)	53	2-64-8(4)	70	2-77-5(3)	57	2-06-8(3)
4	120	4-51-7(7)	201	10-54-2(18)	295	11-64-1(14)	288	12-64-5(21)
5	430	15-24-8(25)	427	18-65-0(33)	500	23-04-7(27)	314	10-45-9(18)
6	714	38-07-4(61)	671	25-42-6(45)	839	47-97-2(56)	675	33-93-9(57)
合計	1338	62-51-7(100)	1353	57-29-6	1723	85-75-4	1343	59-44-3(100)
등급	申上		申下		邑內		合計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	1	0-08-6			1	0-03-2	5	0-17-9
2	1	0-07-3			15	0-51-5(1)	56	2-07-6
3	30	2-35-4(5)	20	0-81-2(3)	88	3-37-9(5)	378	17-84-6(4)
4	97	4-50-0(10)	104	6-06-8(19)	216	11-48-2(16)	1321	61-39-5(15)
5	290	13-23-1(28)	116	5-63-7(17)	214	8-08-4(11)	2291	94-35-6(23)
6	409	26-49-2(57)	244	19-72-4(61)	758	47-09-2(67)	4310	238-71-9(58)
合計	828	46-73-6	484	32-24-1(100)	1292	70-58-4	8361	414-57-1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III. 경자양전의 성격

1. 전품 계승의 의미

오랜 논의 끝에 실시된 경자양전은 등급, 전형, 장광척수, 결부수, 양명을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제 막대한 인원과 경비가 투입된 경자양전이 당시의 농촌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경자양전이 당시의 농촌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면 1결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은 등급별로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경자양전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칠곡 감사댁의 추수기를 토대로 등급별 벼 생산량을 정리한 것이 <표20>이다. <표20>에서 보듯이 1701년~1753년 동안 3·4등급 답의 생산량이 모두 확인되는 연도는 47개년이다. 답 1결의 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3등급 답이 우위에 있는 경우는 7개(1713·1714·1727·1729·1731·1737·1743)년에 지나지 않는 반면 4등급 답이 우위에 있는 경우는 40개년이나 된다. 1결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기간 동안은 4등급 답은 3등급 답보다 14%정도 더 많은 벼를 생산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자양전이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양전의 결과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게 된 원인을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임란이전에 책정된 전품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경자양전 당시의 비옥도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보, 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의 도움으로 수리불안전 지대가 수리안전지대로 변화되면 그 지역에 있는 답의 등급은 당연히 종전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표20>을 통해 임란이전부터 경자양전 사이 시기에

일어난 전답 비옥도의 변화상을 일부 엿볼 수 있다.

<표 55> 칠곡지역 3·4등급 답의 생산량 (단위; 두)

년도	등급	결-부-속	수확량	1결	년도	등급	결-부-속	수확량	1결
1701	3	1-72-4	1760.0	1020.9	1702	3	1-37-7	1341.0	973.9
	4	1-14-3	1412.0	1235.5		4	1-26-6	1408.0	1112.2
	평균	2-86-7	3172.0	1106.4		평균	2-64-3	2749.0	1040.1
1703	3	1-41-0	1945.2	1379.6	1705	3			
	4	1-05-7	1619.0	1531.7		4	0-15-0	189.0	1260.0
	평균	2-46-7	3564.2	1444.7		평균	0-15-0	189.0	1260.0
1706	3	1-16-7	1152.0	987.1	1707	3	1-57-7	1519.0	963.2
	4	1-19-0	1396.0	1173.1		4	1-19-1	1392.0	1168.8
	평균	2-35-7	2548.0	1081.0		평균	2-76-8	2911.0	1051.7
1708	3	1-51-1	998.0	660.5	1709	3	1-58-1	1303.0	824.2
	4	1-41-6	1084.0	765.5		4	1-49-4	1515.0	1014.1
	평균	2-92-7	2082.0	711.3		평균	3-07-5	2818.0	916.4
1710	3	1-52-6	1585.0	1038.7	1711	3	1-44-0	1222.0	848.6
	4	1-52-8	2218.0	1451.6		4	1-58-8	1568.6	987.8
	평균	3-05-4	3803.0	1245.3		평균	3-02-8	2790.6	921.6
1712	3	1-47-3	1656.0	1124.2	1713	3	1-57-4	1072.0	681.1
	4	1-44-0	1816.0	1261.1		4	1-38-9	870.0	626.3
	평균	2-91-3	3472.0	1191.9		평균	2-96-3	1942.0	655.4
1714	3	1-56-0	843.0	540.4	1715	3	1-59-6	1612.0	1010.0
	4	1-44-5	574.0	397.2		4	1-42-3	1668.0	1172.2
	평균	3-00-5	1417.0	471.5		평균	3-01-9	3280.0	1086.4
1716	3	0-92-3	608.0	658.7	1717	3	1-70-2	1372.0	806.1
	4	0-54-5	440.0	807.3		4	1-42-6	1506.2	1056.1
	평균	1-46-8	1048.0	713.9		평균	3-12-8	2878.2	920.1
1718	3	1-35-8	1014.2	746.7	1719	3	1-20-9	1084.0	896.6
	4	1-19-5	1285.0	1075.3		4	1-31-7	1516.0	1151.1
	평균	2-55-3	2299.2	900.6		평균	2-52-6	2600.0	1029.1
1720	3	0-22-0	440.0	676.9	1721	3	1-07-7	708.0	657.4
						4	1-27-6	1203.2	942.9
	평균	0-22-0	440.2	676.9		평균	2-35-3	1911.2	812.2
1724	3	1-55-6	1444.0	928.0	1725	3	1-49-5	690.0	461.5
	4	1-52-2	1826.0	1199.7		4	1-34-5	784.0	582.9
	평균	3-07-8	3270.0	1062.4		평균	2-84-0	1474.0	519.0
1726	3	1-39-2	923.0	663.1	1727	3	1-16-7	755.0	647.0
	4	1-22-6	924.0	753.7		4	0-88-1	564.0	640.2
	평균	2-61-8	1847.0	705.5		평균	2-04-8	1319.0	644.0
1728	3	1-42-6	782.0	534.9	1729	3	1-76-1	1911.0	1085.2
	4	1-32-2	1178.0	884.3		4	1-90-1	1639.0	862.1
	평균	274-8	1960.0	713.2		평균	3-66-2	3550.0	969.4
1730	3	2-093	1974.0	943.1	1731	3	1-49-3	465.0	311.0
	4	2-04-1	2130.0	1043.6		4	1-62-3	395.6	243.7
	평균	4-13-4	4104.0	992.7		평균	3-11-6	860.6	276.2
1732	3	1-69-7	851.0	501.5	1733	3	1-55-8	1014.0	650.8
	4	1-78-5	973.0	545.1		4	1-50-4	1054.0	700.8
	평균	3-48-2	1824.0	523.8		평균	3-06-2	2068.0	675.4
1734	3	1-68-0	1324.0	788.0	1735	3	1-88-5	1728.0	916.7
	4	1-78-9	1696.0	948.0		4	1-78-4	1892.0	1060.5
	평균	3-46-9	3020.0	870.6		평균	3-66-9	3620.0	986.6
1736	3	1-94-0	1695.0	873.1	1737	3	1-32-7	908.0	684.3
	4	1-64-8	1738.0	1054.6		4	0-83-6	384.0	459.3
	평균	3-58-8	3433.0	956.8		평균	2-16-3	1292.0	597.3
1738	3	0-65-4	432.0	660.6	1739	3	1-50-2	1718.0	1143.8
	4	0-38-0	256.0	673.7		4	1-02-5	1406.0	1371.7
	평균	1-03-4	688.0	665.4		평균	2-52-7	3124.0	1236.2

1740	3	1-50-2	1454.0	968.0	1742	3	1-63-4	1624.0	993.9
	4	0-81-3	880.0	1062.4		4	0-87-1	1128.0	1295.1
	평균	2-31-5	2334.0	1008.2		평균	2-50-5	2752.0	1098.7
1743	3	1-72-9	760.0	439.6	1744	3	1-54-2	1530.0	992.2
	4	0-96-4	301.0	312.4		4	1-05-8	1152.0	1088.8
	평균	2-69-3	1061.0	394.0		평균	2-60-0	2682.0	1031.5
1745	3	1-54-2	907.0	588.8	1746	3	1-44-7	1138.0	786.5
	4	0-98-6	600.0	608.5		4	0-82-2	788.0	958.6
	평균	2-52-8	1507.0	596.1		평균	2-26-9	1926.0	848.8
1747	3	1-44-7	1052.0	727.0	1748	3	1-44-7	1596.0	1085.7
	4	0-68-7	686.0	998.5		4	1-13-9	1248.0	1095.7
	평균	2-13-4	1738.0	814.4		평균	2-58-6	2844.0	995.8
1749	3	1-44-7	944.0	652.4	1750	3	1-44-7	1165.0	805.1
	4	1-02-5	952.0	928.8		4	1-02-5	1138.0	1110.2
	평균	2-47-2	1896.0	767.0		평균	2-47-2	2303.0	931.6
1752	3	1-25-1	960.0	767.4	1753	3	1-44-7	1046.0	722.9
	4	0-87-2	908.0	1041.3		4	0-93-7	882.0	941.3
	평균	2-12-3	1868.0	879.9		평균	2-38-4	1928.0	808.7
1754	3	1-25-7	938.0	746.2	전체	3	69-61-5	56566.2	812.5
	4	0-68-2	692.0	1014.7		4	57-97-2	54874.4	946.6
	평균	1-93-9	1630.0	840.6		평균	127-58-7	111440.6	873.4

<비고> 수확량은 병작답 수취량의 2배로 환산하였고, 등급과 결부수가 모두 확인되는 필지만 계산하였음.

4등급 답보다 3등급 답에서 더 많은 벼가 생산된 연도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1713년 655.4두, 1714년 471.5두, 1727년 644두, 1729년 969.4두, 1731년 276.2두, 1737년 597.3두, 1743년 399두이다. 이들 7개년 가운데 1729년을 제외한 나머지 6개년의 생산량은 18세기 전반 칠곡지역 3·4등급 답 1결의 벼 생산량인 842.1두에 미치지 못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3등급 답이 4등급보다 더 많은 벼를 생산한 해는 대체로 심한 흉년이 든 해였다. 47년 가운데 흉년이 심하게 찾아든 10개년을 살펴보면, 1731년이 가장 혹심했고, 그 다음은 차례로 1743년, 1714년, 1725년(519두), 1732년(523.8두), 1745년(596.1두), 1737년, 1727년, 1713년, 1738년(665.4두) 순이다. 첫 번·두 번·세 번째를 비롯하여 일곱·여덟·아홉번째에 해당하는 연도에 3등급 답은 4등급 답보다 더 많은 벼를 생산했다.

이같은 사실은 3등급 답의 상당 부분은 4등급 답보다 계곡 상류에 위치한 수원(水源)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 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시기에 양전이 이루어지면 계곡상류에 위치한 수리안전 답이 수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지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16~17세기 동안 보, 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이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사정은 변화하였다. 수리시설의 확충은 계곡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 즉 상대적으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수리시설이 확충되기 이전에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수리불안전답으로 남아있던 곳을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는 수리안전답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답은 계곡에 위치한 전지, 즉 물은 풍부하게 공급되나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보다 더 많은 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칠곡지역의 경우 4등답이 3등급답보다 더 많은 벼를 생산할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수리시설이 확대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6> 「경자전답안」에 실린 전답 1두락의 면적분포 (단위;평)

지역	면적	칠곡			인동			성주			고령			흥덕			임천		
		필	두락	평	필	두락	평	필	두락	평	필	두락	평	필	두락	평	필	두락	
전	120이상	1	2	291										6	14	2449	4	7	1104
	100120	4	29	3057															
	80100	4	24	2090				1	20	1691							1	0.3	25
	6080	9	137	10296	3	35	2370	2	40	2628	1	2.1	149						
	4060	4	29	1549				2	30	1370									
	40미만							6	94	2934	1	4	152						
	합계	22	221	17283	3	35	2370	11	184	8623	2	6.1	301	6	14	2449	5	7.3	1129
답	250이상	3	4.2	1099															
	200250	11	39.1	8724	1	3	733				2	3	726	4	18	4081			
	150200	27	73.3	12512				9	16.1	2750	14	31	5261	2	4	716	5	29	4700
	100150	25	78.6	10474				4	7.4	1084	7	13	1275	5	10.9	642	15	108	13464
	50100	9	24.7	2308				3	3.54	315				1	7.1	99	2	9.7	929
	50미만	1	4	152										2	3	96			
	합계	76	223.9	34819				16	27	4149	23	47	7712	14	43	7092	22	146.7	19093

둘째, 비옥도가 다양한 전답을 6등급으로 나누는 데서 당시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댁의 「경자전답안」에서 두락의 면적분포를 정리한 <표21>에서 그러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답 1두락의 면적은 다양하였다. 전의 경우 1두락의 면적이 40평 미만에서 120평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답의 경우 50평미만에서 250평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한말까지도 지속되었다. 1906년 조사에 따르면 동일지역이라도 비옥도에 따라 1두락의 면적이 서로 달랐다. 또한 <표21>에서 보듯이 1두락의 면적이 다양한 현상은 답보다 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전의 경우 지역마다 밀집된 구간이 서로 다르지만, 답의 경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100에서 150평 사이 구간과 150평에서 200평 사이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필지별 비옥도의 차이가 답보다 전에서 컸음을 의미한다. 결국 비옥도가 다양한 전답을 6등급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전품이 현실과 괴리될 여지가 있었다. 등급판정과 6가지로 단순화된 전답등급 문제에 더하여 다양한 전형을 제·직·방·구·규전 등 5가지로 정형화시키는 과정에서, 장광척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실상이 양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경자양전이 당시의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였으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전답등급을 새로 책정하지 않고 임란이전의 전품을 적용한 갑술양전의 결과를 계승한 부분이다. 전형을 판단하는 과정과 장광척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오차가 크면 절대면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경자양전의 결과는 대체로 당시의 현실과 부합했다. 경자양전 당시 칠곡지역 답 1두락은 96평이고, 전 1두락은 78평이다. 이러한 전답면적은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답 1두락은 전 1두락에 비해 대체로 2배 정도 넓다는 사실과 잘 부합한다. 이유중이 칠곡 고정원에 소재한 답 1두락을 전 2두락으로 변경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두락수가 동일한 경우 답의 면적은 대체로 전의 두배였다.

전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되면 갑술양전 이래 수리시설이 더욱 확대되고, 이앙법이 널리 보급된 현실이 경자양전에 충실히 반영되어 다수의 필지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결수가 확보되는데, 왜 정부는 경자양전의 전품을 계승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의문은 갑술양전 이후 경자양전까지 조정에서 벌어진 양전논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갑술양전 이후 경자양전 사이 약 90년 동안 정부는 몇 번이나 양전을 다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관료=지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숙종대 들어와서도 양전실시 여부를 놓고 정부와 관료=지주는 약 30여년간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당시 지주들은 지방관을 움직여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였고, 지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던 지방관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양전을 반대했다. 지주들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지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양전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안이 바로 갑술양전의 전품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당시 농촌현장에서 양전을 지휘하던 균전사들은 양전사목에 실린 전품조항을 수정하고, 나아가 전품을 현실에 맞게 재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다. 저간의 사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숙종 45년 가을 전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전라좌도 균전사 김재로의 건의가 있은지 얼마 후, 경자양전 논의를 주도했던 영의정 김창집을 비롯하여 우의정 이건명, 전라도 균전사 김재로, 예조판서 민진후, 호조판서 송상기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전품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였다. 전품문제에 대해 말문을 연 사람은 김창집이었다. 그가 전품을 크게 고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이건명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김재로는 이에 반대하면서 전품을 현실에 맞게 재 조정하자고 하였으며, 김재로의 의견은 민진후에 의해 지지를 받으로써 양자의 의견을 팽팽히 맞섰다. 이같이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자 송상기는 원전(元田)과 원답(元畓)의 전품은 갑술양전의 것을 계승하고, 잡탈진기(雜頉陳起) 처는 전품을 새로 책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전논의를 주도하던 영의정 김창집은 이러한 타협안 마저 거부하고 모든 전답의 전품은 갑술양전의 것을 계승하여야 됨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이날의 논의에서 김창집의 의견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전품은 갑술양전 시의 것을 계승하게 되었다. 정부가 적지 않은 관료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품을 계승한 원인은 바로 지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양전의 성공적인 시행은 지주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정부 또한 양전을 반대하는 지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주들 또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전을 거세게 반대했지만 부세의 전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양전을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전이 시행되더라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양자간의 대립은 새로운 양전을 실시하되, 전품은 갑술양전의 것을 계승한다는 선에서 정부와 관료=지주가 타협함으로써 해소되었고, 그 결과 경자양전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날카롭게 대립하던 정부와 관료=지주가 경자양전을 앞두고 전품은 종전대로 계승한다는 점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경자양전 당시 전품을 새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품을 계승함으로써 갑술양전 이후 진행된 수리시설의 확충과 이앙법의 보급에 힘입어 증대된 생산물에 대한 부세를 추징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양전을 통해 갑술양전 이후 개간된 전답에서 부세를 거둘 수 있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경자양전을 실시함으로써 갑술양전 때보다 8%정도 더 많은 결수를 확보했다. 여기에 더하여 갑술양전 당시 진전으로 파악되었다가 그 이후 기경전이 된 전답에서도 부세를 거둘 수가 있었다. 감사댁 전답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갑술전답안」에 실린 전답 가운데 14필지 87부 8속(전체의 6%)은 갑술양전에서 진전으로 파악된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 11필지 71부 9속(유주진전 4필지 45부 7속, 무주진전 7필지 26부 2속), 답 3필지 15부 9속(유주진전 1필지 10부 5속, 2필지 무주진전 5부 4속)은 갑술양안에는 진전으로 기재되었다. 이들 진전은 경자양전에서는 기경전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세를 부담하던 지주들은 경자양전이 시행됨으로써 양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아가 갑술양전 이후 진전에서 기경전으로 바뀐 곳과 새로 개간한 전답의 부세도 정식적으로 납부해야되었다. 하지만 경자양전이 갑술양전의 등급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수리시설의 보급과 이앙·견종·간종법의 일반화 등에 힘입어 증대된 생산량을 지주들이 차지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인받게 되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경자양전 이후에도 1두락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이 3등급보다 4등급에서 더 많았는데, 합리적인 부세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4등급 답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의 전품이 더 높게 책정되고 부세 또한 더 많이 내어야 한다. 그러나 경자양전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경자양전 당시 갑술양전의 전품을 계승함으로써 전답에 부과되는 부세량은 여전히 그 이전의 기준과 동일하였고, 그 결과 지주들은 경자양전 이후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2. 가경전과 진전 파악의 성격

우리는 앞에서 면 단위로 볼 때 대체로 양반거주지역에서는 가경전이 적은 반면 진전은 많았고, 평민 거주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반층의 전답에서는 가경전의 비율이 낮은 반면 진전의 비율은 높고, 평민층의 전답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노비를 많이 보유한 양반들이 개간에도 소극적이었고, 전답 또한 많은 부분을 진전으로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석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의식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면 단위로 가경전과 진전의 실상을 대비시켜보자. <표22>은 『용궁양안』에서 면 단위로 가경전과 진전의 실상을 정리한 것이다. 가경전의 비율은 평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하·신상·내상면에서 월등히 높다. 한편 진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북상·남하·읍내·내상면이다. 진전의 비율이 높은 4개면 가운데 내상면을 제외한 3개면은 모두 양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표 57> 용궁현 각 면의 가경·진전 규모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北下	申上	申下	邑內	合計
전답규모(A)	340-13-2	359-46-7	417-84-2	404-41-4	365-48-6	234-24-0	432-69-1	2554-27-2
加耕地(B)	5-99-9	20-64-8	5-47-0	3-60-7	24-19-7	21-44-0	7-15-3	88-51-4
陳田(C)	62-51-7	57-29-6	85-75-4	59-44-3	46-73-6	32-24-1	70-58-4	414-57-1
B/A*100	1.8%	5.7%	1.3%	0.9%	6.6%	9.2%	1.7%	3.5%
C/A*100	18%	16%	21%	15%	12%	14%	16%	16%

이러한 현상은 진전은 양반층의 소유지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가경전은 평민층의 소유지에서 많은 데서 비롯되었다. <표23>은 『용궁양안』에서 각 신분별 가경지와 진전 소유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가경전과 진전 가운데 양반층과 평민층이 소유한 실상을 살펴보면 양반층에서 소유한 진전의 비율이 동 신분층에서 소유한 가경전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는 면은 5개(내상·신상·신하·북상·북하)면이고, 나머지 2개 면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7개 면 모두에서 평민층 소유의 가경전 비율이 동 신분층에서 소유한 진전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기경전이 진전으로 변하지 않도록 애쓰고, 나아가 부지런히 새로운 농토를 일구는 소농민들의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노비노동력을 보유한 양반들은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는 데도 소극적이고, 나아가 기존의 경작지마저 쑥대밭으로 변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양반들은 기존의 경작지가 진전으로 변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고, 새로운 전답을 개간하는 데도 그토록 무관심하지 않았다.

당시 양반들의 소유지 가운데 가경전이 진전으로 변하는 곳도 없지 않았다. 이미 보았듯이 양반들의 전답 가운데 적지 않는 부분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주의 소유지였다. 당시까지도 분할상속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원방전답을 적지 않게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반소유의 원방전답은 17세기 후반이래 노비도망이 본격화되면서 진전으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원방에 소재한 양반소유의 전답은 그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가경전이 진전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진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에 의해 다시 기경전으로 변했다. 양반들은 결혼을 통한 끈끈한 인맥과 학연을 매개로 한 돈독한 우의를 서로간에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타 신분층에 비해 개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표 58> 용궁현 각 면의 가경·진전의 소유자 신분 (단위 ; 결-부-속)

	南下		內上		北上	
	加耕田	陳田	加耕田	陳田	加耕田	陳田
兩班	1-73-1(29)	19-69-7(32)	3-28-0(16)	10-66-1(19)	1-97-8(36)	33-14-8(39)
中人	0-12-5(2)	1-17-4(2)	2-37-6(12)	7-08-2(13)	0-40-4(8)	7-01-7(8)
平民	2-66-8(44)	16-83-7(27)	9-80-0(47)	23-49-4(41)	1-49-8(27)	17-07-1(20)
賤人	0-92-4(15)	5-84-1(9)	2-74-6(13)	5-32-9(9)	1-09-8(20)	7-61-0(9)
其他	0-04-1(1)	0-88-2(1)	2-26-2(11)	1-12-1(2)	0-44-1(8)	1-13-7(1)
無主	0-51-0(9)	18-08-6(29)	0-18-4(1)	9-28-1(16)	0-05-1(1)	19-77-1(23)
合計	5-99-9(100)	62-51-7(100)	20-64-8(100)	57-29-6(100)	5-47-0(100)	85-75-4(100)
	北下		申上		申下	
	加耕田	陳田	加耕田	陳田	加耕田	陳田
兩班	1-64-6(46)	34-75-8(58)	8-00-8(33)	12-71-6(27)	3-72-6(17)	9-99-6(31)
中人	0-17-3(5)	3-46-5(6)	0-54-9(2)	1-79-2(4)	2-26-9(12)	3-65-2(12)
平民	0-87-3(24)	11-75-2(20)	11-59-9(48)	25-03-7(54)	9-45-7(44)	7-73-8(24)
賤人	0-66-4(18)	5-23-7(9)	2-18-8(9)	2-50-0(5)	3-95-4(18)	4-26-2(13)
其他	0-25-1(7)	2-08-5(3)	1-85-3(8)	1-16-0(2)	1-76-8(8)	1-08-0(3)
無主		2-14-6(4)		3-53-1(8)	0-26-6(1)	5-51-3(17)
合計	3-60-7(100)	59-44-3(100)	24-19-7(100)	46-73-6(100)	21-44-0(100)	32-24-1(100)
	邑內		合計			
	加耕田	陳田	加耕田	陳田		
兩班	1-83-4(26)	16-91-7(24)	22-20-3(25)	137-89-3(33)		
中人	0-81-7(11)	10-18-6(15)	6-71-3(7)	34-36-8(8)		
平民	1-84-9(26)	8-68-4(12)	37-74-4(43)	110-61-3(27)		
賤人	2-25-2(31)	8-97-1(13)	13-82-6(16)	39-75-0(10)		
其他	0-34-0(5)	4-35-7(6)	6-95-6(8)	11-82-2(3)		
無主	0-06-1(1)	21-46-9(30)	1-07-2(1)	80-12-5(19)		
合計	7-15-3(100)	70-58-4(100)	88-51-4(100)	414-57-1(10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合計 대비 백분율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용궁양안』에는 양반들이 여타 신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많이 소유하고, 평민들은 여타 신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경전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까. 그 까닭은 경자양안을 작성하면서 평민층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작되지 않아도 가경전으로 등재하고, 나아가 진전마저 기경전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양반들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가경전을 양안에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경전을 진전으로 등재하였기 때문이다. 경자양전 당시 빈잔한 농민들이 자갈밭을 개간하려고 하면 그곳마저 가경전으로 양안에 등재하기도 했다. 『용궁양안』에서 평민층이 여타 신분층에 비해 가경전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전에는 주(主)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전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나머지 진전을 기경전으로 바꾸어 양안에 등재하기도 했다. 진전마저 기경전으로 등재한 전주들은 지방관청과 여러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 양반층보다 힘없는 평민층에서 더 많았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진전마저도 기경전으로 등재해야만 했던 평민들과 달리 양반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기경전마저도 진전으로 등재했다. 양반들이 이용한 편법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기경되고, 일부가 진전으로 남아있는 필지를 진전으로 등재하는 것

이었다. 경자양전 당시 임천지방에서는 토호와 간민들이 전답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어도 멀쩡하게 경작되는 나머지 부분까지도 진전으로 등재했는데, 그 사례가 허다했다. 토호로 지칭되는 임천지방의 양반들은 내탈(內頉)을 이용하여 기경전을 진전으로 등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임천지역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용궁지역의 양반층 또한 기경전을 진전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양반들은 그들의 가경지를 상당부분 양안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삼남 각 읍에서는 경자양전을 통해 새로이 확보한 전답의 일부만 중앙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즉 양안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의 대부분은 양반들의 소유지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평민들의 가경지는 낱낱이 조사하여 양안에 등재하였던 것이다.

한번 양안에 등재된 필지는 은결로 처리하여 탈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반들은 그들의 가경지가 양안에 등재시키지 않도록 애썼던 것이다. 『용궁양안』은 양안에 등재된 전답을 후일 양안에서 탈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용궁양안』은 오로지 『갑술양안』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천(成川), 수파(水破), 포락(浦落), 굴파(掘破) 등으로 인해 흔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필지도 빠짐 없이 기재해 두고 있다. 남하면 125필지 5결 53부 1속, 내상면 190필지 11결 98부 1속, 북상면 148필지, 5결 1부 5속, 북하면 139필지 4결 17부 5속, 신상면 86필지 8결 37부 9속, 신하면 90필지 6결 36부 9속, 읍내면 96필지 7결 1부 5속이 성천(成川), 수파(水破), 포락(浦落), 굴파(掘破)된 전답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金容燮, 1970,『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Ⅰ 一潮閣

金容燮, 1971,『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一潮閣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편, 1995,『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김홍식 외, 1997『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金建泰, 2004,『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宮嶋博史, 1991,『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高麗書林

2) 논문

李榮薰, 1984,「量案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의 事例分析-」,『經濟史學』, 8

李哲成, 1991,「肅宗末葉 庚子量田의 실태와 역사적 성격-比摠制로의 변화」,『史叢』, 39

李榮薰, 1992,「광무양안에 있어서 '시주'파악의 실상-경기도·충청남도 광무양안 사례분석」,『성곡논총』, 23
吳仁澤, 1992,「肅宗代 量田의 推移와 庚子量案의 성격」,『釜山史學』, 23
吳仁澤, 1994「朝鮮後期 新田開墾의 성격-肅宗代 南海縣 庚子量案의 加耕田을 중심으로-」,『釜大史學』, 18
吳仁澤, 1996,「17·18세기 量田事業 硏究」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李榮薰, 1996,「,『田制詳定所遵守條劃』, 의 제정년도 - 同尺制에서 異尺制로의 移行說 검토-」,『고문서연구』, 9·10
吳仁澤, 2000,「경자양전의 시행조직과 양안의 기재형식」,『역사와 현실』, 38
金建泰, 1999,「갑술·경자양전의 성격 - 칠곡 석전 광주이씨가 전답안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31
金建泰, 2000,「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경상도 용궁현 사례-」,『역사와 현실』, 36
崔潤晤, 2000,「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심책」,『역사와 현실』, 36
왕현종, 2001,「18세기 후반 양전의 변화와 '時主'의 성격-충청도 懷仁縣 사례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41
崔潤晤, 2003,「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의 토지소유 구조와 농민층의 동향-충북 진천군 양안을 중심으로」,『역사교육』, 86
崔潤晤, 2005,「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충북 진천군양안 전체 분석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58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활용

박현순

-목차-

1. 국가의 활용

1) 양안의 작성과 보관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토지 조사 사업인 양전(量田)을 시행하여 군현단위의 토지 대장인 양안을 작성하였다. 양안은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 부세를 부과하는 기초 장부로 '전안(田案)', '도행장(導行帳)'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졌다. 양안에는 필지별로 토지의 위치, 지목, 형태, 크기, 주인명 등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양안 작성을 위한 양전은 도(道)-군현(郡縣)-면(面)으로 조직된 행정 조직을 따라 시행되었다. 먼저 면을 단위로 양전을 시행한 후 초안을 작성하고 군현에서 그 결과를 수합하여 검토한 후 다시 도단위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정안(正案)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여 각 양안의 끝에는 작성 책임자인 수령과 균전사의 수결이 들어가 있다.

조정에서는 양전을 위해 각도를 좌우도로 나누어 균전사(均田使)나 양전사(量田使)를 파견하였다. 균전사는 관할지역을 순행하며 군현별로 양전을 시행하고 양안의 작성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현전하는 경자양안을 보면 경상도, 전라좌도, 전라우도 등 균전사의 관할구역별로 기재 형식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경상도는 '경자개량전안(庚子改量田案)', 전라도는 '기해양전도행장(己亥量田導行帳)'으로 양안의 서명도 통일되어 있다. 이것

은 최종적으로 좌·우도에 파견된 균전사가 도를 단위로 양안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군현에서의 양전은 면단위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였다. 현전하는 경자양안이나 읍양안, 광무양안도 모두 면단위로 묶여 있으며, 끝에는 면의 토지를 합계한 면총(面總)이 있다. 면단위로 양전을 시행하고 양안을 작성한 것은 행정단위 및 양전 단위에 상응하는 것이다.

지역이 넓은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한 개의 면을 1도(道), 2도 또는 상도(上道), 하도(下道) 등으로 나누어 동시에 양전을 시행하였다. 넓은 지역에서는 그 아래에 다시 1작(作), 2작 등 '작(作)'을 나누어 양전 단위를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한 개의 면에 여러 개의 양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는데, 전주부 남면의 경자양안의 경우 남1도 1작, 남1도 2작, 남2도 세 책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면전체의 토지를 합계한 면총(面摠)이 있다. 군현 전체의 마지막 양안에는 군현의 합계를 정리한 읍총(邑總)이 있는데, 이는 도이상(都已上)이라고도 하였다.

<그림 1> 『의성현경자개량전안』 : '현상(縣上)'이라는 기재를 통해 의성현 보관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자양전 이후에는 진전을 조사한 영조대 사진양전(査陳量田) 이후로 필요에 따라 군현단위의 읍양전을 실시하였다. 읍양전은 균전사가 주도하는 도규모의 양전과 달리 수령이 주관하였으며, 양안도 수령이 담당하여 작성하였다. 고종 8년(1871)의 언양현 양안이 그 예이다. 언양현 양안은 현재 삼동면과 하북면의 양안이 남아 있는데, 이 양안에도 수령과 관찰사의 수결이 있다. 따라서 읍양안도 면-군현-도의 행정조직을 따라 양안의 작성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현존하는 경자양안과 읍양안

(단위 : 책)

구분	도명	군현명	책수
경자양안	경상도	남해	7
		비안	5
		상주	6
		예천	8
		용궁	7
		의성	24
		소계	57
	전라도	고산	11
		남원	5
		능주	5
		담양	1
		순천	16
		임실	10
		전주	20
		화순	7
		소계	75
	소계		132
읍양안	경상도	언양	3
		울산	1
	전라도	영광	1
	소계		5
합계			137

양전을 통해 군현별로 작성한 양안은 중앙의 호조(戶曹)와 도의 감영(監營), 토지 소재 군현에 각기 한부씩 보관하였다. 숙종대 작성된 경상도 의성현 양안의 표지에는 오른쪽 위쪽에 '현상(縣上)'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縣)에서 보관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고종 8년 언양현 남삼동 양안의 표지에는 '호조(戶

曹)'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호조에 보관한다는 의미다. 남상동 양안은 현재 2종이 있는데, 표지에 '호조'라고 기재된 책은 모서리에 '언양(彦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책은 '남상동(南三同)'이라는 면명이 기재되어 있다. 즉, 호조에서는 '언양'이라는 군현명을, 언양현에서는 '남상동'이라는 면명을 기재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양전을 실시하여 작성한 조선시대 군현양안은 137책이 전한다. 숙종대 경자양안이 132책, 읍양안이 5책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양안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모두 기존의 양안을 등서한 것으로 양전과 동시에 작성된 것은 아니다.

군현양안은 외형상으로도 등서한 양안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책의 크기다. 현전하는 경자양안을 보면 경상도는 대략 65×70cm, 전라좌도는 62×50cm, 전라우도는 62×45cm로 세로의 길이가 60cm를 넘는 큰 크기다. 특히 경상도는 가로의 길이도 70cm 정도로 정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한 책의 장수도 600장이 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두텁게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크기와 장수 때문에 경자양안의 무게는 성인 남성이라도 쉽게 들기 어려울 정도다.

<표 2> 경자양안 및 읍양안의 크기

지역	서명	도서번호	크기
경상도	慶尙道醴泉庚子改量田案	奎14956-v.1-8	65.4×70cm
전라우도	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導行帳	奎15035-v.1-20	62×45cm
전라좌도	全羅左道順天府(呂水面)己亥量田導行帳	奎14630	61.2×50cm
彦陽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畓量案	奎15013	48.2×56cm
靈光	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	奎25036	61×46cm
蔚山	蔚山府府二洞田結大帳	奎15012	68×70cm

양전은 흔히 20년마다 한차례씩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된다. 이 조항은『경국대전』에 실려 있다. 실제로 조선초기에는 태종대에 8도의 양전을 시행한 이래 경기도와 하삼도는 20~30년에 1회, 이북지역은 50~60년에 한차례씩 양전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경국대전』에 매 20년마다 한차례씩 양전을 시행하는 것이 법문화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양전 시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규모 양전은 삼남을 대상으로 한 갑술양전(1634)과 경자양전(1720)이 시행되었을 뿐이며, 나머지는 도별로 경기도(1662), 함경도(1665), 충청도 20읍(1669), 강원도 16읍(1708) 등의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경자양전 이후에는 군현단위의 읍양전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몇 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작성된 양안이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안이 작성될 때까지 그대로 활용되었다. 대규모 양전 이후에 현저하게 양전이 줄어드는 양상은 비단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명청대 초기에 한차례 양전을 시행하였을 뿐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도쿠가와 막부초기에 한차례 양전을 시행했을 뿐이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조선은 양전이 자주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 개간된 토지도 생겨나는 반면 황무지로 변하는 토지도 있기 마련

이다. 이에 따라 새로 양전을 시행하여 면적이나 등급을 조정하여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전을 시행하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양전의 결과에 대한 저항도 예상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양전을 시행하기보다는 문제가 극심한 지역에만 읍양전을 시행하여 비용과 저항을 줄이고자 하였다.

양전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작성된 양안은 10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다. 하지만 일반양안은 현존하는 양안을 통해 확인되듯이 일체의 첨삭이 없이 원본이 그대로 보관되었다. 장기간의 활용에 대비하여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림 2> 원본의 상태가 잘 보존된『慶尙道醴泉庚子改量田案』

실제 양안을 활용할 때에는 양안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등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에는 행심책처럼 군현에서 부세 운영을 위해 특정지역의 양안을 등출한 경우도 있고 궁방이나 군영·아문, 개인 등이 소유지나 수세지에 해당되는 필지의 양안만을 등출한 경우도 있다. 이런 양안들도 '양안'이나 '타량성책(打量成冊)', '전안(田案)' 등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양전을 하고 자호와 지번을 새로 부여한 양안이 아니라 양안을 등서한 등출본에 해당된다.

2) 부세 징수와 행심책

양안은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지만 실제의 부세행정은 이를 등서한 행심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심(行審)'이란 토지의 작황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양안을 등서한 책이 곧 행심책이다. 행심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경기 재상경차관 김뉴(金紐)가 상서(上書)하여 아뢰기를 " … 지금 여러 읍의 재상(災傷)과 연분등제(年分等第)를 행심책에 상세히 기록하여 수령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니 이서배들이 간사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 이른바 행심책은 도행장(導行帳)을 베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행장과 한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상과 등제를 별표에 써서 도행장의 각 이름 하에 붙여 도회(都會)에 보관했다가 수세가 끝난 후 돌려 주면 폐단을 줄이고 간사한 짓을 막을 수 있어서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될 것입니다. … " 하니 왕이 하서(下書)하여 답하기를 " … 도행장에 표를 붙여 재상과 등제를 상세하게 이름 아래에 기록하여 … 경차관(敬差官)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도회(都會)에 잘 보관하여 뒤에 확인하는 자료로 삼도록 하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권8, 성종 1년 11월 병자)

이 기록은 성종 1년 매년 행심책을 작성하는 데 많은 종이가 소요가 민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경기도 경차관 김뉴가 그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따로 행심책을 작성하지 말고 양안에 별도의 종이를 붙여 풍흉과 그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제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전하는 군현의 양안을 보면 위와 같이 종이를 붙여 작황을 기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숙종대 경자양전을 시행할 때의 문서들을 모아 정리한 『양전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서 주목된다.

> "이른바 초안(草案)은 각각 그 관(官)에 보관하다가 매년 행심할 때 그 상지(裳紙)를 고치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규례다." (『양전등록』 경자 3월 일)

이 기록은 양안을 작성할 때 만든 초안을 보관하여 행심책으로 사용하며 행심할 때 상지(裳紙)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상지란 책의 아랫부분에 종이를 붙인 것으로 치마를 펼쳐 놓은 것 같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이에 따르면 경자양안 당시에는 매년 별도의 행심책을 만들지 않고 양안의 초안에 상지를 붙여 행심책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안 초안을 행심책으로 활용한 경우는 고종 8년(1871)에 작성된 『경상도언양현화산동전답결정안(慶尙道彦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의 사례가 있다. 이 책은 첫면에 기록된 제목을 통해 고종 8년에 작성된 화산동 양안의 정안(正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만들어진 표지에는 제목이 '화산동전답결행심(華山洞田畓結行審)'이라고 되어 있다. 즉, 본문의 제목은 양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된 '정안'이지만 표지의 제목은 '행심'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정안'을 행심책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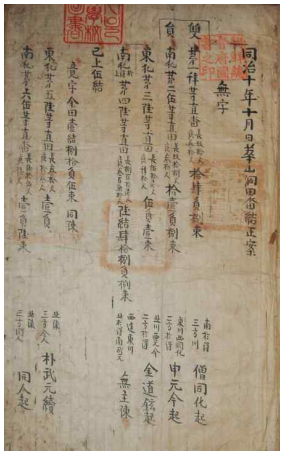

<그림 3> 『경상도언양현화산동전답결정안(慶尙道彦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華山洞田畓結行審冊](奎15018) 내지

<그림 4> 『경상도언양현화산동전답결정안(慶尙道彦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華山洞田畓結行審冊](奎15018) 표지

그러나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고종 7년에 작성된 『부산면좌자천원전답행심제삼권(釜山面佐自川員田畓行審第三卷)』이 그 예이다. 이 책은 표지는 물론 내지의 제목도 모두 '행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양안의 초안과는 별로 행심책을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부산면좌자천원전답행심제삼권(釜山面佐自川員田畓行審第三卷)』(奎18110-1)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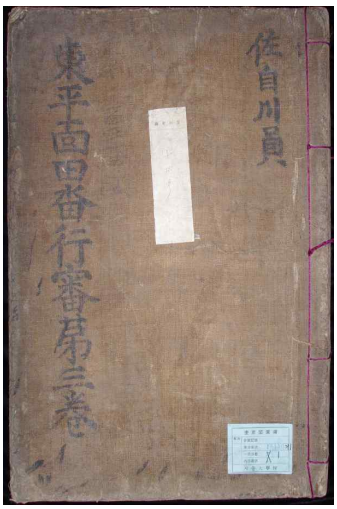

<그림 6> 『부산면좌자천원전답행심제삼권(釜山面佐自川員田畓行審第三卷)』(奎18110-1) 표지

숙종대 경자양전은 삼남지방에서만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전까지 새로 양전이 시행된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양안 초안을 행심책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전하는 행심책을 보더라도 양안 초안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는 그리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후대에 양안을 베껴 써서 행심책을 만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다만 앞의 그림에서 보듯 행심책의 경우에도 책의 아래쪽에 여러 장의 상지가 붙어 있어서 조선초기처럼 매년 행심책을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상지를 붙여 가며 한번 작성한 행심책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양안과 비교할 때 행심책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현전하는 행심책 중에는 서명이 '행심(行審)'인 경우도 있으나 '양안(量案)', '전답안(田畓案)', '대장등서(大帳謄書)', '전결원장부(田結元帳付)' 등 그 제목은 다양하다. 그 중에는 양안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재 내용면에서도 행심책의 내용은 양안과 일치한다. 양안을 등서하거나 양안의 초안을 행심책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경상도 합천의 『봉계양안(鳳溪量案)』을 보도록 하자. 이 양안은 언제 등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본문의 기재 형식은 경상도의 경자양안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경상도의 경자양안은 토지 주인란에 구주(舊主)와 금주(今主)를 함께 기재하였는데, 『봉계양안』에도 동일하게 구주와 금주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지를 붙여서 새로운 내용을 추기하였다.

경상도 밀양의 행심책은 훨씬 후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인란에 구주는 생략하고 금주만을 기재하였다. 하지만 본문의 기재 내용은 경자양안의 기재 형식과 동일하다. 즉, 편의적으로 구주를 생략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경자양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목이나 기재형식만으로는 양안과 행심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7> 행심책 『합천봉계양안』 (토지박물관 소장)

<그림 8> 행심책 『합천봉계양안』 (토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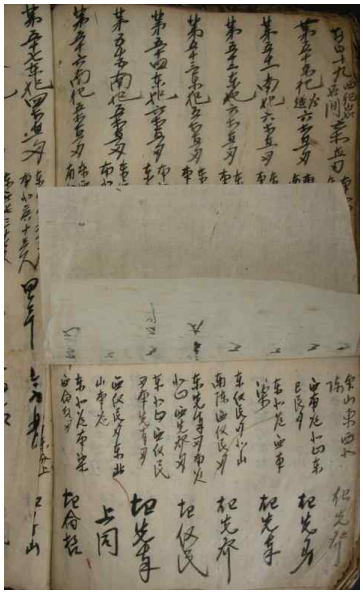

<그림 9> 밀양 모렴당 소장 행심책

그러나 실물을 보면 행심책은 양안과 쉽게 구분된다. 행심책에는 당해연도의 작황이나 주인명을 기록하는 상지(裳紙)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상지는 행심대지(行審帶紙)라고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책의 아래 쪽이 아닌 가운데 부분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10> 『석천원전결원장부(石川員田結元帳付)』(조세박물관 소장)

상지에는 행심 당시의 작황이나 주인의 변동 등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기재내용은 차이가 있다. 조선전기에는 각 토지의 작황을 1등~9등으로 등급을 매겨 전세를 부과하는 연분9등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행심책에도 연분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연분을 모두 9등으로 고정시

키는 영정법(永定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분은 더 이상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농사를 짓지 못한 진황지나 당해연도에 재해 때문에 농자를 짓지 못한 토지를 파악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였으며, 때로는 파종 곡식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인 이름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

행심책과 양안은 외형으로 확인되는 책의 크기도 차이가 있다. 양전을 통해 작성한 양안은 대개 양전 단위별로 크기가 통일되어 있으며 한면이 60cm이상의 큰 크기다. 경자양안이나 경상도 언양현 양안을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심책의 경우 크기가 천차만별이며 긴 세로면도 50cm를 넘지 않으며, 작은 경우는 20여cm에 불과하다. 각 지역에서 편의에 따라 행심책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또 양안은 한 책에 포함된 장수도 수백페이지에 이르지만 행심책은 수십페이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양안과 행심책이 작성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안은 면단위로 작성되었다. 한 면의 전체 토지를 수록하기 때문에 그 양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행심책은 대개 면 아래의 보다 작은 동(洞)이나 리(里)를 단위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양안에 비해 그 양이 적다. 이처럼 동이나 리단위로 작성한 것은 조선후기에 동(洞)이나 리(里)를 단위로 부세를 부과하는 공동납(共同納)이 발달하여 동과 리가 부세 운영 단위로 기능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조선후기의 行審冊

번호	원서명	작성연도	단위	자호수	裳紙	지역
1	平安道行審冊	16세기말	미상	미상	추기	尙州
2	尙州行審冊	17세기초	미상	미상	추기	평안도
3	慶尙北道慶州郡量案	19세기	面	17자	0	慶州
4	永興府憶岐社打量大帳謄書	헌종 13(1847)	社	87자	추기	永興
5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고종 8(1871)	面	24자	0	慶州
6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고종 20(1883)	里	9자	0	慶州
7	公洞面中里量案冊	고종 6(1869)	里	7자	0	夫餘
8	水只谷九政小冊	戊子	里	11자	0	慶州
9	沃野面東山洞田畓大帳	미상	洞	3자	0	昌寧
10	鳳溪量案	癸卯	洞	6자	0	陜川
11	修正所也村波浪洞田畓案	영조 52(1776)	洞	1자	흔적	단양
12	洞中行審[내제:地內面初作行審]	18세기 중엽	洞	11자	0	原州
13	釜山面佐自川員田畓行審第三卷	고종 7(1870)	員	5자	0	東萊
14	沙川面新草梁員田畓行審	고종 8(1871)	員	12자	0	東萊
15	石川員田結元帳付	미상	員	5자	0	미상
16	諸島面加土島行審	고종 8(1871)	島	2자	0	珍島
17	田畓案	미상	미상	미상	0	慶州
18	田畓錄	미상	미상	미상	0	미상
19	量案	미상	미상	17자	0	미상
20	行審冊	미상	미상	미상	0	미상
21	慶尙道彦陽縣華山洞田畓結正案[華山洞田畓結行審冊]	고종 8(1871)	洞	11자	x	彦陽
22	古音達里量案[내제:古音達里洞中量案]	고종 5(1868)	里	22자	x	(通津)
23	金冬於里大張	甲辰	里		x	晉州
24	奈洞里大帳	丙午	里	30자	x	晉州
25	鳳山左曲量案	미상	里	2	x	鳳山

그렇다면 행심책은 누가 작성한 것일까? 기록에 따르면 행심책은 군현단위에서 부세를 부과할 때 서원(書員)이나 면임(面任)이 담당하여 작성하였다고 한다. 실제 행심은 관에서 부세를 부과하는 기본 자료였기 때문에 관속(官屬)이 작성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것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보이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동중행심(洞中行審)』이라는 자료다. 이 책은 원본이 아니라 조선사편수회에서 등서한 것이지만 상지도 형태를 갖추어 등서하여 여타의 행심책과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지에 기록된 제목은 '지내면초작행심(地內面初作行審)'으로 지내면을 여러 작(作)으로 나눈 것 중 초작(初作)에 해당하는 지역의 행심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당초 면(面)을 단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책에는 토지를 5결 단위로 묶은 단위인 자호별로 '지심(指審)'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지심'은 행심을 담당하는 직임 중의 하나이므로 관에서 지심을 파견하여 자호를 단위로 행심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에는 상지에 기재된 내용도 다른 행심책에 비해 매우 자세하다. 이 책이 등서한 원래의 양안은 18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양전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다시 경작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양안으로 토지의 면적을 결부수 아래에 포락(浦落), 성천(成川) 등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유가 파악되어 있으며, 논의 경우 배미수도 기재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지에는 주인명 외에 '방천(防川)', '잉천(仍川)', '금진(今陳) 등 추가로 토지가 버려진 양상과 '재(災)', '초불(初不)', '행(行)' 등의 당해연도에 수확을 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였다. 또 밭의 경우에는 파종하는 작물도 기재하였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사정과 수확을 하지 못한 정황, 파종 곡물을 일일이 기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들은 토지의 경작 여부와 수확 정도, 세금을 부담할 주인을 파악한 것으로 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망라한 것이다. 행심은 이처럼 지심을 세워 파종 여부와 같은 당해년의 경작과 수확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동중행심』은 조선 후기 행심책의 전형이 된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행심책에는 상지에 경작 여부나 풍흉의 정도를 기록한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주인의 이름만을 기재하였다. 또 아예 상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당해년의 작황을 파악하는 행심책과는 거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심책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고종 5년에 작성한 『고음달리양안(古音達里量案)』이라는 책이 주목된다. 고음달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책에는 고음달리의 양안을 등서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본 동은 해구(海口)의 요충 관(管)○한 곳에 치우쳐 있다. 풍속이 질박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고 경직(耕織)을 업으로 삼아 힘쓴다. 전제(田制)에 어두워 매번 재난을 만나 세금을 낼 때는 관에서 온 문부(文簿)를 되풀이 하여 보아도 매도하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특별히 깨우칠 방법을 도모하여 부중(府中)의 오사(吳使)와 깊이 공의(公議)를 헤아려 원장(原帳) 중에서 1책을 만들어 내고, 이름하여 '동유(洞遺)'라고 하였다. 이후로 (부세를) 회피하려고 말을 꾸미는 폐단을 면하

기를 바란다.”

고음달리에서 동중양안을 등출한 이유는 전세를 부과하고 수납할 때 민(民)이 거납(拒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동중에서 관의 문부를 신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양안을 등출하여 비치하여 동중 수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책을 등서한 인물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동중(洞中)의 부세 수납에 관여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고음달리양안(古音達里量案)』과 유사한 형태인 합천 『봉계양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동중 양안을 등서한 인물들이 밝혀져 있다. 그들은 존위(尊位), 두민(頭民), 서사(書寫)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었다.

존위(尊位)는 조선후기에 동중에서 선임되어 동임(洞任)과 함께 동중의 부세 업무를 관장하던 직임이다. 18세기 말 강원도 영월의 사례를 보면 이 지역의 존위는 농경지의 재해를 인정하는 절차인 급재(給災)의 분배를 위해 토지의 면적을 확인하는 업무에 참여하였다. 또 전세 수납을 개선하기 위한 절목도 각동의 상존위(上尊位)가 보관하도록 하여 전세 부과와 수납 전 과정에서 존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합천 『봉계양안』은 동중의 대표인 존위와 두민이 부세 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등서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급재의 과정에 존위와 동임이 참여하였던 사실은 동중에서 급재와 부세 부과의 근거자료로 양안을 등서하여 보관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봉계양안』은 경자양안을 등서한 것으로 한 면 2~3장의 상지가 붙어 있다. 상지의 내용은 지번, 주인명을 기본으로 하며 간혹 결부수를 기록한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다른 행심책의 대부분도 『봉계양안』과 마찬가지로 동·리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상지에는 주인명, 결부수, 경작 여부를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런 형태의 행심책은 『동중행심』처럼 관에서 부세 부과를 위해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동 내에서 부세 수납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파악한 형태의 행심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책자들이 양반가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반들이 상존위로 활동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2. 궁방의 양안 활용

1) 궁방과 궁방전

양안은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파악한 장부로 부세를 징수하는 기본 자료가 된 한편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를 관리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소유주들은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양안에서 자신들의 소유 필지에 대한 정보를 등출하였다. 현재, 궁방이나 아문, 향교나 서원, 개인 등이 양안을 등출한 자료들이 다수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은 군현단위로 작성한 양안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등출한 것으로 양전을 시행한

후 작성한 양안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를 편의적으로 '궁방양안', '아문양안', '개인양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궁방의 양안 등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궁방은 조선시대 왕실에 속하는 궁(宮)과 방(房)을 통칭하여 일컫는 표현이다. 궁(宮)에는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등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4궁과 제사궁인 대왕사친궁(大王私親宮), 세자사친궁(世子私親宮) 등이 있다. 사친궁에는 경우궁(景祐宮), 선희궁(宣禧宮), 순화궁(順和宮), 연우궁(延祐宮), 저경궁(儲慶宮) 등이 있었다. 방(房)에는 후궁방과 왕자·대군방, 공주·옹주방이 있었다. 이외에 국왕의 재정 기관인 내수사(內需司)도 있었다.

궁방에는 생시의 생활과 사후의 제사를 위해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를 궁방전(宮房田)이라고 하였다. 궁방전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전기에도 내수사는 방대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외의 다른 궁방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후궁이나 왕자, 공주 등 왕실의 가족에게는 각자의 품계(品階)에 따라 다른 관료와 마찬가지로 과전(科田)이 주어졌을 뿐이다. 과전은 주어진 토지에서 전세(田稅)를 걷는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는 토지로 소유지는 아니었다. 곧 궁방에서는 매년 주어진 과전에서 전세를 걷어 경비로 충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과전 체제가 붕괴한 가운데 궁방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어전(魚箭), 염분(鹽盆), 시지(柴地) 등과 함께 진황지(陳荒地)를 하사하여 개간하게 하고 면세의 혜택을 주었다.

각 궁방에서는 진황지를 개간한 외에도 새로 토지를 매득하기도 하였으며, 개인들이 면세의 혜택을 이용하여 토지를 투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궁방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면세지가 급증하였다. 또 당초 주인이 없는 진황지를 궁방에 절수(折受)하였으나 주인이 있는 토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궁방과 개인간의 소유권 분쟁도 빈발하였다.

이 때문에 궁방전의 면세지 규모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현종 4년(1663)에는 대군·공주는 4백결, 군과 옹주는 250결로 그 규모를 제한하였다. 또 숙종대에는 궁방을 신설할 때는 토지를 절수하는 것을 폐지하고 값을 주어 토지를 매득하게 하였다. 이어 영조대에는 면세결의 규모를 다시 조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속대전』의 궁방전 규모

구분	토지결수
사궁(四宮)	1000결
대왕사친궁	대왕 재위시 1000결 - 대왕 사후 500결
세자사친궁	세자 재위시 800결 - 세자 사후 300결
후궁	생존시 800결 - 사후 200결
대군·공주	생존시 850결 - 사후 250결
왕자·옹주	생존시 800결 - 사후 200결

각 궁방의 토지는 절수나 매득을 통해 소유권을 가진 토지와 수세권을 절수받아 세금을 걷는 토지가 있었다. 전자를 '영작궁둔(永作宮屯)' 후자를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라고 하였

다. 매년 소유지인 영작궁둔에서는 1결에 조 200두, 민결면세지에서는 1결에 미 23두를 걷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궁방전의 면세 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각 궁방에서 소유한 토지는 세금을 내는 출세지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지가 구분되게 되었다. 이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급하는 무토면세지(無土免稅地)도 있었다. 따라서 궁방전은 소유지인 영작궁둔 중 세금을 내는 토지와 내지 않는 토지, 민결에서 세금을 걷는 민결면세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급하는 무토면세지 등 네 종류가 존재하게 되었다.
양안 상에는 수세지가 특정되지 않은 무토면세를 제외한 세 종류가 등재되었는데, 숙종대 경자양전 당시에는 소유지와 수세지, 면세지와 출세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① 민결면세지 : '궁방면세 본주성명(宮房免稅 本主姓名)'
'시집인성명(時執人姓名 宮家免稅)'
② 영작궁둔 면세지 : '궁방면세(宮房免稅)'
③ 영작궁둔 출세지 : '궁노명(宮奴名)'

이에 따라 궁방 외에 주인이 따로 있는 민결면세지는 주인의 성명을 기록하고 궁방의 면세지라는 점을 추가로 기재하고, 궁방 소유지에는 궁방명이나 궁노의 이름을 기재하고 면세지에는 면세 사실을 함께 기재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경자양안 상에서도 궁방전은 주인기재란에 궁방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궁방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재 형식은 당초의 규정과 달리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면세 여부와 소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① 전주 : 주 명례궁(明禮宮) 면세(免稅) 작(作) 인명 영작(永作)
의성 : 주(主) 내수사(內需司) * 사표 내수사답(內需司畓)
② 순천 : 왕자궁둔면세(王子宮屯免稅) 인명 * 사표 본주명
능주 : 인명 내위(內位) * 사표 본주명
순천 : 인명 내사(內司) * 사표 본주명
③ 담양 : 영빈방(寧嬪房) 인명 * 사표 궁(宮)
화순 : 내수사(內需司) 시(時) 인명 * 사표 내수사(內需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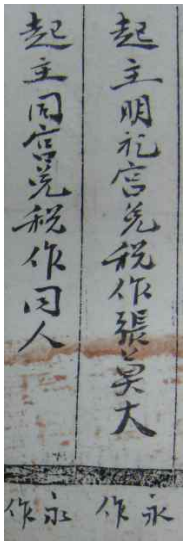

<그림 11>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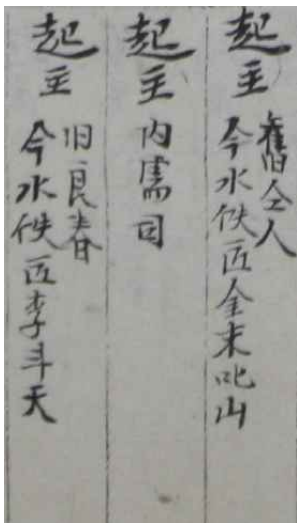

<그림 12> 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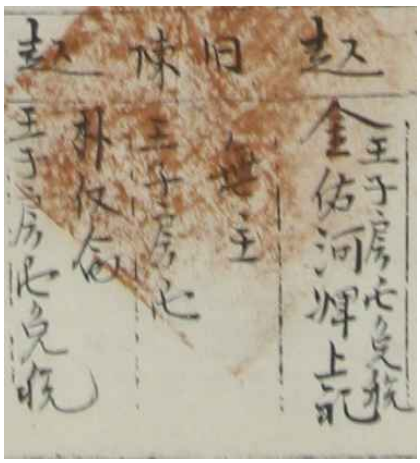

<그림 13> 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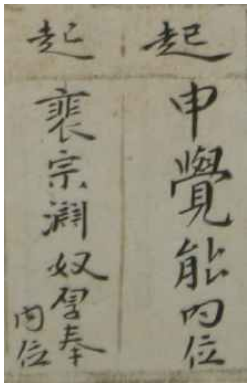

<그림 14> 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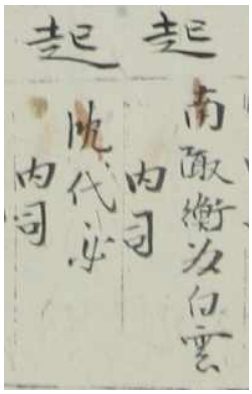

<그림 15> 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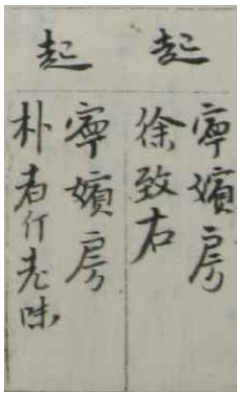

<그림 16> 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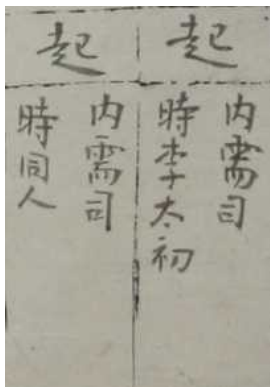

<그림 17> 화순

첫 번째는 궁방의 소유지인 영작 궁둔 중 면세지인 경우로, 당초 '궁방면세(宮房免稅)'로 기재하도록 한 경우다. 전주의 경우 '명례궁면세'라고 기재한 다음 작인(作人)의 이름을 밝히고 '영작(永作)'이라고 현록하여 명례궁의 영작궁둔으로 면세를 받는 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비해 의성의 경우 궁방명인 '내수사(內需司)'만 기재하였다. 당시 내수사 전답은 모두 면세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내수사의 영작궁둔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결면세지로 당초 궁방의 면세지임을 밝히고 주인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 경우다. 순천의 왕자궁 전답은 이를 그대로 따라 '왕자궁둔면세'와 주인의 이름을 병기하였다. 이로써 민결면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능주와 순천의 내수사 전답은 인명과 궁방명인 '내수사'만 병기하고 면세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인명을 먼저 밝힌 점이나 이웃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사표(四標)에 이 토지의 주인이 인명으로 기재되어 역시 민결면세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별도의 내수사양안을 통해서도 민결면세지라는 것이 확인된다.

마지막은 궁방명과 인명을 병기하고 이웃한 토지의 사표에는 궁방전으로 기재된 경우다.

모두 궁방명을 먼저 기재하였으나 담양의 영빈방 토지는 인명만 기재하고 화순의 내수사 토지는 '시(時) 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민결면세지에만 주인명을 병기하도록 한 당초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민결면세지로 파악되지만 이웃한 토지의 사표에 궁방이 주인으로 기록된 점이나 전주의 명례궁 영작궁둔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영작궁둔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 궁방전에는 각기 다른 성격의 토지들이 섞여 있다. 이러한 특성은 궁방의 양안 작성에도 영향을 미쳐 궁방양안은 주인 기재란이 매우 다기한 경향을 보인다.

2) 궁방의 양안 등출

각 궁방에서는 각지에 분포한 궁방전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 소재지의 군현 양안에서 궁방전의 필지 정보를 등출하여 별도의 책자를 작성하였다. 이를 '궁방양안'이라고도 부른다.
지방관은 해당 궁방의 요청이 있을 때 양안에 기초하여 궁방의 소유지를 추출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책으로 작성하여 중앙에 상송하였다. 철종 12년(1861) 육상궁(毓祥宮)에서 니생처(泥生處)의 처리 문제로 충청감사에게 보낸 관문을 보면 영리(營吏)와 읍리(邑吏), 궁감(宮監)이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후 해당 지역의 측량 척수, 사표 등을 현록하여 양안을 만들어 궁감에게 출급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등서본 1건을 해당 군현에 유치하여 토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궁방양안의 작성자[발급자]는 지방관이다. 때로는 내수사에서 타량관(打量官)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는 제한적이다. 궁방양안에는 모두 해당 군현의 수령이 수결을 하며 본문에는 관인을 찍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출 양안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양안으로 일종의 깃기(衿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궁방에서 양안을 등출하여 별도의 궁방양안을 작성하는 경우는 우선 토지를 새로 획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국왕이 토지를 하사한 사여(賜與)·사패(賜牌), 절수(折受)를 받거나 새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다른 궁방이나 아문에서 이속을 받은 경우, 자손이 없는 노비의 전답을 이속받거나 축통(築筒)·축언(築堰) 등으로 토지를 개간한 경우 등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서명을 통해 그 사유를 가늠할 수 있다.
한 예로 『건륭9년 2월 일 전라도용안현 북면대 명선공주방 매득답 타량어람성책(乾隆九年二月日全羅道龍安縣北面垈明善公主房買得畓打量御覽成冊)』이라는 책은 영조 20년(1744) 전라도 용안현 북면대에 소재한 명선공주방의 매득답을 조사하여 기록한 양안이다. 대부분의 궁방양안에는 이처럼 토지의 소재지와 궁방명, 토지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토지의 유래를 밝히는 것은 소유의 적법성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새로 量田을 시행한 경우다. 양전의 시행으로 자호, 지번, 사표 등 토지를 파악하는 정보가 달라지면 이에 맞추어 소유지나 수세지를 초출한 양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경자양전 이후에 양안을 새로 등출한 경우들이 상당수 보인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 영조대에 진전을 조사하는 사진양전(査陳量田)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짝하여 각기 새로

운 양안을 작성한 것도 볼 수 있다.
한 예로 보성에 위치한 내수사 전답에 대해서는 경자양전 직후에 『전라좌도보성군기해양전내수사위전답어람성책(全羅左道寶城郡己亥量田內需司位田畓御覽成冊)』(1720), 사진양전 직후에 『전라도보성군소재내수사전답고원개타량성책(全羅道寶城郡所在內需司田畓庫員改打量成冊)』(1740), 『전라도보성군내수사전답타량성책(全羅道寶城郡內需司田畓打量成冊)』(1757)이 연이어 작성되었다.
한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양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는 정조 7년(1783) 궁방전의 진기 여부를 조사하여 양안을 작성한 경우다. 현전하는 정조대 궁방양안 88건 중 51건이 이해에 작성되었다.
이렇게 처음 작성된 양안은 시간의 흐름과 궁방의 필요에 따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현전하는 궁방양안을 보면 동일 토지에 대해 복수의 양안이 존재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다만 궁방에 따라 양안 작성 경향은 차이가 있다. 내수사의 경우 양전과 정조 7년의 조사에 의해 작성된 양안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여타 궁방의 경우에는 첫 번째 토지를 획득한 경우의 양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궁방·아문 양안의 형식

양안을 등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행심책이나 궁방양안의 성격은 동일하다. 하지만 행심책은 부세 운영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양안을 그대로 등서하여 기본적인 기재 사항은 군현 양안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궁방양안 등은 소유지나 수세지만을 추출하여 기재하였고, 필요에 따라 기재 양식이나 내용에도 변동이 있었다.
숙종대 작성된 경자양안을 보면 양안의 기재형식은 자호(字號), 지번, 양전방향(犯向), 토지등급(田品), 토지모양(田形), 지목(地目), 측량척수(長廣尺數),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 진기여부, 주인명 순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주명의 기재 방식에서 나타난다. 경상도는 '주(主)'라는 호칭 아래에 구주(舊主)와 금주(今主)를 나누어 기재하고 금주의 경우 직역을 부기하였다. 반면 전라좌도는 '주(主)'라는 명칭 아래에 인명을 기재하였으며, 전라우도는 인명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파악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방양안의 기재 양식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양안의 기재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양안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등서하거나 일부를 생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토지를 사정하여 궁방양안을 등출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주나 작인명을 파악하여 기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재란의 기재 형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궁방에서 수세하는 민결면세지에서는 양안 상의 주명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주(主)' 대신에 '시(時)'나 '양(量)'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으며, 궁방의 소유지인 영작궁둔의 경우 주명 대신에 '작인(作人)', '작자(作者)', '시(時)' 등으로 작인명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즉, 궁방양

안의 기재 내용은 대개 일반 양안에서 등서하거나 변동 사항을 현록한 형태지만 주명 기재는 변형된 경우가 많다.
먼저 전라도 능주목 소재 내수사 민결면세지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720(경자양안) : 起 金必先 內位 * 사표 인명
1740(내수사양안) : 時 金必先
1745(내수사양안) : 金必先
1748(사진양안) : 金必先
1759(사진양안) : 量 인명 時 인명 * 內需司 전답 없음
1783(사진양안) : 時 件連

우선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경자양안에는 본주인 김필선과 내위(內位)를 나란히 기록하였으며, 이웃한 필지의 사표는 본주인 필선이다. 그 후에 작성된 내수사 양안에서는 '내위'라는 말은 생략하고 '시(時) 김필선'(1740), '김필선'(1745)으로 기록하였다. 시(時)는 새로 양안을 작성하던 시점의 경작자나 소유주를 가리킨다. 이어 영조 24년(1748)에 작성된 사진양안에서도 '김필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이 토지가 내위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는다.
영조 35년(1759)의 사진양안은 전품이 강등된 진전만을 기록한 것으로 김필선의 필지는 없다. 여기서는 '양(量) 인명 시(時) 인명'으로 주인란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양안 상의 주인명과 조사 당시의 주인명을 병기한 것으로 '시(時)'는 경자양전과 구분되는 현재의 주인을 가리킨다. 그 후 정조 7년(1783) 양안에서는 '김필선'의 이름은 사라지고 '시(時) 건련(件連)'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의 주인만 올라 있다. 만약 이 필지가 앞의 사진양안에 올라 있었다면 '양(量) 김필선 시(時) 건련'으로 올라 있었을 것이다.
이상 김필선의 사례를 보면 경자양안 상의 본주가 내수사 양안에서는 '시(時) 인명'이나 '인명'만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는 것, 또 양안 등출 당시의 소유주를 파악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궁방양안에는 작성 시기에 따라 주인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주인 이름을 파악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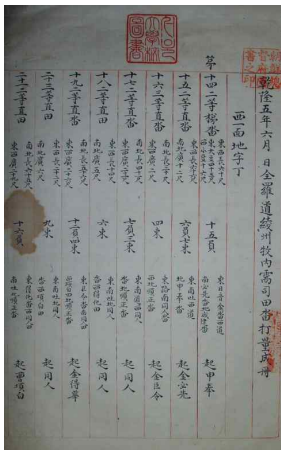

<그림 18> 영조 16년(1740) 『전라도능주목내수사전답타량성책(全羅道綾州牧內需司田畓打量成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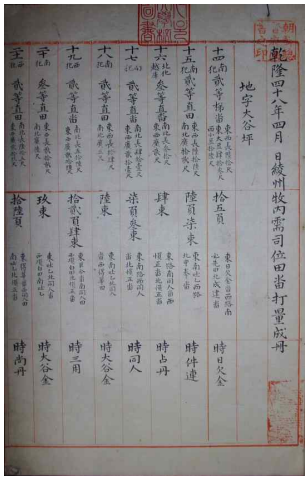

<그림 19> 정조 7년(1783)『능주목내수사위전답타량성책(綾州牧內需司位田畓打量成冊)』

<그림 20> 영조 4년(1728)『전라도함열현소재정빈방매득전답자호고원부수타량성책(全羅道咸悅縣所在靖嬪房買得田畓字號庫員負數打量成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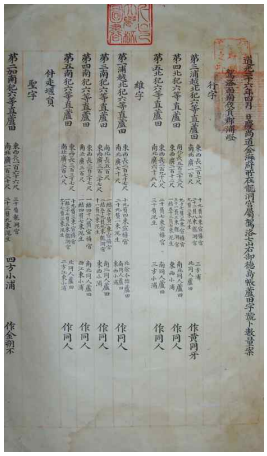

<그림 21> 헌종12년(1846)『경상도김해부소재용동궁속가락칠산우부덕도장노전자호복수량안(慶尙道金海府所在龍洞宮屬駕洛七山右部德島帳蘆田字號卜數量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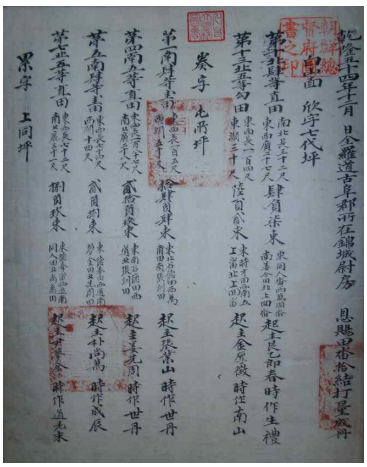

<그림 22> 정조 13년(1789)『전라도고부군소재금성위방은사전답습결타량성책(全羅道古阜郡所在錦城尉房恩賜田畓拾結打量成冊』

궁방의 소유지인 영작궁둔의 경우에는 작인을 기재한 경우가 많다. 영조 4년(1728) 전라도 함열현에 위치한 정빈방(靖嬪房)의 매득전답에 대한 양안에는 주인 기재란에 '주(主) 정빈방(靖嬪房), 작(作) 인명'이라고 하여 작인의 이름을 병기하였다. 한편 헌종 12년(1846) 경상도 김해부에 위치한 용동궁 노전의 양안에는 '작 인명'의 형태로 작인의 이름만 기재

하였다.

궁방의 소유지인 경우에도 양안 상의 주인과 현재의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양안 상의 주인명과 현재의 작인명을 아울러 병기하기도 하였다. 정조 13년(1789) 국왕이 금성위(錦城尉)에게 하사한 토지의 양안에는 '주(主) 인명, 시작(時作) 인명'의 형태로 양안 상의 주인과 작인의 이름을 병기하였다. 또 정조 17년(1793) 경기도 양주목 소재 명례궁(明禮宮) 토지의 양안에는 '양주(量主) 인명, 시작(時作) 인명'의 형태로 양안 상의 주인 이름과 작인의 이름을 병기하였다.

그런데, 궁방양안에서는 많은 경우 소유자이거나 수세자인 궁방의 이름을 생략하고 작인이나 소유자의 이름만 기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인란에 기재된 이름만으로는 영작궁둔지의 작인인지 민결면세지의 주인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時) 인명'으로만 기재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궁방양안에서 주인과 작인을 파악할 때에는 토지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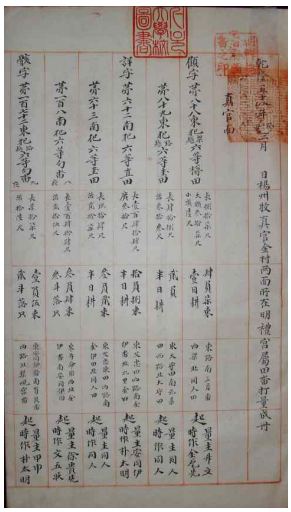

<그림 23> 정조 17년(1793) 『양주목진관금촌량면소재명례궁속전답타량성책(楊州牧眞官金村兩面所在明禮宮屬田畓打量成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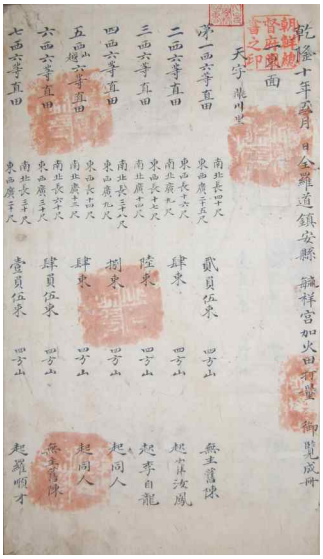

<그림 24> 영조21년(1745) 『전라도진안현육상궁가화전타량어람성책(全羅道鎭安縣毓祥宮加火田打量御覽成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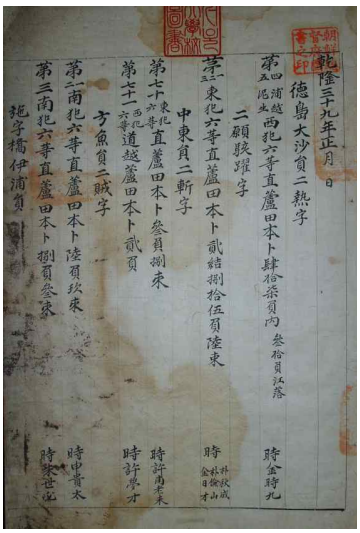

<그림 25> 영조 50년(1774)『경상도김해부소재의열궁소속노전목복성책(慶尙道金海府所在義烈宮所屬蘆田木卜成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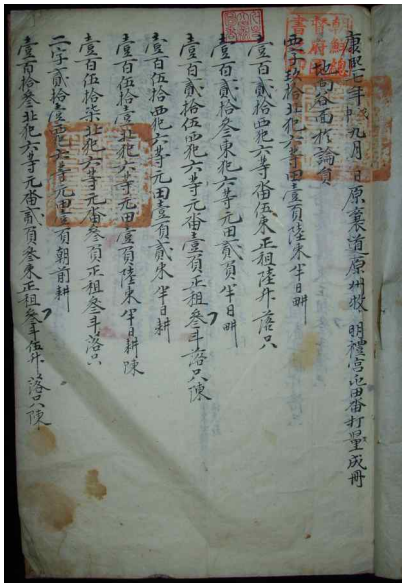

<그림 26> 현종 9년(1668)『원양도원주목명례궁둔전답타량성책(原襄道原州牧明禮宮屯田畓打量成冊)』

<그림 27> 현종 12년(1671)『창원부용동궁둔전답재진물고작자석수현록성책(昌原府龍洞宮屯田畓災陳物故作者石數縣錄成冊)』

궁방양안에는 일찍부터 양안에서 기재되지 않지만 민간에서 활용된 마지기 수와 배미수를 추가로 기재한 경우도 많다. 현종 9년(1668) 명례궁 양안인『원양도원주목명례궁둔전답타량성책(原襄道原州牧明禮宮屯田畓打量成冊)』에서 이미 두락수가 나타나는데, 이 양안에는 장광척수나 사표, 주인 명 등의 정보는 생략한 대신 논은 마지기(斗落只)로, 밭은 하루갈이(日耕)로 마지기 수를 기재하였다.

배미수도 현종 11년(1670)『경상도고성현명례궁속포도도전답개타량성책(慶尙道固城縣明禮宮屬葡萄島田畓改打量成冊)』, 현종 12년(1671)『창원부용동궁둔전답재진물고작자석수현록성책(昌原府龍洞宮屯田畓災陳物故作者石數縣錄成冊)』에서 이미 등장한다. 창원의 용동궁 전답 양안을 보면 역시 장광척수나 사표 등은 생략한 대신 토지 모양을 기록한 전형(田形)의 아래에 '◯야(夜)'의 형식으로 배미수를 기록하였다. 배미수는 양안에 따라 '야미(夜味)', '경(庚)'으로도 기재하였다.

궁방양안에서 일찍부터 일반양안에 없는 작인의 이름이나 마지기, 야미수 등이 등장하는 것은 양안의 등출이 단순한 등서가 아니라 등출 당시의 농지 경영 양상까지도 포괄한 등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안의 등출은 경영 상태의 확인이라는 기능도 지니는 것이었다.

3. 토지 소유주의 활용

1) 양안의 등서와 토지 경영

개인의 소유지를 초록한 문서는 관에서 공증을 받아 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경우에서부터 사적으로 작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기재 양식도 일반양안과 동일한 경우에서부터 '집앞논(家前畓)', '돌쇠논(乭金畓)'과 같이 소유주가 통상적으로 부르던 토지의 명칭을 기준으로 정리한 전답안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개인 전답안을 모두 양안의 범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우선 관(官)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등출 양안이 작성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양안'은 양안에서 특정인의 소유지만을 등출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것이다. 개인이 양안을 등출하는 경우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를 관을 통해 확인받는 행위다. 아래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통해 개인이 양안을 등출하는 사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순조 33년(1833) 장석원(張錫源)이 서판서댁(徐判書宅)에 노전(蘆田)을 방매한 매매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 "도광 13년 계사년 정월 15일 … (노전을) 위의 댁에 영영방매하는데 본문기는 전답문서가 함께 붙어 있어서 허급(許給)할 수 없으므로 위 노전의 자호복수성책(字號卜數成冊)을 아울러 영원히 허상(許上)하니 후일에 잡담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 변정할 일"(道光十三年癸巳正月十五日 … 右宅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田畓文書幷付 故不得許給 右蘆田字號卜數成冊 竝永爲許上 日後有雜談之弊 狀此(文記)卞正事)

이 문서는 노전의 본문기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전의 자호복수성책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와 함께 방매자인 장석원이 같은 해 정월에 작성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계사정월일김해부가락장남벌원노전자호복수성책(癸巳正月日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이 남아 있다. 즉 장석원은 관의 공증을 받아 노전이 자신의 소유지임을 증빙하는 자호복수성책을 작성하여 매득자에게 인도한 것이다. 이 때의 자호복수성책에는 자호, 지번, 결부수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관인이 찍혀 있다.

그런데, 두달여 후인 3월에도 동일한 노전의 자호복수성책을 관에서 발급받은『김해부가락장남벌원노전자호복수성책(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이 전한다. 이 책자는 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형태이며 주인명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 책자는 노전을 매입한 서판서가에서 양안에서 매입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출한 것이다. 이 사례는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양안을 등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토지를 매득하면서 매득지를 타량하고 양안을 등출한 사례로는 철종 13년(1862) 金判敦寧宅에서 평안도 가산의 매득 언답을 타량하고 등출한『평안도가산남서면경소재금판돈녕댁매득언답부양성책(平安道嘉山南西面境所在金判敦寧宅買得堰畓復量成冊)』 등 다수가 전한다.

『경국대전』에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100일 이내에 관의 입안(立案)을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노비와 달리 토지매매를 입안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토지 매매에 입안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을 보면 매매 토지에

대한 양안을 등출하여 관의 공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입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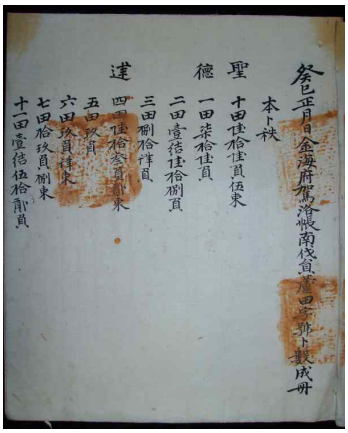

<그림 28> 순조 33년(1833)『계사정월일김해부가락장남벌원노전자호복수성책(癸巳正月日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

<그림 29> 순조 33년(1833)『김해부가락장남벌원노전자호복수성책(金海府駕洛帳南伐員蘆田字號卜數成冊)』

한편 반드시 새로 매득한 전답이 아니더라도 양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경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타량을 시행하고 양안을 등출한 경우도 있다. 무안박씨 가(務安朴氏家)에서 등출한 개인양안에는 다음과 같은 완문(完文)이 수록되어 있다.

『희암전안(喜庵田案)』(1873)
도호부가 상고하는 일. 이번에 희암재(喜庵齋)의 결부를 모으니 해가 오래되어 착란되어 곳곳을 타량하여 사실대로 바로 잡고 한결같이 양안을 따라 성첩(成帖)하여 주어 후일 빙고하는 신표로 삼을 일

『남초호석봉전안(南初戶石奉田案)』(1782)
도호부가 상고하는 일
남초 호(戶) 석봉(石奉)의 전결은 연대가 오래되어 착란되었기 때문에 앙소한 대로 곳곳을 타량하였으나 복자(覆字)·기자(器字)는 더욱 산란되고 계통이 없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민원에 따라 개량한다는 법의(法意)로 시경(時耕)에 준하여 개량하여 바로 잡은 후 등수(等數)와 자호(字號)는 대장(大帳)에 의거하여 시행하오나 척수(尺數)와 복수(卜數)는 다른 곳이 없지 않으므로 이제 전안(田案)을 수정하여 완문(完文)을 성급하니 후일에 빙고하는 신표로 삼을 일

첫 번째『희암전안(喜庵田案)』에 수록된 완문은 청원에 따라 타량을 시행하여 경계를 바로 잡고 양안을 등서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남초호석봉전안(南初戶石奉

田案)』의 경우는 타량을 시행하여 경계를 바로 잡았으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시의 경작 상태[時耕]에 의거하여 결부수를 조정하고 전안을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로 미루어 보면 토지를 사정(査正)할 때에는 우선 양안에 기초하여 경계를 바로 잡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전안(田案)을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등출하여 청원인에게 증빙자료로서 발급해 주었다. 이를 통해 양안이 토지의 경계를 공증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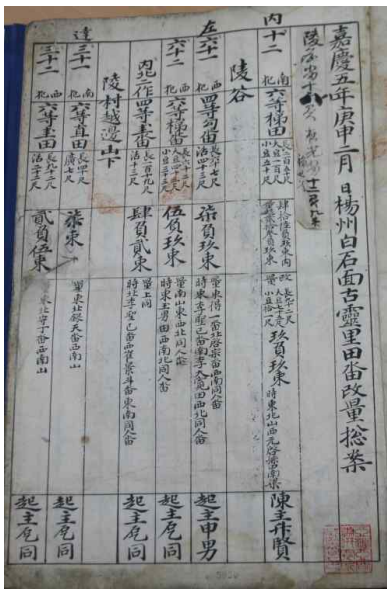

<그림 30> 『양주백석면고령리전답개량총안(楊州白石面古靈里田畓改量摠案)』

전답의 사정(査正)을 위한 타량(打量)한 양상은 『양주백석면고령리전답개량총안(楊州白石面古靈里田畓改量摠案)』(18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량 전후의 상황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자호, 지번, 전품, 주인 이름 등은 변동없이 그대로 기재하고, 토지의 경계를 반영하는 척수(尺數),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의 경우에만 양(量)과 시(時)로 나누어 그 변동 내역을 기재하였다. 이 때의 '개량(改量)'은 전면적인 양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査正)'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순조 29년(1829) 이진사댁 노 복삼(福三)이 상전이 매득한 토지를 척량하여 경계를 바로 잡아 주기를 청한 소지가 있다.

> 고읍면 옥천리에 사는 이진사 댁 노 복삼(福三) 발괄
> 위 사람이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댁에서 새로 매득한 땅이 동종면 남면 서시면 등에 있습니다만 문권이 오래되고 시작(時作)이 현란하여 혹 복수(卜數)가 혼잡한 것도 있고 혹 경계가 혼잡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전에 정소하여 특별히 측량하라는 제음을 받았습니다. 곳곳을 바로 잡은 후에 전안(田案)을 등출해 주실 것을 감히 앙소(仰訴)하오니 상량하신 후 특별히 성첩(成貼)하여 빙고(憑考)하는 자료로 삼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양근군전안(楊根郡田案)』, 고려대학교 소장)

복삼의 청원 이유는 문권이 오래되어 시작(時作)과 복수(卜數), 경계가 혼란된 곳이 양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시 척량하여 바로 잡은 후에 양안을 등출해 달라는 것이다.

그 결과로 등출받은 『양근군전안』 역시 관인이 찍혀 있으며, 양안의 형식을 그대로 등서한 형태로 주인 이름까지 기재된 곳도 있다. 주인이름은 당시의 주인인 이진사가 아니라 양안에 등재된 양전 당시의 주인으로 이 양안이 군현에 보관된 양안을 그대로 등서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진사댁에서 이 양안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관리하여 양안의 중간에서는 행심책과 같이 띠지를 붙여 마지기 수와 작인 이름, 소작료인 도조(賭租) 등을 기재해 두었다.

개인양안의 대다수는 등출 동기가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서명이 사정책(査正冊), 타량성책(打量成冊), 답험양안(踏驗量案) 등처럼 조사 과정을 전제하고 있거나 척량색리(尺量色吏)나 수정색리(修正色吏)의 명단이 기재된 경우는 대개 위와 같은 사정을 거친 후 양안을 등출한 경우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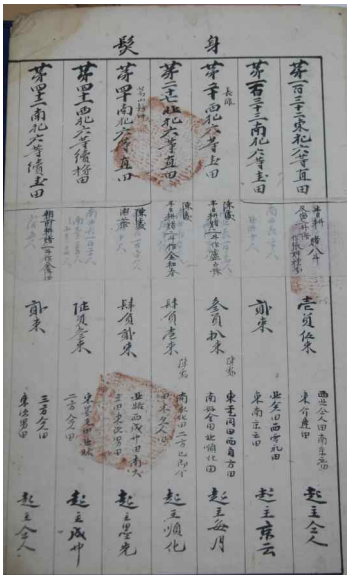

<그림 31> 순조 29년(1829)『양근군전안(楊根郡田案)』, 고려대학교 소장

보다 많은 경우는『양주상하도전답양안(楊州上下道田畓量案)』과 같이 서명에 토지의 소재지만 표기하거나『노길봉전안등서책(奴吉奉田案謄書冊)』이나 『지평읍안창금교매택전안(砥平邑安昌金校埋宅田案)』처럼 양안에 등재된 이름인 호명(戶名)이나 소유자의 택호(宅號)만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양안을 등출한 목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유 토지의 양안을 등출한 것은 그 자체로서 소유지의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양안 상의 소유주명은 호명(戶名)으로 대록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양안의 등출도 많은 경우 호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명도 관리해야 했다. 호명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경자양안을 등서한 영해 무안박씨가의『남이도호산립전안(南二度戶山立田案)』이 참조가 된다.

『남이도호산립전안』은 무안박씨가의 소유지를 등서한 등출 양안에 상지(裳紙)를 붙여 산립(山立)이라는 호명을 기재한 것이다. 산립이 호명으로 기재된 필지는 양안의 주인 이름이 '박정걸노산립(朴廷杰奴山立)'이나 '산립(山立)'으로 되어 있다. 즉 호명인 '산립'은 경자양안 상의 주인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여주이씨 가의『전답도록』은 경자양안을 그대로 등서한 것이다. 이 책의 주인 이름은 모두 '세운(世云)'으로 기재되어 여주이씨 가에서도 단일한 호명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단일한 호명을 사용한 사례는 고창·고부의 함양박씨가에서 전불동(殿佛洞) 소재 묘위전 양안의 주명을 모두 '전불(殿佛)'로 등재한 사례가 있다.

『양주백석면고령리전답개량총안(楊州白石面古靈里田畓改量摠案)』(1800)은 양전 후에 토지의 경계를 새로 파악하여 양안 상의 사표와 개량 당시의 사표를 함께 기재한 양안이다. 주인 이름은 원래의 양안과 동일하며 이웃한 토지의 사표에도 동일한 인명이 등장한다. 그런데, 개량 후의 사표에도 양안 상의 주명(主名)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승자(承字) 28번 밭의 개량 후 사표에 등장하는 '수정(守丁)'은 이웃한 토지인 29번 답의 양안 상의 주명이다. 즉, 29번 답의 주인은 양전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양안 상의 주인 이름을 그대로 호명(戶名)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양안에는 '흔남호(欣男戶)', '억산호(億山戶)'라고 기재한 첨지가 붙어 있는데, 흔남과 억산은 모두 양안상의 주명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양전 당시의 호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용궁현 경자양안의 주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안에 실소유주가 아닌 호명(戶名)을 기재한 토지 주인 927명 중 한 종류의 호명을 사용한 경우가 722명(77.9%), 두종류 이상의 호명을 사용한 경우가 205명(22.1%)였다. 즉, 토지 주인들의 다수는 양안 상에 단일한 호명(戶名)을 사용하여 소유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광무양전 당시 온양군 일북면 양안에서는 호명을 사용한 83명 가운데 74명(89.2%)가 단일한 호명을 사용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한 호명을 쓰는 경향은 강화되었다.
이처럼 양안 상의 주명을 장기간에 걸쳐 호명으로 사용한 것은 호명의 안정성 때문이었다. 즉, 양전이 자주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안 상의 호명을 사용함으로써 양안에서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호명은 재산과 더불어 대대로 상속되었다. 그러나 매매나 상속 등을 통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런 경우 토지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호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는 『예산현우가산면양안(禮山縣于可山面量案)』(1840)에서 보인다. 이 양안은 기존의 양안을 등서한 형태인데, 주명은 구주(舊主)와 금주(今主)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이중 구주는 이웃한 토지의 사표에 등장하는 인명으로 양안 상의 주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금주는 모두 '복득(卜得)'으로 되어 있어서 호명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명이 다양한 필지들을 단일한 호명(戶名)으로 통일시켜 새로 양안을 등출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 이처럼 호명의 변경을 공증받는 것도 토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2) 양안과 사문서(私文書)

조선시대 양전과 양안을 통해 파악된 토지의 정보는 관의 공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아래에서는 농업 경영이나 토지의 매매, 상속 등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양안 상의 토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 경영을 관리하고 부세를 수납하는 등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를 흔히 '전답안(田畓案)'이라고 부른다. 전답안은 개인의 명명에 따라 '전안(田案)', '전답문서(田畓文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 졌다.
전답안의 기재 형식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양안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관에서 등출한 양안을 다시 등서하여 활용한 것이다. 한 예로 『각면양안(各面量案)』을 들 수 있다.
이 양안은 고종 25년(1888)에 작성하기 시작한 소유자 미상의 강화부 소재 토지의 전답안이다. 토지 소재지는 강화도 내 부내면, 장령면, 선원면, 인정면, 불은면 등 5개면에 걸쳐 있다. 개별 필지의 정보는 양안과 동일하게 자호, 지번, 양전방향, 전품, 전형, 지목, 배미수, 장광척수, 사표, 결부수, 주인과 작인명 순으로 기재하였다. 야미수는 논의 경우에만 기재하였다. 본 양안은 처음 작성 후 다년간에 걸쳐 활용하면서 내용을 추기하거나 첨지 붙여 사용하였다. 첨지에는 주로 작인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작인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 『각면양안(各面量案)』 중앙대 소장

『각가전안(各家田案)』 은 경상도 영천군의 한 양반가에서 사용하던 전안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서부면, 동촌면, 동부면, 상리면, 순흥 등에 걸쳐 있다. 본 전답안의 기재 양식도 양안과 동일하다. 경자양안을 등서한 듯 구주(舊主)와 금주(今主)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토지 소유주가 파악한 토지 정보가 필지별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의 위치나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호칭, 마지기수, 매득전답의 경우 본주인과 매득한 값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전답안은 양안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토지의 정보와 취득 경위를 추록하여 토지를 관리하였음을 보여준다.

개인 전답안은 많은 경우 양안의 수록 정보를 간략화하여 기록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 한 예가 『전답문서(田畓文書)』다. 이 문서는 전체적으로 양안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지번을 생략하는 한편 양안 상에서 파악되지 않은 마지기수와 배미수를 우선적으로 기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마지기나 배미 수를 파악하여 토지 관리에 활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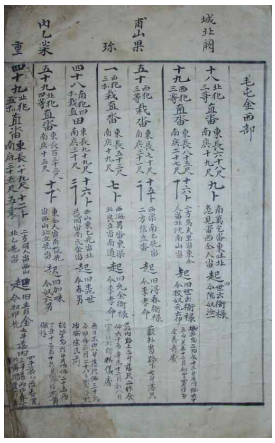

<그림 33> 『각가전안(各家田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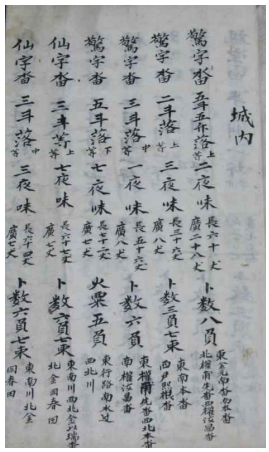

<그림 34> 『전답문서(田畓文書)』 고려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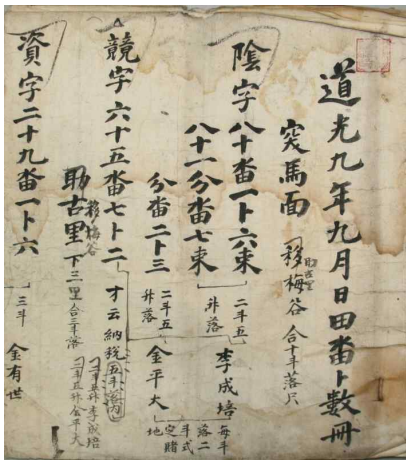

<그림 35> 『전답복수책(田畓卜數冊)』 국민대 소장

한편 『전답복수책(田畓卜數冊)』은 양안 상의 필지 정보 대부분을 생략하고 자호와 지번, 결부수 정보만을 기록하였다. 대신 그 아래에 농업 경영 정보를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첫 번째 필지인 음자(陰字) 80번과 81번 논의 경우를 보면 결부수 아래에 각각 2말 5되지기라는 마지기 수와 작인 이름, 그리고 매년 2말씩의 도지(賭地)를 걷는다는 기록이 있다. 또 경자(競字) 65번 논의 결부수 아래에는 '재운(才云) 납세(納稅)'라고 하여 재운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전답안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양안의 일부 정보만 활용하여 농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문서목록(文書目錄)』은 토지를 관리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 자료는 서명으로 보아 분재기나 토지매매명문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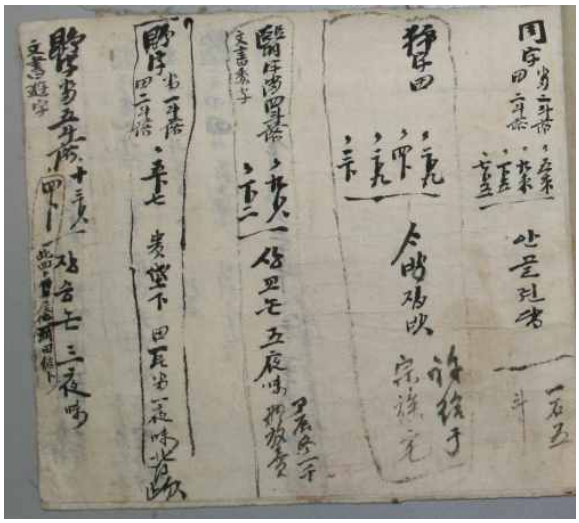

<그림 36>『문서목록(文書目錄)』국민대 소장

본문의 내용은 필지별로 자호, 지목, 마지기수, 결부수, 토지 명칭, 야미수 순서로 기록하였다. 양안에서 개별 필지의 주요 정보인 지번은 생략하였는데, 대신 결부수 아래에 '안골전답', 'ᄉ방집밧'과 같이 소유주가 파악하는 토지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호와 지번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유주가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집안 내에서 관행적으로 일컫는 명칭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지번보다 관행적인 토지의 명칭을 선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도 마지기 수와 결부수를 병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는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마지기 수는 파종량을 가리키는 단위로써 파종량과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단위다. 이에 비해 결부수는 국가에 부담해야 할 조세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다. 소유주는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두가지 방식을 병기함으로써 농업 경영과 조세 납부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에는 토지의 방매나 이전에 대한 기록도 다수 등장한다. 예자(翳字) 논의 경우를 보면 맨 아래에 '갑진년 겨울에 1000냥에 방매했다'는 기록이 있고, 필지 정보 전체가 선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 외에도 '종족댁(宗族宅)에 허급하였다'거나 '배탈(背頉)'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들이 보인다.

토지는 경제 생활의 기초로서 양반 가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동일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각처에 소장된 토지매매문기를 통해 토지의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토지매매문기는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 양이 방대하며, 한 집안에서 수백장의 토지매매문기를 소장한 사례들도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였으나 16세기 이래 토지매매가 일반화되어 점점 더 확대되었던 것이다.

토지매매문기에는 기본적인 정보로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을 기재하였다. 토지매매문기에서 토지 정보를 기재한 방식은 문서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매매문기에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기재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호와 지번을 기재하느

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적을 결부수로 기재하느냐 마지기로 기재하느냐 하는 차이다. 아래에서는 16세기 경주손씨가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도록 하자.

① 가정 5년 병술(1526, 중종 21) 2월 28일 충의위 손광서(孫光曙)에게 명문을 작성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호노(戶奴) 임손(林孫)의 이름으로 올라 있는 가경전답(加耕田畓)을 경작하고 있는데, 경상도 금산 땅의 전답은 먼 곳에 있어서 내왕하며 경작하기 어려우므로, **하로원(賀老員) 논 4부 4속, 밭 41복 2속, 밭 11복 3속, 밭 3복, 논 1복 3속, 내전(內田) 2복 4속, 제내원(堤內員)의 밭 11복 5속, 하로원의 밭 8복, 가전(加田) 3복 3속** 모두 아홉 곳에 모두 목면 1동을 값으로 쳐서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영구히 가지고 경작하되, 만일 (나의) 자손 중에 (이 논밭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면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이다.(『경주손씨고문서』 입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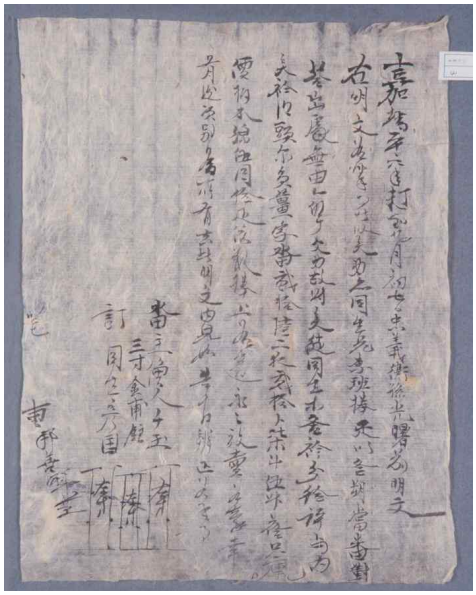

<그림 37> (『경주손씨고문서』 토지명문 41)

② 가정 5년 병술(1526, 중종 21) 2월 28일 충의위 손광서에게 명문을 작성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경작하던 경상도 금산 땅에 있는 논밭은 먼 곳에 있어서 내왕하며 경작하기 어려우므로 **하로원 집 앞과 뒤의 논 모두 15 마지기, 가입전(家入田) 모두 1일경 …** 등을 모두 목면 13동을 값으로 쳐서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영구히 가지고 경작하되, 만일 (나의) 자손 중에 (이 논밭과 가옥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거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이다.(『경주손씨고문서』 입안 3)

③ 가정 15년(1536, 중종 31) 병신 11월 20일 사노 옥석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하는 일은 먼 곳이라 경작하는 것이 어려워 조상전래의 정전원 百字 麻田 1두락지를 목면 22필 반으로 값을 매긴 것과 **유등원 제자(制字) 230 논 9복 8속**을 목면 12필로 값을 매긴 것을 숫자대로 받고 영영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 이 명문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경주손씨고문서』 토지문기 25)

④ 가정 26년(1547, 명종 2) 정미 윤9월 초 7일 충위의 손광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내가 형 李班의 奉足으로 겨울달 당번에 대답하여 비용을 낼 곳이 없어 부친 유고시 우리네 동생들에게 각기 몫으로 분급하여 허여 내용 중 내 몫으로 받은 **두이원 강자(薑字) 답 26 두 배미 20복 7두 5승락지**를 목면 5동 10필로 값을 매겨 수대로 받고 영영방매하니 행여 나중에 다른 일이 있거든 이 명문의 내용대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경주손씨고문서』 토지명문 41)

위에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기재한 방식은 모두 다르다. ① 문서에서는 들판명과 결부

수, ②번 문서에서는 들판명과 마지기와 일경 수를 기재하였다. 두 문서의 경우 각각 결부수와 마지기수를 기재하였다는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이 문서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땅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③번 문서는 양안의 형식을 따라 들판명, 자호, 지번, 결부수를 기재하였으며, ④번 문서에서는 양안의 필지 정보와 관행적인 면적 정보를 병기하여 들판명, 자호, 지번, 배미수, 결부 수, 마지기 수를 기재하였다. 이 경우 양안을 통해서도 매매 토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토지매매문기에 다양한 형식이 등장하는 것은 양안에서 파악하는 결부 수 외에 마지기 수도 사회적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결부 수는 당초 토지의 수확량을 기초로 산정한 면적이지만 반드시 토지의 생산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파종량이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 마지기나 일경 수를 토지의 면적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결부 수와 마지기 수를 함께 통용되었던 것이다.

①번과 ②번 문서에서 보듯 자호나 지번을 생략한 경우도 토지매매문기에는 다수 등장한다. 이는 어떤 토지를 누가 경작하는지 분명한 경우라면 경작권을 넘겨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도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에서 파악한 토지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토지 매매가 활발하지 않았던 조선초기로 올라갈수록 토지의 위치 정보를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며 소유주가 여러 차례에 소유주가 바뀌어 양안 상의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양안 상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매매문기에도 양안 상의 토지 정보와 사회 관행적인 토지정보를 병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④번문서처럼 들판명, 자호, 지번, 결부수, 마지기수를 병기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반면 ①번과 ②번 문서처럼 자호와 지번을 생략한 문서는 거의 사라진다. 즉, 토지매매에서도 양안의 정보가 토지를 파악하는 기본 정보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양안이 개인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가에서 양전을 실시하여 양안을 작성한 것은 수십년이나 100여년 사이에 한 두차례 뿐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소유자의 변동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탓이다. 당초 국가에서는 소유권의 변동을 증빙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매한 후 100일 이내에 관(官)에 소지를 올려 공증문서인 입안(立案)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6세기 이래 점차 실효를 상실하였다.

대신 민간에서는 토지를 매득한 사실을 증빙하는 토지매매문기, 곧 땅문서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토지를 방매할 때에는 새로 작성한 매매문기와 함께 자신이 땅을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문기를 넘겨주었다. 자신의 토지 매득과 구매자의 토지 매득을 증빙하는 문서를 넘겨 줌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매매 과정이 여러 차례 되풀이 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매매와 함께 넘겨 주어야 하는 이전의 토지매매문기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새로 토지를 매득하는 사람은 처음 그 토지가 매매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그 토지를 매득할 때까지 작성된 모든 토지문기를 소장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宮嶋博史, 1991,『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金建泰, 2004,『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金容燮, 1970,『朝鮮後期農業史研究』, Ⅰ 一潮閣

金容燮, 1971,『朝鮮後期農業史研究』, Ⅱ 一潮閣

李榮薰, 1988,『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최윤오, 2006,『조선후기 토지소유권의 발달과 지주제』혜안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혜안

2) 논문

宮嶋博史, 1996, 「量案における主の性格」『論集朝鮮近現代史 : 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東京 : 明石書店 참조.

김건태, 2001,「조선후기 농가의 농지 소유 현황과 그 추이」『역사학보』172, 역사학회 참조.

김건태, 2009,「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한국사연구』144, 한국사연구회

朴準成, 1984,「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韓國史論』11, 서울대 국사학과

박현순, 2008,「내수사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과 주기재 방식」『궁방전과 궁방양안』규장각학술발표회 자료집

박현순, 2010,「조선후기 量案의 작성과 활용」『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의 종합적 검토』규장각학술발표회 자료집

宋讚燮, 1985,「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韓國史論』12, 서울대 국사학과

염정섭, 2006,「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 관계」『동아시아근세사회의 비교』혜안

吳永敎, 2003,「조선후기 洞契의 구조와 운영-영월 요선계를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24, 조선시대사학회

吳仁澤, 1996,「17·18세기 量田事業 硏究」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오인택, 2000,「경자양전의 시행조직과 양안의 기재형식」『역사와 현실』38, 한국역사연구회

오인택, 2008,「조선후기의 양안과 토지문서」『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혜안

왕현종, 2001,「18세기 후반 양전의 변화와 시주의 성격 -충청도 회인현 사례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41, 한국역사연구회

이영훈, 1980,「조선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한국사연구』29, 한국사연구회

이영훈, 1995,「16세기말·17세기초 경상도·평안도의 행심책 二例」『고문서연구』7, 한국고문서학회

李榮薰, 1997,「量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정선남, 1990,「18, 19 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韓國史論』22, 서울대 국사학과 204~209쪽 참조
정승진, 1999,「『영광군서부면개량안』의 분석」『대동문화연구』3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최윤오, 2000,「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심책」『역사와 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최윤오, 2001,「조선후기 양안의 기능과 역할」『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대한제국기 토지조사

김종준

-목차-

1. 내장원의 '광무사검'과 '각도공토안'

1) '광무사검'이란?

'광무사검(光武査檢)'이란 대한제국기 황실재정기관인 내장원에서 시행한 각종 토지조사를 의미한다. 대개 국공유지가 조사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사유지로 주장되는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광무사검'은 광무양전지계사업과는 별개로 실시되었지만 한편으로 양전지계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고, 또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 초기까지 계속된 국공유지 조사 작업과 연속선상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조사안들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 '각도공토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장원의 광무사검이 시작되기 이전 국공유지 조사는 크게 두 기관에서 맡았다. 첫째, 1895년부터 1896년까지는 농상공부에서 탁지부·궁내부를 대리해 사판위원(査辦委員)을 보내 조사를 행했다. 둘째, 1897년부터 1898년까지는 군부에서 역토와 일부 둔토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해 조사를 행했다. 이후 1899년부터는 내장원에서 둔토와 역토의 관리권을 차례로 인수받아 독자적인 조사를 행하게 된다.

먼저 1895,1896년 농상공부 조사의 특징을 보자. 조선 후기 이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역둔와 둔토들은 1894년 갑오개혁기에 원칙적으로 승총되거나 민유화되었다. 즉 면세지를 혁파한다는 갑오승총의 원칙에 따라 면세지를 출세지로 전환하고 탁지부가 결세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역토와 둔토의 관리 기관이 워낙 다양하고, 민유지들이 혼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탁지부는 이들 토지의 관리권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탁지부는 1895년 7월 각군의 관둔(官屯)·아록(衙祿)·공수위(公須位) 전답 등 둔토의 소재지와 두락수, 작인 성명을 상세히 조사해 보고하라는 훈령을 지방에 내렸다. 역토를 관리하고 있던 농상공부 역시 1895년 9월부터 마호(馬戶)에게 지급되었던 역전답[馬位田]의 조사에 착수하여 전국 22개 부(府)에 사판위원을 파견하였다.

이어 농상공부는 1896년 2월 탁지부와 궁내부의 의뢰를 받아, 각 궁장토는 물론 탁지부와 궁내부 소관의 목장토·둔토 등도 역토와 같이 조사하였고, 사판규례(査辦規例)도 역토와 동일한 규정을 따랐다. 따라서 1895년에는 탁지부와 농상공부가 각각 둔토와 역토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다, 1896년에는 농상공부의 역토 조사에 일임되어 국가와 왕실의 소유지에 대한 전면적인 토지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토지에 대한 현지에서의 조사는 군수, 사판위원, 마름이 담당하였다. 농상공부 역토 조사의 목적은 역토의 결수, 두락수, 일경수, 전품, 소작 농민, 매매(賣買)·진폐(陳廢)·환간(還墾)·은루결(隱漏結) 등과 같은 토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었다. 조사방법은 해당 군(郡)·역(驛)에 보관되어 있는 양안을 참고로 하고, 양안이 없을 때는 직접 측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때 탁지부 승총 결수와 두락, 일경수를 모두 조사토록 하였다.

농상공부 조사는 합리적인 선상에서 민의(民意)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도전(賭錢) 액수를 정할 때 마름·소작농민과 협의한다거나 못 쓰게 된 전답의 수축비용을 도전에서 지급하고, 농민들이 반발하자 도전을 감면해 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1894년 농민전쟁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조사를 의뢰한 탁지부도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지세 확보에 주력했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 징수를 강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1899년 이후 내장원이 철저하게 지대 인상과 징수에 주력한 것과 대비된다.

농상공부의 조사가 있은 다음, 각 지방대를 중심으로 역토와 일부 둔토에 국한된 군부의 조사가 1897, 1898년에 있었다. 군부는 지대를 일부 인상했으나 일시적인 조사였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조사는 1899년 이후 궁내부 내장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내장원의 조사는 다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1899년 5월부터 각지에 사검위원을 파견하여 둔토와 목장토·제언답 조사에 들어갔다. 이 때 도전 책정 비율은 소폭 인상에 그쳤고, 사검위원은 농민들의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둘째, 1899년 12월 「사검겸독쇄장정査檢兼督刷章程」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조사를 하면서 사검위원들로 하여금 독쇄관을 겸임하게 하여 지대(地代)를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였다. 셋째, 1900년 9월 10일 사검위원 대신 봉세관을 13도에 파견하여, 봉세관의 전적인 책임하에 누락된 토지와 이속이나 일반민이 은닉한 토지를 찾아 내고 지대를 수납토록 했다. 이 때부터 내장원은 역토의 관리권도 이양받게 된다. 이후 내장원의 조사 및 지대 징수는 봉세관 체제로 운영되다가 1905년 9월 들어 수조관(收租官)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네 번째 시기인데 내장원의 이름도 경리원으로 바뀐 후였다. 1907년 이후 통감부는 '각궁사무정리소(各宮事務整理所)',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 등을 설치하여 경리원 소관 토지들을 인수

하고, 황실재산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통감부는 역토, 둔토, 궁방전을 포함한 국유지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역둔토'를 사용하게 된다. 이상의 단계를 거치면서 역둔토의 면적은 확대되었고, 조사가 거듭될수록 지대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900년 9월의 「봉세관장정」을 보면 내장원의 역둔토 조사는 궁장토를 제외한 모든 소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실태와 결수, 두락수, 일경수, 전품, 작인 성명을 조사한 뒤 지대를 새로 책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때 봉세관이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던 토지의 명목은 각 목장, 역토, 각 둔토, 각 관청, 창고의 전답, 제언전답, 군근전답(軍根田畓) 등이었다. 당시 내장원은 황실의 재원 확충을 위해 역둔토를 확보하고 지대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조사 작업을 행했다. 이는 역둔토가 설령 민유지로 환원되더라도 결세를 징수해 정부재정에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무리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농상공부 조사와 대비된다. 1899년 이후의 각도공토안들은 이러한 배경하에 작성되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각도공토안'의 분포와 특징

각도공토안이란 1894년 갑오승총 이후부터 1907년 경리원 해체 시기까지 만들어진 '역둔토' 관련 각종 조사 성책을 말한다. '공토안'이란 표현은 본래 1899년 이후 내장원이 역토, 둔토, 목장토 등을 조사할 때 사용한 용어이지만 편의상 1894년부터 1898년까지 만들어진 조사안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모두 352건인데 지역별,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지역별·시기별 각도공토안 건수

지역＼연도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4	1905	1907	미상	합계
각도		1											1	2
강원도						7	1		1	2				11
경기도	1	6	2	3	2	2		1	1			2	1	21
경상도		4												4
경상남도			2			2			3	13		1	1	22
경상북도		1	3			31	3		1		32		5	76
전라도		8												8
전라남도		1	2				9	3			4			19
전라북도		1												1
충청남도		1	37				1	1						40
충청북도		2					16							18
평안남도			5			15								20
평안북도			29			20			31					80
함경남도		2				5								7
함경북도			7											7
황해도		2	4			10								16
합계	1	29	92	3	2	92	30	5	37	15	36	3	8	352

위 표를 지역별로 보면 평안북도가 80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76건, 충청남도 40건 순이다. 그에 비해 전라북도는 1건에 불과하고,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황해도 등도

20여건 정도이다.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있는 이유로 먼저 기록의 보존 상태가 지역별로 다를 것이라는 점, 공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역토와 둔토의 지역적 분포 역시 다를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은 공토안이 남아 있는 지역의 경우 특정 시기에 특정한 목적으로 조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1902년 평안북도의 공토안이 31건이나 남아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 때 내장원과 선희궁(宣禧宮) 사이에 군토(軍土) 관리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고, 의주 지역에서 내장원은 선희궁 마름이 농간한 군토에 대해 면리별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부가 등장해 조사 작업을 벌였으며, 그 조사안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평안부도 의주군의 공토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규장각에 소장된 평안북도 각도공토안은 모두 80건인데 그 중 의주군과 관련된 각도공토안은 34건으로 42%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작성 시기별로는 1896년 5건, 1899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8건은 모두 1902년에 작성되었다. 내용을 보면 1896년에 작성된 공토안은 농상공부에서 을미사판의 일환으로 문부 조사한 것으로, 각 둔전, 군역전(軍役田), 종정부(宗正府) 소속 전답의 결수, 두락수, 일경수, 작인성명 등을 일괄적으로 기록하였다. 1899년도의 공토안도 의주군 소재 각 공토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1902년에 작성된 28건의 공토안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각 면리별 군전(軍田), 역전(役田)의 결부수와 작인 성명을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양상면(楊上面)의 경우 다시 9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리별(里別)로 동일인인 집강이 동일한 형식으로 조사를 행하였다.

이같이 의주군 각도공토안의 경우 1902년 군역전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장원의 기록에 따르면 의주군 각 둔토와 목장의 도세(賭稅)와 식리전(殖利錢) 및 각항의 세납을 거두라는 명령이 최초로 내려진 때는 1899년 11월 11일이다. 이 때 내장원은 이미 사검위원의 조사를 끝낸 상태였으며, 의주군수에게 지시한 것은 향장이 직접 세금을 거두어 내장원으로 납부케 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서 1899년의 공토안은 이 때 사검위원에 의해 조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후 의주군 소재 내장원 관할 토지와 관련해서 선희궁과 마찰이 생겼다. 선희궁에서 자신들 소관의 군역토가 있어 도조를 거두어 왔는데 의주군이 내장원 훈령을 칭하고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내장원은 선희궁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래의 군역(軍役) 도전(賭錢) 13,961냥 등은 내장원 소관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1년 여 후인 1901년 1월, 내장원은 의주군에서 거두어야 할 도전 액수를 52,295냥(兩) 2전(錢) 8푼(分)으로 규정했는데 이들 항목별 액수는 『의주군소재각공토두락경수성책(義州郡所在各公土斗落耕數成冊)』(奎 19631)의 항목별 도전 합계와 일치한다. 즉 1899년 8월 사검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기초해서 다시 도전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군데서 모두 원군역 도전이 1만 4천 여 냥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장원은 선희궁 소속으로 인정했던 군전 등을 다시 되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장원은 이들 액수를 마름을 통해 거두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였는데 김희선(金希善)이라는 자가 선희관 마름을 칭하여 의주군 각 군토를 잠식(潛食)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때 내장원은 의주군 군

토가 모두 1만 여 일경(萬餘日耕)이라고 보았다. 이를 모두 선희궁 마름이 잠식했다고 보고, 이전까지의 장부는 농간된 것이기 때문에 평명(坪名), 일경실수(日耕實數), 작인성명을 새롭게 사검하라고 3월 8일과 10일, 봉세관과 의주군수에게 잇달아 지시하였다.
그러나 재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일단 내장원에 의해 환롱의 주체로 낙인찍힌 마름 김희선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가 증거 문부를 감추고 약간의 문부로 겉만 그럴 듯하게 꾸며 책임을 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되었다. 그런데 김희선이 이렇게 내장원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선희궁이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장원은 선희궁에서 감관을 보내 간섭하기 때문에 도세를 거두어 상납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내장원은 1901년 10월 7일, 황제의 명령을 앞세워 선희궁이 거두던 세액을 모두 가져오고, 선희궁이 제사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내장원에서 직접 보내주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의주군뿐만 아니라 전국 8도 봉세관에 공통적으로 전달되었다.
한편 재조사가 늦어진 데에는 지방관의 비협조도 큰 몫을 차지했다. 내장원은 1901년 4월 김희선의 문부에 대한 재조사 지시를 내렸는데도 의주군수가 지시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지방관의 비협조 역시 의주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평안북도 전체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봉세관이 정한 세금 액수에 대해 '곳곳에서 많다며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관이 대립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공토 도세(賭稅)가 본래 헐했기 때문에 지금 더 늘려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옛날 예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선희궁 세력을 물리치고, 지방관의 태만을 독촉하면서 내장원은 재조사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의주군 각 면별, 리별 군토 조사성책 28건은 내장원으로 올려진 것이 아니고, 원수부에서 파견된 사검관(檢査官)에게 올려진 것이다. 실제 28건은 모두 집강이 '조사소(調査所)'나 '검사관(檢査官)'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조사소'와 '검사관'은 특파검사관 원수부검사국원 육군정위(陸軍正尉) 구철조(具哲祖)를 뜻한다. 『報告書<1>』(奎 27365)이라는 문서철을 보면 1902년 2월경 의주군 각면 집강들이 일제히 훈령에 따라 군토의 진황(陳荒), 은닉 누락(隱匿 漏落)을 직접 조사하여 성책해 올린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집강들은 그 동안 각종 파원들이 4,5차례 조사해서 새로 바뀐 내용이 없다며 은근히 불만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내장원 소관 군토를 원수부에서 조사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군토를 둘러싸고 이미 내장원과 군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군부의 권한을 압도하는 원수부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1900년 10월, 내장원은 군토 등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선희궁 뿐만 아니라 군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었다. 한편 1899년 6월 창설된 원수부는, 고종이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00년 3월 원수부관제 개정 등으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군무국 총장 등에는 대한제국기 정계의 실력자이자 황제의 측근세력들이 임명되었다. 반면 군부는 군령권을 상실하고 원수부보다 하위의 군정기관으로 위상이 하락하였다. 즉 원수부와 내장

원은 군부와 탁지부를 대신하여 광무개혁기 황제권의 위상 강화를 주도한 두 기관인 셈이다. 내장원경 이용익이 원수부 검사국 총장, 탁지부협판, 육군참장 등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두 기관의 대립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1902년 의주군 군토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된 것이고, 이전처럼 관할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의주군 군토를 조사한 검사관 구철조는 1901년 8월 전국에 파견된 원수부 특파 검사관 4명 중의 하나였다. 원수부 파원의 조사 때도 지방관의 비협조는 계속되어서 평안북도관찰사는 '검사관이 관찰부를 거치지 않고 각군에 지시하여 관리 및 평민을 잡아들인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검사관은 각군에 직훈할 수 있다는 사목(事目)이 있다며 반박하였다. 원수부 검사관 구철조의 조사가 1902년 6월 일단락되자 내장원경 이용익은 다시 군토 관할권의 이관을 요구하였다. 1903년 2월 이용익은 원수부에 보낸 조회를 통해 '군토가 군부 소관일 때는 해당 도세(賭稅)로 각 지방대 경비에 충당하다가 탁지부 소관으로 옮긴 후에는 탁지부에서 도세(賭稅)를 받고 지방대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1900년부터는 내장원으로 이속되어 지방대 경비는 탁지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원수부에서 조사한 문부와 거둔 도전을 내장원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곧바로 내장원은 평안북도 군토사검파원(軍土査檢派員) 심기영(沈基榮)을 임명하고, 체납된 도세(賭稅)와 은닉한 것을 납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검위원 심기영의 조사 과정에서도 사토가 군토로 편입되었다는 민인들의 불만은 계속되었다.

1902년 군토 조사성책은 의주군 23개 면 중 고읍면(古邑面) 등 15개 면에서 작성되었다. 19세기 고지도를 보면 이들 지역은 대개 의주 남문 백마산성(白馬山城) 바깥쪽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다. 이 중 몇몇 면은 리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조사안을 작성했다. 양상면은 구봉리(九鳳里) 등 10개 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는 1871년 읍지상에 나온 리가 모두 망라된 것이다. 주내면도 리별로 5건이, 위화면도 2건이 별도로 작성되었다.

그 중 하나인 『양상면망양리군전조사성책(楊上面望洋里軍田調査成冊)』(奎 27328)은 1902년 2월 의주군 양상면 망양리 군전의 결부수, 전품, 두락, 일경수, 작인 성명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성책이다. 일반 필지 외에 <지어질(支於秩)>, <읍추사(邑追査)>, <신추사(新追査)>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기재방식을 보면 먼저 작인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결부수를 기록한 다음 그 아래 쌍행(雙行)으로 결부수가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이는 '원(元)'과 '루(漏)'로 구분되고 있다. '원(元)'과 '루(漏)' 아래 '상중하(上中下)'의 전품과 전답의 지목(地目), 두락이나 일경수를 기록하였다. '루(漏)' 대신에 '류(流)'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양상면 내 다른 리의 공토안에서는 '강락(江落)'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즉 본 공토안은 망양리 소재 군전의 작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결부수를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이들이 부담해야할 도조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는 '원(元)' 아래 '도(賭)'가 병기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루(漏)'의 의미는 무엇일까? 얼핏 자료만 놓고 보면 '진기(陳起)' 여부를 구분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즉 도조를 거두는 대상이 되는 토지만 '원도(元賭)'로 파악했다고 보

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추적해보면 '루(漏)'는 '진(陳)'의 의미가 아니라 '누락(漏落)'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증명될 수 있다. 첫째는 이 공토안의 작성 배경을 통한 추정인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공토안은 선희궁 마름의 농간으로 거짓 문부가 만들어졌다는 전제 하에 군전을 재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그 농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즉 '누락'은 본래 도조로 납부해야할 대상임에도 농간으로 빠진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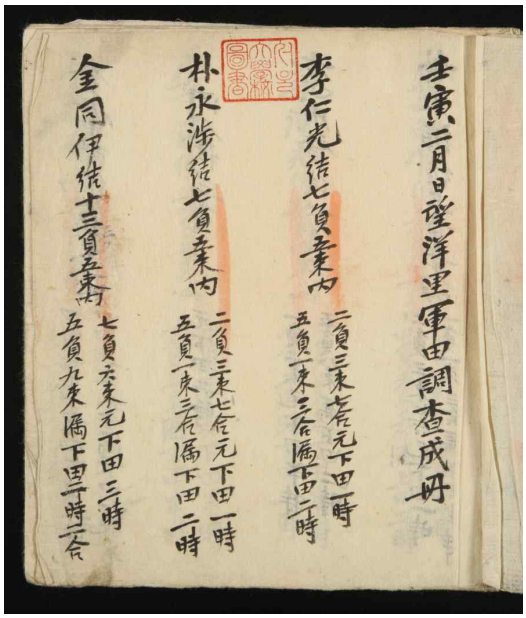
壬寅二月日望洋里軍田調査成冊
李仁光結七負柒內 二負三束壹元下田一時 五負一束三合漏下田二時
朴永涉結七負柒內 二負三束七合元下田一時 五負一束三合漏下田二時
金同伊結十三負柒束內 七負六束元下田三時 五負九束漏下田三時二合

<그림 1> 『楊上面望洋里軍田調査成冊』(奎 27328)의 첫 면

둘째는 '이상조(已上條)'의 항목을 통해서 증명 가능하다. 일반 필지의 경우 '진결(陳結)'과 '누결(漏結)'이 구분되고 있고, 그 규모를 보더라도 '진결(陳結)'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누결(漏結)'은 '원도결(元賭結)'을 능가하고 있다. 즉 본래 도조를 거둘 때 기준이 되던 장부에 실려 있는 것이 '원도결(元賭結)'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누결(漏結)'이며, 계속해서 추사질(追査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본 공토안 작성의 목적이 '누락'된 토지의 파악에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특히 '신추사(新追査)'의 경우에는 '원(元)'과 '루(漏)'의 구분이 없어 이것이 곧 '누결(漏結)' 조사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어질(支於秩)'의 의미가 무엇인지, '루(漏)' 대신에 '류(流)'를 쓰거나 '강락(江落)'을 썼을 때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다른 자료와의 대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광무양안' 소장 현황과 양식별 특징

1) '광무양안' 소장 현황

'광무양안'은 광무 연간에 만들어진 양안을 뜻한다. 광무 연간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부터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난 1907년까지를 말하는데 광무양안은 그 기간 중에서도 1900년부터 1904년까지 5년 동안 만들어졌다. 1899년경부터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이라는 기관을 차례로 만들어 양전·지계 발급 사업, 곧 토지조사사업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식민지화가 시작되면서 양전·지계 사업도 중단되었다.

광무양안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공식적인 양전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일반양안에 해당한

다. 조선후기에 일반양안 외에 일반양안을 베껴쓴 파생양안, 개인양안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한제국기에도 광무양안 이외에 양안들이 남아 있다. 황실 재정을 담당하던 내장원에서 독자적으로 관할 토지에 관리들을 보내 작성한 '공토안'들이 규장각에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광무양안을 베껴쓴 것으로 보이는 개인양안도 일부 발견된다. 또한 1905년 이후인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진 문서들도 있는데 광무양안과 1910년대 일제의 토지대장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양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일반양안인 광무양안이다. 당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또 많은 지역의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광무양안을 분석함으로써 대한제국기 개혁사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양안 및 일제 토지대장과의 비교 작업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그간 광무양안의 이모저모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 왔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한제국기 양전이 어느 지역에서 행해졌는지 살펴보고, 그 중 어느 지역, 어떤 형식의 양안이 남아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1908년 간행된『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대한제국기 양전은 9도 218군에서 행해졌다.

<표 2> 광무 연간 양전 실시 군 개수

도명	1906년 9월 28일『관보』에서 확인되는 군(郡) 개수	『증보문헌비고』에서 확인되는 양전 실시 군 개수	양지아문 단계	지계아문 단계
경기	36	20	15	5
충북	18	17	17	
충남	37	38	22	16
전북	28	26	14	12
전남	32	16	16	
경북	41	41	27	14
경남	32	31	10	21
강원	26	26		26
황해	23	3	3	
합계	273	218	124	94

1906년 9월 28일 발간된『관보』를 보면 당시 대한제국에는 273개의 군이 있었는데 그 중 218군에서 양전이 행해졌으니까 대략 80%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218군의 양전은 다시 크게 양지아문 단계와 지계아문 단계, 둘로 나누어져 양지아문 단계에서 124군, 지계아문 단계에서 94군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은 1개 군만 빼고 모두 양지아문 단계에서 양전이 이루어졌고, 강원도는 모두 지계아문 단계에서 양전이 이루어졌다. 충남, 충북, 경북은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각각에서 양전을 행했으나 양지아문 양전의 숫자가 많은 반면, 경남은 지계아문 단계에서 더 많다. 경기, 전남, 황해도는 주로 양지아문 단계에서 일부 군에서만 양전이 이루어졌다.

양지아문은 1898년 토지 측량을 위해 설치된 관서이다. 이듬해부터 지방관이나 토지 측량 업무에 밝은 자를 양무감리로 선정해 보내고, 그 아래 양무위원, 조사위원과 측량기사 등을 두었다. 양전사업은 1901년 전국적인 흉년으로 12월부터 중단되었다. 같은 해 대한제

국 정부는 토지소유권인 지계(地契) 또는 관계(官契) 발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하여 지계아문을 발족시켰다. 1902년 들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업무가 중첩된다고 여겨져 양지아문은 혁파되었으나 담당 기능은 모두 지계아문으로 인계되었다. 즉 지계아문은 지계발행사업 뿐만 아니라 종래 양지아문이 담당하던 양전사업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대한제국기 양전이 양지아문 단계와 지계아문 단계로 나누어져 실시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존하는 광무양안은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218군 중 19%인 41개 군의 것이 남아 있다. 양지아문 단계의 것 중 경기 13군, 충북 8군, 충남 13군, 경북 1군이 남아 있고, 지계아문 단계의 것 중 경남 4군, 강원 2군의 것이 남아 있다. 주로 경기, 충청도의 양지아문 양안이 남아 있는 것이다. 왜 이들 지역의 양안들이 남아 있는가에 관해서는 당시 재정을 담당하던 탁지부가 수세 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된 바 있는데 좀 더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양전이 행해진 군의 숫자와 규장각 소장 양안 숫자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증보문헌비고』의 통계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규장각 소장 광무양안의 분류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지아문에 이어 지계아문 단계에서 재양전이 행해진 지역의 경우 『증보문헌비고』 통계에 잡혀 있지 않다. 또한 양지아문 단계 안에서도 중초본과 정서본이 각각 나누어지는데 규장각의 분류체계가 일관되지 않다. 경우에 따라 중초본, 정서본 각각에 도서명을 부여한 지역도 있고, 합해 1종으로 묶은 지역도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광무양안 자료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황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광무양안 자료의 규모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6도 총합 52종 1,232책이다. 중초본, 정서본, 지계아문본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52종의 양안을 다시 세분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 본 대로 크게 양지아문 양안과 지계아문 양안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지계아문 관인이 찍혀 있으면서 실제 양식은 양지아문의 것과 똑같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02년 양지아문의 업무를 지계아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양지아문에서 양전을 마치고 양안 초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계아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 양안은 지계아문의 도장이 찍힌 채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발행 주체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광무양안은 크게 '양지아문 양식'과 '지계아문 양식', 2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양지아문 양식을 중초본과 정서본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 규장각 소장 '광무양안'의 도별 종수와 책수

도명	종수	책수
강원	2	22
경기	20	569
경남	4	48
경북	1	139
충남	16	247
충북	9	207
합계	52	1,232

양지아문의 양안은 크게 세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첫 번째는 야초(野草), 두 번째가 중초(中草), 세 번째가 정서(正書)다. 각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양안은 다음 단계 양안 작성의 바탕 자료가 된다. 야초책은 현장에서 실제 측량한 결과물인데 면적, 결부수, 소유주와 경작인 파악에 주력한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 관아에서 양무위원 등이 중초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야초책에 자호(字號)와 지번을 붙인다. 또한 이 중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의 양지아문에서는 최종적인 검열과 합계 대조 등을 끝낸 후 정서본을 완성하게 된다. 야초책의 경우 규장각에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중초본이거나 정서본이다.

그러면 광무양안을 크게 양지아문 양식의 중초본, 양지아문 양식의 정서본, 지계아문 양식, 3종류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정리하여 표로 그려 보자. 전체 52종이지만 규장각 도서 분류체계의 비일관성을 감안하여 55종으로 만들었다. 즉 충남 연산군의 경우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에서 각각 만들어진 양안이 1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였고, 경기 광주부와 충남 아산군도 중초본과 정서본이 1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였다.

<표 4> 규장각 소장 광무양안의 양식별·지역별 분류표

도명	군명	양지아문 양식			지계아문 양식	합계
		양지아문(중초본)	양지아문(정서본)	지계아문(정서본)		
강원	간성				○	1
	평해				○	1
소계					2	2
경기	과천	○	○			2
	광주	○	○			2
	수원	○			○	2
	안산	○				1
	안성	○		○		2
	양성	○		○		2
	양지	○		○		2
	여주	○				1
	용인	○			○	2
	음죽	○				1
	이천	○				1
	죽산	○				1
	진위	○		○		2
소계		13	2	4	2	21
경남	동래				○	1
	산청				○	1
	진남				○	1
	합천				○	1
소계					4	4
경북	경주	○				1
충남	목천	○				1
	문의	○				1
	부여	○				1
	석성	○		○		2
	아산	○	○			2
	연기	○				1
	연산	○		○		2
	온양	○	○			2
	전의	○				1
	정산	○				1
	진잠	○				1
	천안	○				1
	한산	○		○		2
소계		13	2	3		18
충북	괴산	○				1
	연풍		○			1
	영춘			○		1
	음성	○				1
	진천		○			1
	청안	○				1
	충주	○		○		2
	회인			○		1
소계		4	2	3		9
총합계		31	6	10	8	55

그러면 41군에서 만들어진 양안이 어떻게 55종으로 늘어났을까?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1군에서 2종의 양안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지계아문에서만 1군별로 1책씩 작성된 경상도, 강원도의 경우는 별도로 놓아두고, 경기·충청도의 사례를 보자. 경기도의 경우 전체 13군 중 양지아문, 지계아문에서 1종씩 만들어진 지역이 2군(수원, 용인),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에서 각각 만들어졌으나 동일하게 양지아문 양식인 지역이 4군(안성, 양성, 양지, 진위), 양지아문에서 2종이 만들어진 지역이 2군(과천, 광주)이다. 광주는 규장각 목록에서 1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초본과 정서본으로 분리해야 하고, 과천의 경우에도 정서본 중 일부가 남아 있다. 수원, 용인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재양전이 실시되었다. 본래는 양지아문에서 양전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계아문 양안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양전이 실시되어 지계아문 양안이 작성된 것은 조세 수취의 기준이 되는 결부 책정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양지아문 양안에 수정된 곳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지계아문의 관인이 찍혀 있으나 사실상 양지아문 양식인 4군의 양안은 모두 정서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양지아문 양식으로 1군에서 2종의 양안이 만들어진 6개 지역은 모두 중초본, 정서본이 각각 남아 있는 셈이다. 충청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종이 만들어진 6군(아산도 실제로는 2종임) 중 4군(석성, 연산, 한산, 충주)은 지계아문 관인이 찍힌 양지아문 양식으로 정서본이 작성되었으며, 2군(아산, 온양)은 양지아문에서 각각 중초본과 정서본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계아문 관인과 상관없이 양지아문 양식의 양안은 중초본과 정서본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 '광무양안'의 양식별 특징

이처럼 광무양안은 양지아문 양식(중초본), 양지아문 양식(정서본), 지계아문 양식, 3종류로 구분된다. 각 양식별 특징이 무엇인지 실제 양안 사진 등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외형상 특징부터 보자.

<표 5> 광무양안의 양식별 외형상 특징

	양지아문 양식(중초본)	양지아문 양식(정서본)	지계아문 양식
책 크기	32.6×40.7cm	35.9×62.3cm	47.6×39.5cm
1면(面)당 책수	1면당 2-3책(평균 1.86책)	1면이 1책씩	1면당 1-2책(평균 1.36책)

각 양안은 책 크기부터 차이난다. 중초본, 정서본, 지계아문본 각 1종에서 1책씩 골라 책 크기를 잰 평균이 각각 32.6×40.7cm, 35.9×62.3cm, 47.6×39.5cm이다. 양지아문 양식 중초본을 기준으로 하여 정서본은 가로로 더 길고, 지계아문본은 세로로 더 길다.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아서 중초본의 경우 세로가 28cm에서 35cm, 가로가 39cm에서 44.3cm, 정서본의 경우 세로가 35cm에서 36.6cm, 가로가 61cm에서 63.5cm, 지계아문본은 세로가 43.6cm에서 52cm이다. 지계아문본 가로의 경우 경기, 강원도와 경상도가 좀 다른데

경기, 강원도는 26.6cm에서 30.4cm, 경상도는 50cm에서 52.6cm이다. 중초본이 1쪽당 5-6필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반해 정서본은 2배인 10필지 정보를 담고 있다. 지계아문본 역시 사표 도형 등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양지아문 중초본보다 더 많은 필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중초본과 정서본은 대부분 내용상으로 동일한데 책 크기가 커지면서 전체 쪽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서본과 지계아문 양식의 양안은 종별 책수에서도 양지아문 중초본보다 적다. 이는 합철의 기준이 무엇인가와 관련된다. 즉 정서본은 1面(면)의 내용을 1책으로 합철한다는 점에서 중초본과 다르다. 충북 영춘군의 경우 6면에 12책이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내용이 2책씩 만들어진 것이다. 중초본의 합철 양상은 보다 다양하다. 석성군처럼 1면당 1책씩 합철된 경우도 있고, 음성군처럼 1면당 평균 3책이 합철된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86책이 된다. 지계아문본의 경우 1면당 평균 1.36책씩 작성되었다. 18세기 전반 경자양안의 경우 경상도에서는 1책에 2,3개의 면이, 전라도에서는 1면에 2,3책씩 수록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았으나 면 단위로 양전과 양안 작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광무양안과 마찬가지이다. 1910년대 일제가 지적도를 작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면 단위였으나 면 단위 밑으로는 들판이나 자연 촌락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정구역인 마을(里) 단위로 분책되었다.

이처럼 양지아문 양식의 중초본과 정서본은 1쪽당 필지수가 다르거나 일부 합계 등이 수정되기는 하나 기본 정보들은 대개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양전이 실시된 충남 아산군의 양안을 보면 중초본과 정서본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초기 양전 시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것이 점차 수정되면서 본궤도에 올라갔음을 말해준다. 아산군 양안을 통해 중초본과 정서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899년 5월 29일 충청남도 양무감리로 전의군수 정도영(鄭道永)이 임명되었고, 이어 6월 5일에 양무위원으로 이종대(李鍾大), 이기(李沂)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양전을 시행하였고, 이 때 중초본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중초본은 양무위원별로 그 기재양식이 다르다. 아직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사용하는 면적 단위인 두락수나 구래의 결부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항목은 정서 과정에서 모두 생략된다. 토지소유자와 경작인 표기도 전답주, 시주(時主)와 작인, 시작(時作)이 혼용되고 있다가 이후 시주, 시작으로 통일되어 가는데 이는 특히 이기의 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아산군 양안을 보면 토지의 면적과 소유·경작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남면(近南面)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사진은 아산군 근남면 양안 중초본의 첫 면이고, 아래는 정서본의 첫 면이다. 아산군이 초기적 형태라는 것은 중초본과 정서본의 형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다른 지역의 경우 아래 사진의 정서본과 같은 형식으로 중초본도 작성되고 있다. 양지아문 양식의 일반적 형태인 아래 정서본부터 보자. 맨 오른쪽에 지명이 나오고 다음에 자호가 써져 있다. 맨 왼쪽 판심에는 아산군이라고 되어 있다. 칸 위에는 염치서평(塩峙西坪)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판명이다. 들판명이란 동(洞), 리(里), 원(員), 평(坪) 등으로 구성되며 행정구

역은 아니다. 일제 이후 토지대장 등에서 엄밀하게 행정구역별로 토지가 정리되고 있는 것과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들어 있는 곳도 광무양안 상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다. 광무양안에서 양전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면이며 면 내에서의 순서는 양전방향에 따를 뿐이다. 이 들판명이 중초본에서는 자호 오른쪽에 먼저 등장하고 있다.

<그림 2>『忠淸南道牙山郡量案』(奎17664) 26책 001a면

<그림 3 >『忠淸南道牙山郡量案』(奎17664) 10책 002a면

다음으로 칸 내 기재사항들을 살펴보자. 가장 큰 차이는 중초본에 두락·일경수가 들어가 있는 칸이 하나 더 있다는 점과 소유지·경작자의 호칭이 다르다는 점이다. 양지아문 양식의 양안은 일반적으로 아래 정서본 사진처럼 네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산군 중초본은 다

섯 칸이며 칸의 구분도 없다. 첫 번째 칸에서 지번, 양전 방향, 토지 형태, 전(田), 답(畓) 등의 지목(地目)이 들어 있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서본에서는 열(留)과 좌(座)로 표기되는 배미수가 첫 번째 칸에 들어 있는 반면 중초본에서는 네 번째 칸에 별도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중초본 네 번째 칸에는 배미수 뿐만 아니라 두락수가 나오고 있다. 논에서 두락과 밭에서 일경(日耕)은 결부와 별개로 민간에서 사용되던 면적 단위이다. 이것도 절대면적은 아니지만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양지아문 양식에서 두락수는 제외되며 지계아문 단계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 중초본 네 번째 칸 전체를 없애면서 배미수만 첫 번째 칸으로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칸에서 도형을 그려놓고 장광척수와 사표를 기록해 놓은 것도 양자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표도형은 실제 전답의 위치를 가늠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이며, 실제 측량을 거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자양전 단계보다 더 진전된 방식으로 토지를 파악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칸에는 적척수, 전품, 결부수가 나온다. 장광척수에서 적척수가 산출되고, 전품에서 결부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들 정보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마지막 칸을 보면 정서본에서는 시주-시작, 중초본에서는 답주-작인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이름은 양자 모두 동일한데 호칭이 다르다. 광무양안에서 소유주와 경작자의 호칭은 결국 시주-시작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답주-작인은 과도기적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왜 '시(時)'를 붙였을까 하는 부분이 연구자들 간 크게 논란이 되어온 바 있다.

다음으로 양지아문 양식과 지계아문 양식이 모두 남아 있는 수원군의 사례를 통해 지계아문 양안 형식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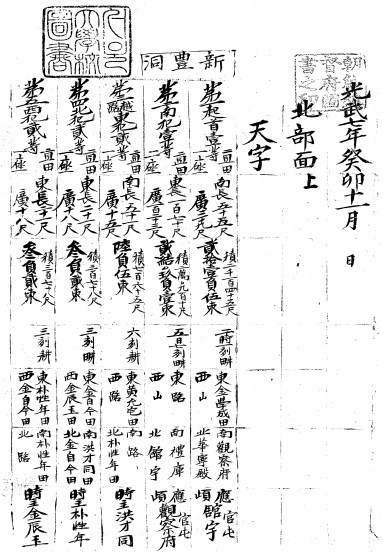

<그림 4>『京畿道水原郡量案』(奎 17651) 69책 북부면 002a면

<그림 5>『京畿道水原郡量案』(奎 17650) 32책 001a면

사진에서 보듯이 위의 양지아문 양식은 4칸으로 나누어 전답 정보를 싣고 있고, 아래의 지계아문 양식은 7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4칸이 7칸으로 늘어난 것은 두락·일경수를 적은 칸이 새로 늘어나고 중초본의 두 번째 칸이 장광척수, 동서 사표, 남북 사표 등 세 칸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지번, 양전방향, 전형, 지목, 야미수, 전품, 결부수, 장광척수, 적척수, 사표 등의 항목을 담고 있으나 차이점은 양지아문 양식의 경우 사표도형이 있으나 두락·일경수가 없고, 지계아문 양식은 사표도형은 없으나 두락·일경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계아문 양식의 양안은 관계 발급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계없는 항목들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지아문 양식 양안과 지계아문 양식 양안의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표기 방식이다. 수원군 북부면 신풍동의 1번, 2번 필지는 각각 관아, 관찰부 건물로 되어 있으며 응탈 즉 면세지로 책정되어 있다. 일반 토지에서 기전과 진전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공공 건물의 경우 진전과는 다른 것이지만 면세지로 처리되었다. 다음 3,4,5번 필지를 보면 역시 경작지 전답이 아니고, 주거지 건물이다. 양지아문 양안에서는 이를 대주와 가주로 구분하여 시주-시작과 짝을 이루게 하였는데 해당 주거 건물의 소유자는 대주가 되고 실제 거주자는 가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원군 지계아문 양안을 보니까 모두 시주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초가 몇 칸 여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지계아문 양안에서 주거 건물이 기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은 '가사안(家舍案)'이라고 해서 별도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 한가지 동일한 필지 시주 이름의 한자 표기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번 필지에서 박성년(朴聖年)은 박성년(朴性年)으로 바뀌었고, 5번 필지에서 김진옥(金振玉)은 김진옥(金辰玉)으로 바뀌었다. 야초 단계에서 사람 이름을 파악할 때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것도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광무양안의 엄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표기가 좀 달라도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계아문 양식 양안의 경우 대주-가주가 등장하지 않을 뿐 더러 시작도 나오지 않는다. 시주가 우선적으로 파악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기관이나 궁방에 속한 토지의 경우 '작(作)'으로 표기된 사람 이름이 옆에 첨기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진주(陳主), 낙주(落主), 진무주(陳無主) 등의 표기를 통해 진전 파악에서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지아문 양식 양안에서도 진전이나 응탈이 나오고 있지만, 진주(陳主) 등으로 표기된 것은 아니며 특히 무주진전(無主陳田), 즉 주인이 없는 진전은 지계아문 양식 양안에서만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계아문 양식의 양안이 오히려 경자양안 등 조선 후기 양안과 형식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표도형의 종류가 줄어들어 전답 모양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진 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용인군의 경우를 통해 양지아문 단계와 지계아문 단계에서 진전 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이곳은 용인군 도촌면(道村面)의 한 지역이다. 위 사진은 양지아문 양식의 양안이고 아래 사진은 지계아문 양식의 양안이다.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3필지의 표기가 각 양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표 6> 용인군 광무양안의 항목별 비교

양지아문 양안			항목	지계아문 양안		
42	43	44	지번	44	45	46
直	(梯帶)直	勾股	토지 형태	直	直	股
續田	田	田	지목	續田	田	田
350	1,262	732	면적 정보(尺)	350	1,680	520
金化京田, 金性玉田, 山, 金卜每田	山, 金京先田, 山, 閔五月田	山, 金德民田, 金化京田, 朴致文田	사표 정보 (동서남북)	金化京田, 李萬卜田, 山, 金卜每田	山, 金化直田, 山, 山	山, 金德民田, 陳田, 朴治文田
6등	6등	6등	전품	6등	6등	6등
9속	3부 2속	1부 8속	결부수	9속	4부 2속	1부 3속
田主, 作人	田主, 作人	田主, 作人	인명 표기	陳主	陳主	時主
金京先	金化京	閔五月, 金性民	인명	金京先	無	閔五月

일단 위 3필지는 각각 동일한 토지로 판단된다. 지목, 전품이 동일하고, 토지 형태, 면적, 사표, 결부수, 인명이 대체로 유사하며, 앞과 뒤로 나오는 필지들의 정보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항목들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이유로 진전 파악 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위 3필지는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을까? '동→동→북'이라는 양전 방향 및 사표 정보에 입각해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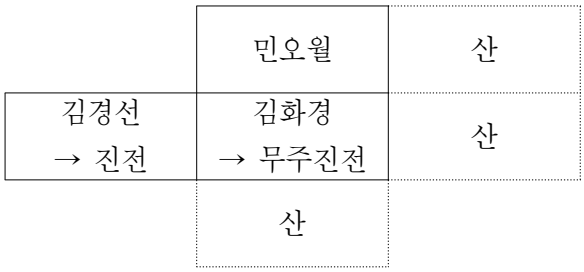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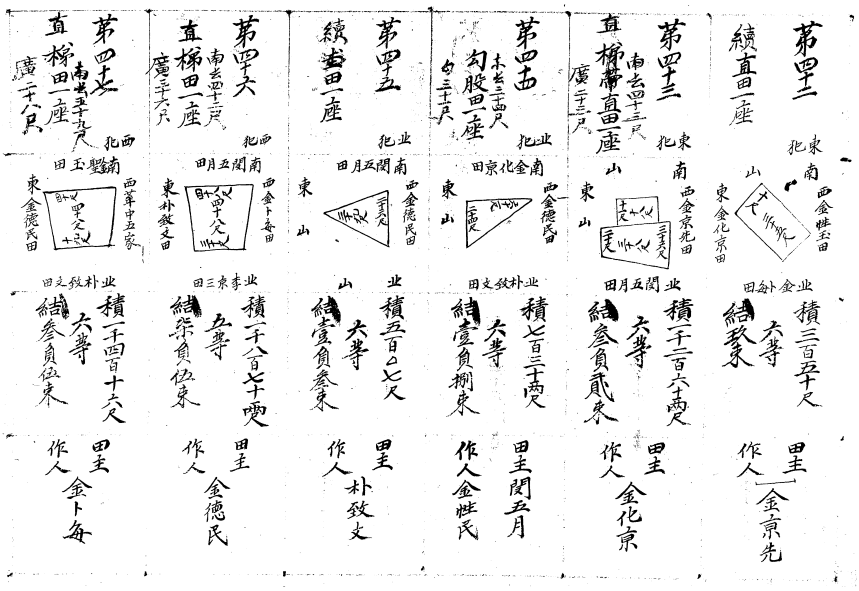

<그림 6>『龍仁郡量案抄』(奎 17645) 4책 005b면

<그림 7>『京畿道龍仁郡量案』(奎 17644) 3책 003b면

<그림 8> 『京畿道龍仁郡量案』(奎 17644) 3책 004a면(아래 오른쪽)

두 양안 작성에 2,3년 간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볼 때 토지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3필지 앞뒤 필지도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

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6등급의 밭이다. 이런 경우 새로 개간된 곳일 확률이 높고, 평야의 논보다 진전화될 가능성도 더 많은 편이다. 첫 번째 필지는 면적과 결부수가 동일하니까 놓아두고 두 번째, 세 번째 필지를 합해보자. 양지아문 양안에서는 1,994척, 5부인데 지계아문 양안에서는 2,200척, 5부 5속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110% 증가했는데 민오월이 시주로 되어 있는 필지의 면적은 조금 감소하고 가운데 필지의 면적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필지는 지계아문 양안에서 모두 진전으로 파악되고 있고, 두 번째 필지는 특히 주인이 없는 진전, 즉 무주진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김경선, 김화경, 민오월 등은 모두 실명이 아니라 호명이라고 여겨지는데 양지아문 양안 43번 필지의 전주로 되어 있는 김화경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체 면적 등을 통해 볼 때 양지아문 양안에서 파악되지 않은 곳을 지계아문 양안에서 진전으로 새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지아문 양안에도 진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면세지가 많다. 개별 전답의 진전 여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지계아문 양안에서는 진전이 충실히 파악되고 있어 모든 항목인 동일한 필지(김경선의 속전)가 진전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다른 필지(김화경의 전)는 아예 무주진전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지계아문 양안에서 무주진전의 사표이다. 북쪽 지표는 본래 민오월의 전이 되어야 하는데 산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양지아문 양안의 사표 도형을 보면 본 필지는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다면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필지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즉 필지간 경계는 애매한 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구역에서 총 면적과 결부수는 늘리고 실결은 약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계아문 양안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지아문 양안에서 진전을 실결로 파악하여 결부수를 늘렸다는 사실은 경기도 전체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경기도 양지아문 양안 전체를 보면 전체 결부 중 실결의 비율이 99.7% 이상이다. 광주부가 99.7%, 과천, 수원, 안산, 안성, 양성 등이 99.8%이고, 나머지는 99.9%로 진전 비율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진전 중 절반 이상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면세지인 응탈(應奪)이다. 응탈을 제외하면 안성, 양지, 음죽, 진위 등은 진전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광주부의 밭 진전이 7결, 수원군의 논 진전이 11결 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결 미만이다. 양지아문 양안에서 진전이 드문 것은 '생산력 수준 발전에 따른 무주지의 해체'나 '6등전으로의 과도한 상향 조정'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후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계아문 양안에서는 다시 '종전처럼 정전정답 위주의 전답 파악'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실제 진전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도 있었고, 토지등급 책정을 둘러싼 정치적 역관계가 맞물려 있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광무양안 단계에서 실결은 그 이전보다 증가한 것인가? 19세기 후반 작성된 경기 각군 읍지를 보면 각종 잡탈(雜頉)의 비중이 높다. 과천, 광주, 수원, 용인 등은 잡탈 비율이 절반 가량 되어서 광주의 경우 전체 5,858결 중 2,906결만이 실결로 잡히고 있다. 이때의 잡탈 역시 진전이라기 보다는 면세지인 응탈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갑오승총에서

면세지가 혁파됨으로써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원래의 장부에는 1군에 3,600여 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광무양안에는 3,000여 결로 되어 있어 85%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수세 결수는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읍지 원래 장부 결수 중 수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50%가 안되는 군도 있었기 때문이다. 갑오승총으로 이러한 면세지 자체가 많이 줄었고, 다시 광무양안 단계에서 진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실결이 꽤 늘어난다. 평균 3,000여 결은 1900년 수세결총에 비하면 대략 30% 정도 증가한 것이다.

3. 대한제국기 토지조사사업의 성격

1) '광무양안'의 작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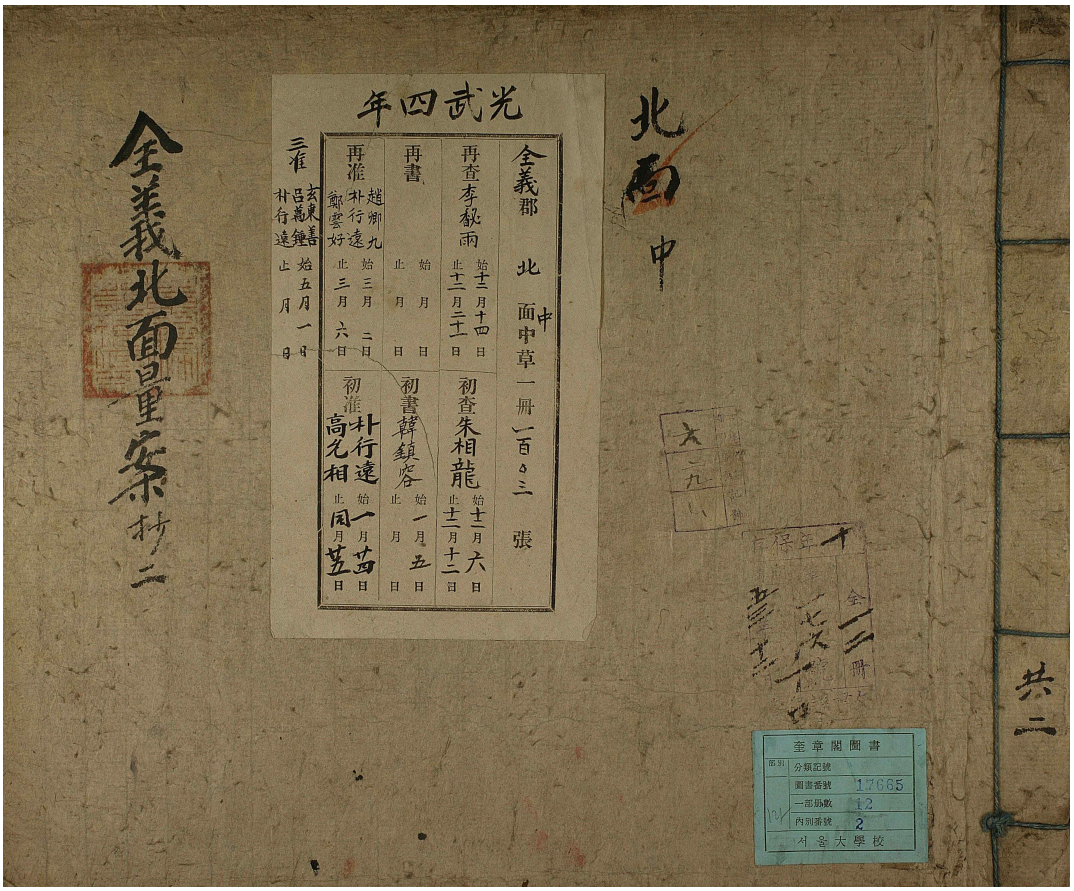

<그림 9>『全義北面量案』(奎 17665) 2책의 표지

전의군은 오늘날 충남 연기군 전의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기군으로 통합된 곳이다. 위 사진은 전의군 광무양안 중 2책의 표지이다. 이 표지에서 광무양안 작성과

정과 자료 배열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가운데 종이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온 부분은 본래의 표지에 첨지로 덧붙은 것인데 일종의 '조사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양안의 작성과정을 잘 보여준다. 즉 이 책이 전의군 북면 중초본 중 하나로 처음 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 다음으로 기록을 언제 하였고, 검사를 언제 하였는지 날짜를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의군 중초본은 초사→재사→초서→초준→재준→삼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1900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두 명의 담당자가 각각 야초책과 중초본을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1901년 1월 5일 하루 동안 정서본을 작성하였고, 1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중초본과 정서본을 비교, 대조하는 확인 작업을 거쳐 정서본을 완성하게 된다. 즉 '조사안'은 중초본을 바탕으로 정서본을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자는 이와는 다르게 '조사안'이 중초본 자체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초서(初書)'에서 무엇을 쓴다는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때의 '서(書)'는 정서본을 쓴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의군 6개면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전의군 '광무양안'(『全義北面量案』(17665))의 면별 양안 작성 시기

날짜＼면명	北面	南面	大西面	東面	郡內面	小西面
1900년 11월 30일			初査		初査	初査
12월 3일		初査				
12월 4일				初査		
12월 5일	初査					
12월 6일		再査	再査			
12월 8일					再査	再査
12월 12일	再査					
12월 13일				再査		
12월 27일			初書		初書	
1901년 1월 3일						初書
1월 4일		初書				
1월 5일	初書			初書		
1월 22일			初准		初准	
1월 23일	初准	初准				
1월 24일				初准		初准
2월 27일		再准				
2월 28일	再准		再准	再准		再准
3월 2일					再准	
4월 24일						三准
4월 29일	三准					

면별로 작성 시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순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단계에서 모든 면의 작업이 끝났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검사의 경우는 6개 면 중 2개 면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사진에서 표제나 도장, 스탬프, 기타 표기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료 배열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 전의군 6면 양안 12책 전체의 표지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全義北面量案』(奎 17665) 1-12책의 표지 정보와 2책의 '공문서 분류도장'(우측)

현재의 책순서	표제	共 ○	공문서 분류도장의 把束番號
1	全義北面量案抄 一 北面 上	共 二	一七六-一-○
2	全義北面量案抄 二 北面 中	共 二	一七六-一-ㅁ
3	全義郡量案 三 北面 下		一七六-一-ㅅ
4	全義郡南面量案 上		一七六-二-○
5	全義南面量案 下		一七六-○
6	全義量案 大西面 上	共 二	一七六-三-○
7	全義郡量案 大西面 下	共 二	一七六-三-ㅁ
8	全義郡東面量案 上		一七六-○
9	全義東面量案 下		一七六-四-ㅁ
10	全義量案抄 郡內面 單		一七六-五
11	全義量案 小西面 上		一七六-六-○
12	全義量案 小西面 下		一七六-六-ㅁ

存保年十		
滿期	第一	
五三年十二月	七六-一-ㅁ	全一二冊
管保課書文		

위의 표는 책순서 및 합철 방식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보를 알려 준다. 첫째, 표제 명명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대체로 '군명, 면명, 양안, 상하(上下)'가 표기되어 있고, 동일 면에서는 유사한 형태이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표제는 면별로 붙여졌으나 책별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 이(共 二)'라는 표시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북면의 경우 실제로는 상중하의 3책인데 1,2책만 '공 이(共 二)'로 표기되어 있다. 이 때 1,2책과 3책의 표제 명명법이 다른데 1,2책에만 '초(抄)'가 붙어 있다. 즉 1,2책은 3책과 별도로 등사되었던 것인데 착오로 2책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써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공문서 분류도장의 파속번호(把束番號)'(사진 오른쪽 하단 부분의 스탬프)를 통해 현재 규장각 목록의 책순서가 1910년 12월 일제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공문서 분류도장에 따르면 전의군 양안은 모두 12책이고, 10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만직(滿期)가 53년 12월로 되어 있다. 즉 명치 53년 12월(1920년 12월까지)까지 10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결정은 1910년 12월에 내려진 것이다. 또한 '파속번호'를 보면 176번 아래 면별로 1부터 6까지 현재의 책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부터 6까지의 숫자 다음에 나오는 글자 중 일부는 '규장각 도서번호표'에 가려져 있으나, 면별로 2책의 경우 'ㅁ', 3책의 경우 'ㅅ'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장음계(長音階)의 B음과 C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제가 무원칙하게 정한 '파속번호'를 답습한 현재의 규장각 분류 체계를 바꾸어 '광무양안' 작성 당시의 체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양안'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도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광무양안' 자료 중 비어있는 조각들이 더 확연히 드러남으로써 지역별 수집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업무 수행 관련 주요 규정을 통해 양전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양지아문 양전과 관련해서는 1899년 제출된 항성 우체사 주사(主事) 오병일(吳炳日)의 「양전조례(量田條例)」가 주목된다. 당시 양전 방식과 관련하여 몇몇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양전조례」 방식이 기본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경자양전 이래 양전이 실시되지 않아서 토지가 없어도 세를 내거나 토지가 있어도 세를 내지 않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으므로 빨리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양지아문의 추진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양지아문은 각도의 관찰사, 군의 군수 등 행정조직을 이용하면서 전국의 토지측량을 관할하게 되고, 각도에 1명의 관리를 파견하여 양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郡)에서 유사(遺嗣)나 서리를 가리지 않고 3명 혹은 5명씩 뽑아 서기로 임명하고 면에서도 또한 1명을 뽑아 감관(監官)으로 삼아 양전을 담당케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전의 시행체계는 <양지아문→파원→서기와 감관>이라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실제 양전을 담당하는 것은 파원과 서기, 감관이었다. 이것은 종래 양지아문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외국인 측량기사와 기수보(技手補)를 중심으로 하는 양전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둘째, 각 면·리 단위 측량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양전의 담당자인 파원과 서기, 감관의 지휘하에 해당 지역의 토지측량이 이루어지면 해당 리에는 별도로 노농(老農) 수명을 지심인(指審人)으로 하여 토지 등급을 측정할 때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측량 전에 전주로 하여금 성과 이름을 함께 써 입표(立標)하도록 하며 측량 때에는 동임(洞任)과 해당 토지의 작인도 동원하여 보조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해당 토지의 척수(尺數) 증감과 진전 유무, 등급 판정을 엄격히 하고 양안의 말단에 관찰사, 군수, 서기, 감관이 서명 날장하여 양전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셋째, 토지의 형상과 면적 및 등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우선 전답의 면적을 측량하기 위해 주척(周尺) 5척을 양전 1척으로 하고 5결을 천자문의 1자로 편성하였으며 현실 농지에서 보이는 토지 형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조구전(國朝舊典)에 규정한 방형(方形), 직형(直刑), 제형(梯刑), 규형(圭刑), 구고형(勾股刑) 등 다섯 가지 형태 이외에도 원형(圓形), 환형(環形), 미형(眉刑), 사형(梭刑), 사부등형(四不等刑) 등 여러 형태 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예시하면서 다변형에 대해서 일정한 규식에 따라 일일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품의 사정(査正) 문제에 대하여 그는 이미 제기된 주장처럼 전답의 소출을 근거로 산정하거나 토지가격을 놓고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종래대로 전품 6등급을 근거로 토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다만 객관적인 토지 실적을 표기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결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양전사업에서 실시될 양전원칙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었다.

지계아문의 규정은 양지아문의 그것보다 더욱 세밀해져서 「지계감리응행사목(地契監理應行

事目)」으로 명문화되었다. 우선 토지의 객관적 측량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양안을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양안을 작성할 것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광무 이전 양안의 자호 순서와 필지수 및 양전방향을 그대로 준수하여 작성해도 좋다는 것이다. 물론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양안이 작성되는 것이지만 구양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는 양안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지아문에서 실지조사를 통한 양전방식과는 상당히 달랐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제시된 방식으로 생각된다.

또한 토지면적을 표기할 때 실적과 결부만이 아니라 두락과 일경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 때 두락과 일경은 민간에서는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전 실적수에서 기계적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이는 농촌관행을 채용하여 면적단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지방에 따라 150평 내지 300평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1두락의 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성과 간편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처럼 지계아문 단계에서 민간의 방식을 받아들여 정확한 면적을 측정하되 서둘러 양안을 작성하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기는 일본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인들이 넘어와 잠매를 가속화해가던 때였다. 대한제국 정보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법령을 정비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유권자를 확정짓기 위하여 발급한 것은 사실 지계가 아니라 관계(官契)이다. 관계는 양안상의 시주가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관계를 발급할 때는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사정과정이 필요했다. 「응행사목」의 관계발급절차를 보면 먼저 해당 지방에 가서 전답·산림·천택·가사를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부와 사표, 칸수와 척량이 적확한가를 조사한 다음, 시주와 구권(舊券)의 증거를 필히 확인한 다음 발급하라고 되어 있다. 지계아문에서는 사정작업시 양안의 시주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부동산 거래문서인 전답 매매문권, 즉 구권을 증방자료로 삼아 소유자를 확정하기 위해 구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것은 양안의 시주는 토지조사과정에서 조사한 소유자이기는 하였지만, 노비명이나 관리인 혹은 가족명이 등록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양안 이외에 구권이나 다른 증빙서류를 통하여 소유권자를 사정한 뒤 관계를 발급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2) '광무양안'을 통해서 본 토지조사사업의 성격

지금까지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과 실제 양전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곧 광무양안의 '실증'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특정 자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실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실증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광무양안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역사학은 이렇게 '실증'과 '관점'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 대개 문제가 발생한다. 실증에 치우치면 '도대체 그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받게 마련이고, 관점에 치우치면 '그것이 역사적 실상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실증과 관점을 조화시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광무양안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광무양안을 바라보는 연구자들 간 관점의 차이가 워낙 커서 한쪽에서 아무리 훌륭한 실증적 연구를 해도 상대편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대립적인 논쟁 구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광무양안을 통해 대한제국기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대한제국기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비교된다는 점이다.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미 연구자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탈의 상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근대화론' 간의 대립이다.

먼저 '광무양안' 연구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시기별로 논쟁점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 1단계에서는 1968년 김용섭에 의해 광무양안에 대한 분석이 처음 시도되었고, 1976년 '광무개혁' 논쟁에서 다시 이 문제가 취급되었다. 2단계 연구는 1988년 이후 배영순, 이영훈,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등이 경자양전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의 관련 하에서 광무양안의 의미를 재해석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역사연구회의 토지대장연구반이 이들 연구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반(反)비판함으로써 '광무양안'은 양 연구집단 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양자의 대립은 1995년과 1997년 각각 공동연구 결과가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일단락되었다. 3단계 연구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를 말한다. 2단계 연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쟁점과 과제들이 이후 또다른 개별·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계승·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1968년 김용섭은 광주, 온양, 수원, 연산, 안성, 석성군 등 6군의 9면 양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군합계, 면합계를 통해 호당 평균토지소유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농민층 분화의 실태를 밝히고 광무 연간의 양전·지계사업은 한말 토지제도·농촌경제가 내포하는 모순과 폐단을 지배층의 입장에서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농촌사회는 근대화의 이름으로 구래의 모순을 그대로 온존한 채 재편성되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용섭의 광무양안 연구는 조선후기 경자양안 등의 분석에 이어진 것이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김용섭의 연구 성과에 대해 별다른 찬반 견해가 표출된 바 없다가 1976년 신용하에 의해 강도 높은 비판이 가해졌다. 그것은 곧 '광무개혁' 논쟁이었는데 신용하는 대한제국의 집권세력을 친러수구파로 규정한 후 양전·지계사업 등이 결코 개혁적이지도 주체적이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실제로 김용섭은 양전사업을 주도한 세력의 정치경제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면이 있다. 광무양안 2단계 논쟁은 크게 두가지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방법론상 김용섭 연구가 갖는 실증적 한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으로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가 이미 신용하에 의해 제기된 셈이지만 이 논쟁이 광무양안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단계 연구는 1988년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해에 배영순은 박사학위논문에서 광무

양전사업이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을 지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특히 지세제도 완성과 관련하여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전사(前史)로 의의를 부여했다. 이후 배영순 자신은 별도의 후속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이영훈은 『조선후기사회경제사』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김용섭의 연구업적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 중 첫 장인 「양안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에서 '양안분석의 원칙과 전제로서 기주(起主)=농가세대설(農家世帶說)'을 부정하고, '기주=농가세대설'에 입각한 두 명제, 즉 '첫째 농민의 토지소유에서 항상 봉건적 신분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 둘째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平)·천(賤) 양계층 중에는 양반농가를 능가하는 부농호(富農戶)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이영훈은 왕조말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토지소유의 규정 아래 농민의 토지소유가 여전히 전근대에 머물고 있었다고 보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광무양안 분석에 들어갔다. 충남 연기군 광무양안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 기반하여 특히 '시주(時主)'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했다. 연기군 동일면(東一面) 용호리(龍湖里)와 합강리(合江里) 토지대장, 광무호적, 족보 등의 방증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양안이 당시 지주제를 반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광범위한 분록·대록 현상으로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실의 토지소유관계 그 자체에 대해 하등의 변혁적 재편을 가하지 않은 근대적=부르주아적 개혁이 역사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적 토지소유가 그 자체로는 근대법적 형식으로 전환되기 어려웠다고 못박았다.

한편 일본인 연구자인 미야지마 역시 광무양안에 대해 관점과 실증 면에서 독특한 접근을 시도했다. '<동적이세(同積異稅)>로서의 결부'(고려 전시과)가 '<이적동세(異積同稅)>로서의 결부'(국가에 의한 수조권 분여)로 바뀌고, 다시 '<동적이세(同積異稅)>로서의 두락제(斗落制)'(갑오승총에 의한 궁방전이나 아문둔전의 면세특권(=잔존하던 수조권 분여 형태)의 폐지)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수조권 분여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양전사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했고, 그 결과 광무양안의 과도기적 성격,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내재적 측면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이영훈 등 경제사학자들과의 공동연구도 출간되었다.

이상 주로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연구 결과, 초기 김용섭에 의해 이루어진 양안 연구의 권위는 실증과 관점 모든 측면에서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두 단행본 출간에 대한 한국사학계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고, 또한 매우 격렬하였다. 이 시기 한국사학계는 광무양안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초기 비판은 몇몇 사례를 통해 부분적·방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동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이들도 광무양안의 자료적 한계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부(虛簿)'로까지 취급할 수는 없으며, '국가적 토지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광무양전은 종전 양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사업과의 본질적 동일성 아래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즉 양전사업은 지세징수와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도모하였고, 실제 징세에도 적용되었다며, 토지소유의 재편 없이도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미야지마의 연구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혹하였다. 그것은 '식민사관적 해석으로의 퇴행'이자 ''내재적 발전론'을 가장한 또 하나의 식민주의 역사인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실체가 부정되었고, '국가적 토지소유' 언급은 맑스의 아시아사회론에서 연원하는 정체론적 시각으로 규정되었다.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을 말하고, 토지조사사업이 이전부터 성장해온 사적 토지소유권의 내재적 전개에 규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은폐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상 이영훈, 미야지마의 연구에 반론을 제기하는 한국사학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에 토지대장연구반이 조직되었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1995년 단행본으로 출간됨으로써 논쟁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양전사업'이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명명된 것 자체가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한제국의 토지조사는 토지제도상에서 볼 때 한국중세사회의 최종 귀결점이면서 근대사회로의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부여되었다. 왕현종은 양전사업 준비단계에서의 심의 과정을 처음으로 밝혔고,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양전의 구체적 실시 과정도 세밀하게 논증하였다. 이영호는 광무양안이 실제 측량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 지계아문의 양안은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위한 기초대장으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다. 최원규는 특히 관계(官契) 발급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해명하였고, 최윤오·이세영은 충남 온양군 양안을 통해 농민층 분화와 부농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광무양안 작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다루면서 동시에 세밀한 논증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연구자들간의 차이도 노정되었다. 예를 들어 양지아문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의 국가적 법인이 의도되었는지, 시작명 기록에 경자권 보호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의 문제에서 연구자 간 견해가 엇갈렸다. 또한 대한제국 정권의 정치경제적 지향과 대한제국의 여타 정책과 이 사업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논쟁 구도가 협소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영훈 등 경제사학자들은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연구로 관심 분야를 옮겨 또 다른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이영훈과 미야지마는 그간의 반론을 의식한 듯, 광무양안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영훈은 145쪽에 달하는 방대한 글을 통해 광무양안의 '시주' 호칭에 대해 논하였다. 논증 과정은 좀 더 정교해졌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이전의 주장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즉 '시주(時主)'와 '시작(時作)'에서 '시(時)'는 현재라기보다 임시적 내지 한시적의 뜻이며 그런 점에서 국전(國田)의 이념을 전제한 것이고, 이는 인민의 주(主)됨이 여전히 본주(本主)인 국가에 의해 제약되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며, 대한제국 국제(國制)와 그 시대의 모순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섭의 '봉건지배층에 의해 지배된 토지사유제'의 개념 역시 부정되었고, 양안을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무차별의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부터가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미야지마는 관점 면에서 새로 제시한 것은 없지만, 광무양안과 일제 토지대장의 비교 작업을 이전과는 차별화된 방식, 즉 하나하나의 필지와 소유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충청남도 논산군(구 연산군) 소재 마을인 벌곡면(伐谷面) 덕곡리(德谷里)와 연산면(連山面) 송산리(松山里)가 그 대상 지역인데 결론은 첫째, 광무양안은 토지의 형태나 면적, 등급의 파악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둘째, 그렇지만 소유관계의 파악의 면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셋째, 이에 비해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 파악은 한편에서는 광무양안의 정확성을 이어 받으면서 그것을 보다 철저화시켰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1995년과 1997년, 각각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과 일제 토지조사사업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성과가 나오면서 2단계 논쟁도 일단락된다. 이 해 『창작과 비평』에서는 조석곤과 신용하가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을 둘러싸고 지면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서 조석곤은 일제 토지조사사업 이전에는 수조권적 토지지배와 자의적 수취체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반면 신용하는 '대한제국 정부가 잘 시행하던 양전·지계사업을 일제가 중단시키고 토지를 약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래 광무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신용하였지만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3단계 연구도 주로 2단계 연구자들의 공동연구가 계승·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광무양안의 토지소유 구조와 농촌경제 실상에 관한 연구를 군 단위로 발전시킨 연구자로 최윤오를 들 수 있다. 그는 충북 진천군 양안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소유 구조, 농업경영에 관한 문제를 연속해서 다루었다. 이들 연구는 2007년 지역사적 연구성과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면 단위 사례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개 면과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개 혹은 그 이상의 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상층농민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기존 사례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최윤오의 연구는 근래 광무양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활동 중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존 공동연구자들의 관심은 새로운 자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제 토지조사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경남 창원지역 토지조사 시행과정과 장부체계, 토지소유구조, 소유권 분쟁, 토지신고서 등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동 연구자들은 같은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경제사학계에서는 별다른 후속 연구가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조석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지세제도 개정과 소유권 분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 이상 '광무양안' 연구의 시기별 흐름 속에서 주요 논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먼저 '광무양안'이 어떠한 역사적 구도 하에 분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광무양안'을 통해 무엇을 보고, 말하려고 했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광무양안'은 '광무개혁' 평가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광무개혁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1970년대 말에 한차례 있었다. 당시 이미 '광무 양전·지계사업이 농업개혁이나 토지개혁이 아니라 조세증가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쟁은 1990년대 이후에 있게 된다. 한쪽에서는 이 사업이 이전의 양전사업과 달리 얼마나 근대적이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고, 다른 쪽에서는 이를 끊임없이 부정하였다. 예를 들어 토지조사사업이 근대적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유권 보장 부분이다. 이 때 '시주'와 '시작' 표기에서 '시(時)'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 '시(時)'는 곧 임

시적 내지 한시적이라는 뜻으로 국전(國田)의 이념을 전제한 것이고, 대한국국제에서 보이는 봉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권이 국가나 황제에 의해 일정하게 제약받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자의적 수취 체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주 다음에 실제 이름, 곧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소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뿐더러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시(時)'는 '현재의' 소유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명이 아니라 노비명 등을 기록해도 관행적으로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파악과 보장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편의 주장이 옳을까? 일단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점이 실증에 앞서 나간다는 점이다. 즉 양쪽 다 광무양안을 통해서 특정한 주장-얼마나 '근대적'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목적의식 혹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곧 방대한 자료 중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몇몇 부분적 자료만을 부각시킨다거나 분석의 결과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연구경향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주장을 자료의 '왜곡'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논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증에 충실하지 못하고 역사적 실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은 기존 논쟁 구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료의 성격을 충실히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나둘씩 작은 문제라도 해결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광무양안 분석을 통해 대한제국기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논쟁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도 보았지만 '시주', '시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주'는 본래 '국가적 토지소유'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이후에는 '시주'에 외국인이 등록될 수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시작' 표기는 양지아문 양안에만 있고, 지계아문 양안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연구자들 내부에서도 조세 부담자이기 때문에 수록했다는 견해와 경작권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불허와 경작권 보호는 광무양전과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차별점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즉 광무양전이 일제 토지조사사업만큼이나 '근대적'일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주적·주체적·농민적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역으로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들의 토지 점유를 용이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식민지적이고, 농민의 제반 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반농민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논거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 상세한 논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무양안에 실제 등장하는 '시주', '시작' 사례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앞의 가설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광무양안에서 국유지의 '시주', '시작' 표기, 진전(陳田) 수록 여부 등도 검토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둘째, 광무양안을 통해 당대 농촌 현실과 소유·경영 규모 등을 얼마나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1960년대 이후 양안을 통해 당대 농촌 현실을 복원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양안이 농촌 현실의 실상을 반 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에도 양안의 한계를 인정한 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조사 대상 지역의 확대 등-이 최근

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몇몇 연구자는 1910년대 토지대장, 지적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광무양안의 정확도를 산출하고 소유·경영 규모 등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그려내고자 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광무양안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극복되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당대 농가세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광무양안만으로는 안되고 지주가의 토지문서나 경영문서 등 각종 방계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여타 연구자들도 인정한 바 있다. 즉 아무리 대상 지역을 늘린다 해도 단순 계량적 입력, 통계 작업은 한계가 있는 바 방법론상으로 연구자들의 더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광무양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 입력을 넘어 토지대장과의 비교 분석을 염두에 두고, 지적도(地籍圖)로의 이미지화, 전산화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무양안의 활용 문제이다. 광무양안 작성 이후 관계 발급은 어떠하였는지, 수세대장으로 활용되었는지 등 광무양안에서 토지대장으로의 이해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비교적 활발하게 자료 발굴과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사이에 작성된 각종 장부들이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등장하리라 기대된다. 특히 광무양안이 직후 수세대장으로 활용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사 연구에서 광무양안을 이용하는 문제이다. 최근 광무양안을 이용하여 충북 진천 지역사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좀 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광무양안 자료를 한층 더 유연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방증자료로 보완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당대인들의 반응, 각종 소유지 분쟁 등까지 곁들여 다룬다면 더 생생한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宮嶋博史, 1991『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高麗書林

김덕진, 1999『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김양식, 2000『근대 권력과 토지 -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김종준, 2010『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신구문화사

김홍식 외, 1990『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민음사

김홍식 외, 1997『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배영순, 2002『한말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영남대학교출판부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인한, 2000『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신영우 편, 2007『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혜안

신용하, 1979『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한국연구원
이영훈, 1988『조선후기사회경제사』한길사
조석곤, 2003『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해남
조선총독부, 1929『朝鮮の小作慣習』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5『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和田一郎, 1920『朝鮮土地地税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2) 논문

강석화, 1991「조선후기 군역제도의 변화(하)」,『군사』22
곽창호, 1993「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한 토지소유관계의 일연구 -용인군 水餘面 광무양안의 사례분석-」명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교수신문 기획·엮음, 2005『고종황제역사청문회』푸른역사
구완회, 1992「조선후기 軍役釐政의 방향과 수령」,『조선사연구』1
김용섭, 1968「光武年間의 量田·地契事業」『아세아연구』31(『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농업개혁론·농업정책-』1988, 일조각, 재수록)
김용섭, 1982「조선후기 軍役制의 動搖와 軍役田」,『동방학지』32
김용섭, 1988「한말에 있어서의 중답주와 역둔토지주제」『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농업개혁론·농업정책- [下]』일조각
김윤희, 1995「대한제국기 황실재정운영과 그 성격 -탁지부 豫算外 支出과 내장원 재정운영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90
김재호, 1995「대한제국 내장원의 역둔토 관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경제사학』19
김재호, 1997「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종준, 2009「1895~1907년 평안도 지역의 '軍土' 조사 작업과 관련 분쟁」『동방학지』148
김종준, 2010「'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 재고찰」『한국문화』51
박명규, 1991「낡은 논리의 새로운 형태; 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비판」『한국사연구』75
박성준, 1998「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역둔토 운영의 성격」,『조선시대사학보』6
박찬승, 1983「한말 역토·둔토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抗租」,『한국사론』9, 서울대 국사학과
서태원, 2007「갑오개혁 이후 충청북도 지방군 -청주지방대와 진위대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36
신용하, 1976「김용섭 저,『한국근대농업사연구』서평」『한국사연구』13
신용하, 1997「'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창작과 비평』98
신인석, 1989「구한말의 둔토관리와 소유권분쟁에 관한 연구 -둔토에 있어서 국가적 토지소유의 정리·변질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심재우, 2009「조선후기 선희궁의 연혁과 소속 장토의 변화」『조선시대사학보』50
안병욱, 1999「19세기 향회와 민란」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양상현, 1997「대한제국기 내장원 재정관리 연구: 人蔘·礦山·庖肆·海稅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왕현종, 1991「서평, 광무양전사업의 다양한 성격과 좁은 시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김홍식 외 4인 공저, 민음사, 1991)-」『역사와 현실』5
왕현종, 1992「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혁과 성격」『한국사연구』77
왕현종, 2003「광무 양전·지계 사업의 성격」『한국 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왕현종, 2004「대한제국기 지계아문의 강원도 양전사업과 관계 발급」『동방학지』23
왕현종, 2007「경남 창원지역 토지조사의 시행과정과 장부체계의 변화」『역사와 현실』65
이상찬, 1992「일제 침략과「황실재정정리」(1)」,『규장각』15
이상찬, 1997「규장각 소장 자료의 公文書 分類圖章에 대하여」『서지학보』20
이세영, 2007「1910~1945년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구조 변동」『지역과 역사』21
이영학, 1991「광무양전사업 연구의 동향과 과제」『역사와 현실』6
이영학, 2007「한말 일제하 식민지주의 형성과 그 특질 -村井 進永農場을 중심으로-」『지역과 역사』21
이영호, 1990「대한제국시기의 토지제도와 농민층분화의 양상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光武量案」과「土地調査簿」의 비교분석-」『한국사연구』69
이영훈, 1989「광무양전의 역사적 성격 -충청남도 연기군 광무양안에 관한 사례분석-」『근대조선의 경제구조』비봉출판사
이윤갑, 1995「신간 서평, 대한제국의 양전·지계발급사업을 둘러싼 제2단계 광무개혁 논쟁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민음사, 1995)-」『역사와 현실』16
이윤상, 1996「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조동걸, 1981「地契事業에 대한 定山의 農民抗擾」『사학연구』33
조석곤, 1997「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창작과 비평』96
조재곤, 1996「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역사와 현실』19
최원규, 2007「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의 토지소유권 분쟁 -自如驛 倉屯 사례-」『지역과 역사』21
최원규, 2009「일제초기 창원군 토지조사과정과 토지신고서 분석」『지역과 역사』24
최윤오, 2000「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심책」『역사와 현실』36
최윤오, 2003「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의 토지소유 구조와 농민층의 동향 -충북 진천군 양안을 중심으로-」『역사교육』86
최윤오, 2005「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충북 진천군양안 전체분석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2「서평, '내재적 발전론'을 가장한 또 하나의 식민주의 역사인식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91)-」『역사와 현실』7